



지방규제 실태분석 및 개선과제 발굴

연구진

김현호(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이소영(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김도형(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3
1. 연구의 필요성	3
2. 연구의 목적	5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6
1. 연구범위	6
2. 연구방법	8
제2장 지방규제 분석을 위한 이론적 논의	13
제1절 규제의 개념과 원칙	15
1. 규제의 개념	15
2. 규제의 원칙	16
3. 규제의 유형, 범위, 구성요건	18
제2절 지방규제의 개념, 판단기준	24
1. 지방규제의 개념 및 법적 근거	24
2. 지방규제의 특성	26
3. 지방규제의 현황	27
4. 지방규제 실태분석을 위한 행정규제 판단기준	32
제3장 사례지역 규제 실태분석	43
제1절 분석의 개요	45
1. 분석의 프레임	45
2. 분석의 양식	48
제2절 사례지역 지방규제의 현황	51



1. 규제의 개요	51
제3절 사례지역 규제의 실태분석	53
1. 남원시 규제검토 및 분석	53
2. 남원시 규제분석 결과의 유형화	66
3. 유형별 규제의 세부적 검토	67
제4장 실태분석의 활용 및 개선과제	131
제1절 기본방향	133
1. 규제등록 및 정비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	133
2. 자치단체 규제개혁 실무편람의 제공	134
3. 자치단체 규제개혁 추진 및 지원 시스템 구축	134
제2절 주요 과제	135
1. 지방규제 개혁 매뉴얼의 구체화, 세부화	135
2. 지방규제 관련 자치단체 공무원 전문성 강화	137
3. 단체장, 지방의회 의원에게 대한 지방규제 이해 제고	139
4. 법률 제·개정 사항의 자치단체 피드백 시책 도입	140
5. 자치단체 벤치마킹 규제개선 견본 제공	142
제3절 지방규제 거버넌스 구축	144
1. 행자부-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역할 강화	144
2. 지방규제 개혁 거버넌스 구축	145
【참고문헌】	147



〈부록 1〉 남원시 자치법규 리스트	148
〈부록 2〉 남원시 등록규제 리스트	150
〈부록 3〉 행정규제 개념 및 판단기준	153
〈부록 4〉 행정규제기본법	177

표 차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표 1> 지자체 규제의 문제점 도출의 초점	8
<표 2> 분석 가능한 다양한 지역의 유형화	9
<표 3> 사례지역 선정	10
<표 4> 사례지역 선정 이유	10
<표 5> 규제의 개념	15
<표 6> 규제의 유형	19
<표 7> 광역 지자체 등록규제 현황	27
<표 8> 형태별 지자체 등록규제 현황	30
<표 9> 부문별 지자체 등록규제 현황	31
<표 10> 행정규제 판단기준	33
<표 11> 비 규제의 대표적인 유형	40
<표 12> 행정규제 판단의 양식	49
<표 13> 남원시 연도별 규제 등록현황	52
<표 14> 남원시 규제의 내용현황	52
<표 15> 남원시 규제의 검토 및 분석	53
<표 16> 남원시 등록 규제 식별 결과	66
<표 17> 문제가 있는 규제의 유형화	67
<표 18> 행자부 자치단체 지방규제 매뉴얼	136
<표 19>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자치단체 공무원 역량 강화 ..	139
<표 20> 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의 지방규제 이해 제고 ..	140
<표 21> 법률 제·개정 사항의 자치단체 피드백 시책 시행 ..	142



그림 차례

<그림 1> 사례지역 실태분석 프레임	11
<그림 2> 규제에서 지자체의 위치 및 지방규제의 적용 구조 ..	25
<그림 3> 지자체 등록규제수의 추이	28
<그림 4> 지자체 등록규제의 연령	29
<그림 5> 공무원 1000명당 등록규제 건수	30
<그림 6> 규제분석 작업의 프레임	48
<그림 7> 남원시 자치법규의 수, 지방규제의 수	51
<그림 8> 자치단체 제공 규제개혁 핵심 체크 내용	143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지역경제 활성화 겨냥의 현장중심 규제개혁 추진

- ‘주민행복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 중임
 - 주민행복 증진의 토대가 결국 일자리에 있다고 보고, 종래와 달리 지자체 현장을 중시하는 규제개혁을 추진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활성화는 중앙규제에 더해 지방규제 개혁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인식을 토대로 하고 있음
 - 설령, 법령, 법령 등을 통해 중앙정부의 규제개혁이 이루어지더라도 그것이 자치법규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 집행이 곤란하기 때문
 - 따라서 정부권한의 위임 등에 따라 규제를 현장에서 집행하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판단에 근거하고 있음

 지역의 규제개혁 체감도 저하

- 2013년 행자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전국의 기업체를 대상으로 지자체 규제개혁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기업의 규제개혁 체감도가 상당히 낮으며, 규제원인은 소재로 지자체(형태를 포함)를 지적하고 있음
 -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원인의 소재로(1순위 응답) 55.2%가 법령, 30.6%가 ‘암묵적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지자체 공무원의 행태라고 응답

- 2013년 행자부, 산업부, 대한상의회가 전국의 4,02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규제체감도 조사에서도 67.2%의 기업이 규제가 과도하다고 응답하고 있음
 - 특히, 그 가운데 규제애로의 원인으로 48.3%가 법령상의 과도한 규제를, 26.1%가 지자체 공무원의 소극적인 업무태도를 지목하고 있음

□ 지방규제 개선과제 발굴을 위한 지자체 규제실태 조사 필요

- 규제개혁의 성과가 지자체 일선 현장에까지 체감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지방규제가 대단히 중요하며, 특히 개선과제를 발굴할 필요가 있음
 - 규제개혁을 저해하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개선과제가 아직도 상당하기 때문에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이 문제 해결의 어려운 점은 “손톱 밑 가시”에 해당되는 규제가 있더라도 피 규제자는 규제 신고를 회피하는 경향이 많음
 - ※ 피 규제자 입장에서는 규제내용을 지자체 등 행정기관에 제공하였을 경우, 혹시도 있을지 모르는 불이익을 의식하기 때문¹⁾
-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법령의 위임사항인 조례, 조례에 의한 지방규제의 실태가 무엇인지를 조사, 분석할 필요가 있음
 - 규제를 등록하는 현재의 시스템에서 무엇이 등록되고,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있으며,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지를 세부적으로 분석, 밝혀낼 필요가 있음
 - ※ 자치단체 현장의 규제내용을 제대로 밝혀내려면 자치단체에 밀착적인 연구의 필요성 보유

1) 실제, 연구진이 참여한 특정한 토론회에 경제단체 등이 참석한 경우가 있었는데, 행자부 등이 참석하는 회의의 발표용으로 연구진에게 규제사례를 요청한 경우도 있었음

2. 연구의 목적

□ 자치단체 규제개선을 위한 실용성 있는 개선규제 발굴

- 제도 개선방안 등에 중점을 두기 보다는 현실적으로 지자체의 규제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개선방안을 발굴, 제시
 - 지자체 공무원의 행태, 제도 개선 방안의 개발이 초점이 아니라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규제 실태분석을 통해서 귀납적 정책함의의 도출
 - ※ 여기서는 초점을 “규제 및 비규제”의 관점에 주로 한정해서 개선과제를 제시
- 실태분석을 통한 문제규제 발굴을 토대로, 지자체가 지방규제 개선을 위해 실용적으로 써 먹을 수 있는 규제개혁 대상 및 내용을 개발 제시
 - 지자체 규제의 경우, 내용 측면에서 자치법규가 법령과 불일치하거나 법령에서 조례 등에 위임한 사항의 소극 및 부당한 규정하는 경우 등의 문제가 발생
 - ※ 상위 법령 위임사항을 자치법규에 규정하지 않거나 반영하지 않은 경우 등
- 지방규제 개선의 현장성과 관련하여 규제의 내용 측면과 관련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지방규제 개선과제를 발굴 및 제시
 - 규제개선 성과가 지역현장까지 체감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형의 규제 개선과제를 발굴

< 유형 예시 >

- △ 상위 법령과 불일치한 자치법규(조례, 지침, 공고, 예규, 훈령)
- △ 자치법규 위임사항의 일탈적 적용(소극적, 과다 등)
- △ 법령의 근거가 부재한 지자체의 규제

자치단체 규제의 현황 및 실태 조사

- 전국에서 규제수가 가장 많은 남원시 지역을 대상으로 자치법규가 상위
의 법령 등에 비추어 보아 문제가 되고 있는 점에 대한 조사
 - 자치단체의 지방규제의 근거가 되는 자치법규가 상위 법령 등에 비추
어 보아 문제가 되고 있는 점을 조사
- 규제 내용 측면에서 자치단체 지방규제의 문제점 발굴 및 발굴된 문제점
을 귀납적으로 유형화
 - 사례지역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귀납적으로 밝혀지고, 유형화된 지방규
제의 문제점을 전국의 지자체에 제공해서 규제개선을 위한 자료로 제공

자치단체 규제 개선방안 개발, 제시

-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지자체 규제개선의 대안 개발
 - 사례의 밀착 분석을 통해 문제점으로 발굴한 규제의 유형별 개선 방
안을 제시
 - 지자체 차원의 규제관리, 규제개선 추진체계 및 시스템 등 포함
 - ※ 지자체가 규제개혁의 품질제고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지침, 매뉴얼 성격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지방규제 이론 : 개념, 특성, 법령과 관계

- 현재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지방규제’의 개념을 정의하고, 지방규제의 특성을 정리

- 지방규제는 학술적으로 정의된 개념은 아니지만, 법령뿐 아니라 거기서 위임한 내용, 공무원의 유권해석을 포함해서 자치단체 단위에서 적용되는 규제를 통괄해서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규제에 있어 지자체의 위치>

- △ 지자체는 중앙에서 제·개정된 법령에서 규정한 규제가 실제로 시행되는 현장일 뿐 아니라 지방의회의 자치법규 상의 규제가 기업이나 주민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공간이자 접점
- △ 지자체는 그 유래가 어디든지 간에 규제의 최종 집행자인 셈임
- △ 대부분의 규제시행은 민원 형태를 띠고 집행되고 있음
- △ 그래서 규제행정에 대한 체감도가 바로 지자체에서 나타나게 됨

□ 지방규제의 현황, 문제점, 개선과제 도출

- 지방규제의 현황 및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 법령의 위임사항을 자치법규 형태로 추진하는 데서 오는 지방규제 추진에서 발생하는 문제 파악
- 특히, 지방규제 가운데서도 과제의 범위를 좁혀, 규제의 내용 측면에서 실제 지자체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지 등에 초점
 - 이유는 실제 지방자치단체를 사례로 하여 지방규제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지에 대한 분석이 거의 없는 실정이기 때문임
 - 등록규제를 대상으로 규제, 비규제 등의 판별을 포함해서 자치단체 규제의 실태를 분석

<표 1> 지자체 규제의 문제점 도출의 초점

규제 형태		문제점의 특성	비고
등록 규제	법령 근거	- 상위법령 개정 미반영 자치법규 ✓ - 유권해석 필요한 모호한 규제 - 상위 법령 내용, 기준 불명확 규제 ✓ - 상위 법령 소극적 자치법규 반영 ✓	- 규제가 아닌 사 항의 규제화 등 포함
	법령 미근거	- 위임 일탈이 신규 자치법규 생성 ✓	- 상위법령 부재

지방규제 개선과제의 발굴 및 대안제시

- 사례분석을 통해 나타난 지방규제의 문제를 귀납적으로 유형화
 - OECD의 “품질 좋은 규제”(better regulation), 전문가 등이 제시하는
요건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
- 도출된 유형별 규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
 - 유형별 규제의 세부 내용별 개선방안을 개발, 제시
- 지방규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타 자치단체 참고자료 제공
 - 연구결과를 정리하여 자치단체에 제공
 - ※ 행정부 자체조사 분석과 병행해서 자치단체 제공 자료를 작성함이 결과 활용측면
에서 합당할 것으로 판단됨

2. 연구방법

지방규제 정책자료 분석

- 목적은 지자체 규제실태를 분석하기 위한 잣대 및 기준 도출에 참고
 - 지방규제 실태를 분석하기 위한 규제 판별 여부의 요소 및 기준, 방법
등 선행자료 검토
 - ※ 행정부가 자치단체에 제시한 지방규제 개선 관련 매뉴얼, 무역투자 회의 자료(13
년, 14년), 지방규제위원회 정책자료

※ 국무총리실, 규제정보 포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학술논문 자료 등

- 외국 지방규제 관련 정책자료, 연구보고서, 서적 분석
 - OECD, World Bank, 기타 국내에서 발행한 외국의 규제정책 보고서
 - 외국의 경우, OECD, World Bank 등의 홈페이지 포함

□ 자치단체 사례분석

- 목적은 사례조사를 통해 지방규제의 내용적 문제점 파악
 - 현재 지방규제의 문제점은 공무원이나 피 규제자가 지방규제개선위원회 회나 규제개혁위원회 등에 문제 사례를 보고하는 방식으로 추진
 - 특히, 지자체 특성별 지방규제가 존재하고 동일한 맥락에서 자치단체 별로 개선대상이 되는 지방규제의 내용 및 특성도 차이가 있음
- 실태분석의 대상지역은 물리적 여건을 고려 소수 지역으로 한정
 - 가장 정확한 방안은 50,087개에 이르는 모든 자치단체의 규제를 분석하는 것이지만, 이는 비용 및 시간 등 물리적 여건 측면에서 제약
 - ※ 원론적으로 지방규제와 그에 따른 문제는 자치단체 수만큼이나 다양
 - 비용 등 물리적 여건이 충분이 지원된다면, 선택할 수 분석 지역의 유형은 수도권 VS 비수도권, 도시 VS 농촌, 인구규모별 지역, 규제의 총수 등이 가능할 것임

<표 2> 분석 가능한 다양한 지역의 유형화

구분	지역의 구분				
지역성격	도시지역		도농통합지역		농촌지역
규제 차이	수도권 지역			비수도권 지역	
인구 규모	100만 이상	100-50만	50-10만	10만-5만	5만 이하
규제의 수	지자체에 존재하는 규제의 수에 따라 지역구분이 가능				

○ 사례지역

- 본 과제에서는 이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지역을 선정
- 특히,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규제의 수가 가장 많은 남원시 지역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
- 남원은 도농 복합지역으로 도시적 성격과 농촌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분석의 대표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표 3> 사례지역 선정

구 분	지역의 구분		
지역성격	도시지역	도농통합지역	농촌지역
규제 차이	성 동 구	남원	장수
특 징	대도시 자치구 규제 많은 지역	남원 : 규제 최다	규제 많은 지역

- 사례지역 선정의 이유

<표 4> 사례지역 선정 이유

자치단체	선정이유	비고
남원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최다 규제 등록 자치단체 - 비수도권 낙후지역 자치단체 - 인구규모의 대표성 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 7월 409개 지방 규제 등록

○ 선정한 자치단체를 통해 지방규제의 문제, 특히 내용적 관점에서 문제가 되는 지방규제를 도출하고 분석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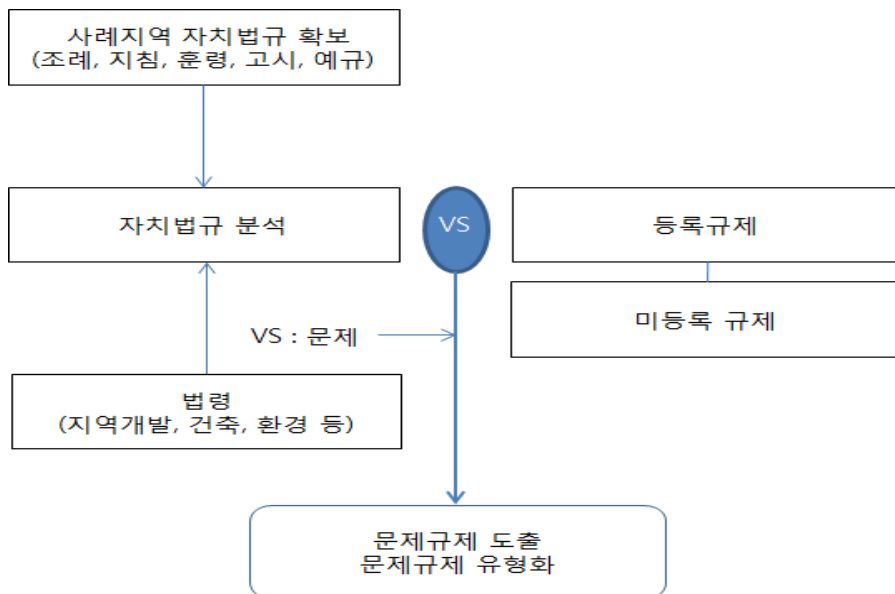
- 남원시 등록규제를 대상으로 상위 법령과 비교 등을 통해 문제가 있

2) 지방규제 개혁의 주요한 대상 중의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자치단체 공무원의 인허가 처리, 규제업무처리 등 행태적 관점의 규제는 행자부가 연구의 범위에서 삭제될 요청

는 규제, 품질이 낮은 규제를 파악

- ※ 주로 투자관련 자치법규에 초점을 두어서 검토
- 사례지역에서 문제가 되는 지방규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자치법규, 상위법령 등을 동시에 검토

<그림 1> 사례지역 실태분석 프레임



- 전체적으로는 단계적 분석 방식을 적용하여 지자체 규제 검토 및 개선방안 제시하는 접근을 채택
 - ‘단계적 분석방식’은 자치단체의 규제개혁 측면에서 등록된 규제를 중심으로 규제 등록 및 관리 내용의 적정성 (조례와 등록규제의 관계 등 초점) → 법률과 조례의 관계에 비추어 본 규제의 문제 등의 단계적 분석 (등록 규제 뿐 아니라 자치단체 조례 전체와 상위 법령과의 관계 검토 등을 포함)

- 규제의 품질제고를 통한 규제개혁을 달성하기 위해 규제 품질제고의 대상 파악에서 실제적 내용파악, 개선의견 제시³⁾

□ 전문가 워크숍 및 자치단체 관계자 인터뷰 조사

○ 법률 전문가 워크숍

- 사례지역 규제의 미시적 분석, 지방규제 적합성, 품질과 합리성 등의 판단에 대한 견해와 의견을 청취
- 연구진이 검토한 내용 등에 대해 규제와 비규제, 규제개혁의 대상 파악, 개선방안 등에 대해 상위법령, 자치법규 등 광범위한 법률적 지식에 비추어 본 분석의 합당성 확보

○ 자치단체 지방규제 담당 공무원 인터뷰

- 목적은 지방규제의 문제, 지방규제 개혁의 애로, 지방규제의 등록방법과 문제에 대한 의견 청취
- 법령에 토대한 자치법규 제정 문제, 지자체 차원의 규제영향 분석 및 심의, 규제 관리 등에 대한 의견 수렴
- ※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기업체까지 확장 고려

3) 심층적 단계에서는 고도의 법률적 지식에 바탕 하여 상위 법령과의 면밀한 비교검토 등을 포함해서 적극적 규제라고 할 수 있는 법령의 근거가 없이 설치된 규제, 법령보다 강화한 규제를 포함해서, 소극적 규제라고 할 수 있는 법령의 재개정 사항을 미반영한 규제, 상위 법령을 소극적으로 적용한 규제, 상대적 차별로 인한 규제, 평등원칙 등 법률 일반원칙을 위반한 규제 등이 검토될 수 있음

제2장

지방규제 분석을 위한 이론적 논의

제1절 규제의 개념과 원칙

제2절 지방규제의 개념, 판단기준

제2장

지방규제 분석을 위한 이론적 논의

제1절 규제의 개념과 원칙

1. 규제의 개념

- ‘규제’(regulation)는 다양하게 정의 될 수 있는데, 먼저 일반적인 정의와 법률적인 정의로 구분할 수 있음
 - 일반적으로는 규제개념의 수준에 따라 광의, 중의, 협의로 정의 가능

<표 5> 규제의 개념

구분	내용
광의	- 어떤 주체의 행동선택에 의도적으로 제한을 가하고자 하는 과정
중의	- 바람직한 경제사회질서의 구현을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기업과 개인의 행위를 제약하는 것
협의	- 정부가 하는 모든 일은 법과 규칙의 설정이 요구되므로 정부구조밖에 존재하는 개인이나 조직들에게 정부가 설정한 표준과 주요 경제적 책임을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부과하는 법과 규칙

출처 :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3)

- 법률적 측면의 정의 : 행정규제기본법
 - "행정규제"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제2조 제1항)
 - 규제의 목적 : 공공의 이익이나 사회적 후생의 증대

○ 규제완화 vs 규제개혁

- 규제완화는 규제의 양을 감소시켜 행정비용을 저감시키는 것으로, 규제개혁은 있어야 할 규제가 누락되는 적은 규제보다는 양질의 규제가 규제정책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규제개혁은 ‘정부규제의 품질을 관리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이원우, 2008)⁴⁾

※ “규제완화”, “탈규제”(deregulation)→ “규제개혁”(regulation reform)으로의 변화: 1980년대에서 1990년대에 일어났는데 경제침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기에는 탈규제가 중시되었지만, 그 이후 규제공급측면의 개혁과 규제의 비효율성을 줄일 필요 때문에 규제개혁이 중시되었다고 함(OECD, 2006)

< better regulation의 요건 >

- i) 정책목표의 명확성 및 목표달성의 효과성, ii) 법적, 경험적 기반의 명확성, iii) 비용대비 편익의 창출, iv) 비용 및 시장왜곡 최소화, v) 목표달성을 위한 혁신, vi) 규제자의 명료성, 단순성, 실용성. vii) 타 규제와의 일관성, viii) 국제적 기준과의 부합성(OECD, 2012)
-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투명성, 비례성, 책임성, 일관성 등의 원칙을 충족시켜야 하며, 이런 원칙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폭넓은 대중의지지, 집행가능성, 이해의 수월성, 정치적 동기에 의해 과잉되지 않을 것, 비의도적 부작용의 최소화, 규제비용과 효과의 균형성 등 충족(이원우, 2008)

2. 규제의 원칙

□ 규제법정주의

- 「행정규제기본법」은 국가가 국민생활에 대한 자의적 개입을 막기 위해 ‘규제법정주의’를 천명하고 있음(법 제4조)
-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모든 규제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며, 아울러 법률에 직접 규정해야 한다는 것임⁵⁾

4) 규제완화라는 용어 보다는 규제개혁이라는 용어를 선호하면서, 규제개혁은 고비용, 저효율의 불량 규제를 비규제적인 정책수단 또는 양질의 규제수단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포함된다고 한다(이원우, 2008).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규제법정주의)

- ①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 ② 규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 또는 상위법령(上位法令)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또는 조례·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 ③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 규제의 원칙

- 국민의 자유와 창의와 존중, 생명·인권 등의 실효성, 최소한의 범위 달성을 위한 효과성·객관성·투명성·공정성 확보

행정규제기본법 제5조 (규제의 원칙)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여야 하며, 규제를 정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규제를 정할 때에는 국민의 생명·인권·보건 및 환경 등의 보호와 식품·의약품의 안전을 위한 실효성이 있는 규제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규제의 대상과 수단은 규제의 목적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객관성·투명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 규제순응의 실효성

- 일반 국민들이 현실적으로 준수할 수 없는 규제는 법규위반자를 대량으로 양산하거나 사문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회적·기술적 여건, 규제집행 일선 공무원의 현실, 우리나라의 실태 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

5)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 규칙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아울러 법률의 위임된 범위 내에서 규제내용을 정할 수 있음

- 규제수준의 적정성(비례의 원칙)
 - 규제의 대상 및 수단은 목적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 범위 내에서 규정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일부에 국한된 문제해결을 위해 전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등 규제대상 범위를 불필요하게 확대해서는 안 되며, 행정편의주의 시각에서 규제 목적에 직접적 관련이 없는 과도한 내용을 규정하여서는 안 됨
- 규제의 시의성
 - 규제를 통해 해결해야 할 만큼 현상의 문제점이 중대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동 규제가 시급하게 필요해야 한다는 것으로 규제 도입 시 기존규제의 활용가능성 또는 타 법령의 유사규제 여부를 확인하여 규제 대안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함
- 규제의 불가피성
 - 불가피하게 미래에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규제 도입 시에는 그 필요성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3. 규제의 유형, 범위, 구성요건

□ 규제의 유형

- 성격에 따른 규제의 유형은 세 가지로 구분이 가능(OECD, 2006)
 - 경제적 규제 : 가격, 품질, 경쟁, 시장진입 및 퇴출 등과 같은 기업의 시장활동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규제(ex. 경제, 산업, 금융, 중소기업, 공정거래, 부동산 등과 관련된 규제)
 - 사회적 규제 : 건강·안전·환경 및 사회적 통합과 같은 공익보호를 목적으로 정부가 개입하는 규제(ex. 보건, 의료, 복지, 식품, 안전, 환경, 고용, 교육 등과 관련된 규제)
 - 행정적 규제 : 정책추진과정에서 필요한 행정적인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는 규제(ex. 행정, 치안, 외교, 인허가, 절차 등과 관련된 규제)

<표 6> 규제의 유형

구 분	내 용	예 시
경제적 규제	- 가격, 품질, 경쟁, 시장진입 및 퇴출 등과 같은 기업의 시장활동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규제	경제, 산업, 금융, 중소기업, 공정거래, 부동산 등
사회적 규제	- 건강·안전·환경 및 사회적 통합과 같은 공익보호를 목적으로 정부가 개입하는 규제	보건, 의료, 복지, 식품, 안전, 환경, 고용, 교육 등
행정적 규제	- 정책추진과정에서 필요한 행정적인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는 규제	행정, 치안, 외교, 인허가, 절차 등

출처 : OECD(1992).

□ 규제의 범위

-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행정규제의 범위는 인허가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감독 및 제재, 영업상 행위 의무,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에 관한 사항으로 제한됨⁶⁾
 - 허가·인가·특허·면허·시험·검사·확인·증명 등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해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의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허가취소·영업정지·시정명령·확인·조사·단속·과태료부과·과징금부과 등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고용의무·신고의무·등록의무·보고의무·출자금지·명의대여금지, 기타 영업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6) 하지만, 이 행정규제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2항에 적시된 사무 혹은 사항에 대해서는 적용받지 않음. 즉,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하는 사무, 형사, 행형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 국가정보원법에 따른 정보·보안 업무에 관한 사무, 병역법, 통합방위법, 향토에 비군설치법,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규정된 징집·소집·동원·훈련에 관한 사항, 군사시설, 군사기밀 보호 및 방위사업에 관한 사항, 조세의 종목·세율·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등이 이에 해당됨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등)

- ①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규제의 구체적 범위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법령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으로 한다.
1. 허가·인가·특허·면허·승인·지정·인정·시험·검사·검정·확인·증명 등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2. 허가취소·영업정지·등록말소·시정명령·확인·조사·단속·과태료부과·과징금부과 등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3. 고용의무·신고의무·등록의무·보고의무·공급의무·출자금지·명의대여금지 기타 영업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4.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규제의 구성요건 : 주체, 객체, 내용, 형식

○ 행정규제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경우

- 국가: 정부조직법상의 중앙행정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소속기관, 합 의제 행정기관 등
-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기관
- 행정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법령 등 또는 조례·규칙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 행정규제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경우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법제3조 제2항)
- 행정기관이 아닌 자로서 행정권한을 위임·위탁받지 아니한 자

○ 행정규제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경우

- 법령의 규제를 받는 자연인(내국인, 외국인)
- 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 및 재단 등

- 행정규제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경우
 - 행정기관: 행정기관이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는 행정내부규제로 행정규제기본법의 행정규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이 원칙⁷⁾
- 행정규제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 특정한 행정목적 실현을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국민에게 “부담 혹은 수익적 규정 제시 여부”가 기준이 아니고,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나”가 기준임
- 행정규제의 형식
 - 행정규제는 ‘법령 등’에 규정된 것으로, ‘법령 등’은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 규칙, ‘고시 등’(고시, 공고, 예규, 훈령)을 지칭
 - ‘법령 등’에 규정되지 않은 규제는 규제법정주의를 위반한 규제가 됨

행정규제 주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행정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 주체 불가능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 행정기관이 아닌 자로서 행정권한을 위임·위탁받지 아니한 자
행정규제 객체	- 법령의 규제를 받는 자연인(내국인, 외국인), 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 및 재단 등 * 객체 불가능 : 행정기관이며, 행정기관이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는 행정내부규제로 「행정규제기본법」의 행정규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행정규제 내용	- 특정한 행정목적 실현을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나”가 기준
행정규제 형식	- ‘법령 등’에 규정된 것 * ‘법령 등’ :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 규칙, ‘고시 등’(고시, 공고, 예규, 훈령)을 지칭 * ‘법령 등’에 규정되지 않은 규제는 규제법정주의를 위반한 규제가 됨

□ 행정규제기본법 개정

7) 하지만, 행정기관에 대한 의무 부여가 궁극적으로(혹은 직간접적으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결과를 야기한다면 이 규제의 실질적인 객체는 행정기관이 아니라 국민이 되므로 이런 규제는 행정규제로 봄

- 목적은 행정규제기본법 제정('98년) 이후 16년 동안 변화된 규제환경과 선진제도를 반영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규제의 신설을 억제(국무조정실, 2014)
 - 2014년 8월 19일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되었으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임
- 필요한 규제의 품질을 제고하며 수요자 중심, 일선 행정현장 중심으로 규제를 통합적·신축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
- 주요한 내용은 제도나 정책 등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규제를 통해 금지하는 네거티브 규제규제방식((원칙허용·예외금지)로 방향을 전환시킴
 - 시장진입 또는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를 신설·강화하거나 기존 규제를 정비하는 경우 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함
-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는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예외적으로 3년의 범위에서 재검토기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 규제비용 총량제를 적용하여 해당 규제의 존속기간 동안 국민·기업이 부담하게 되는 순비용을 기준으로 소관 부처에서 새로운 규제를 만들고 보완할 때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의 규제를 폐지·완화하도록 함
 - 이와 관련해 행정규칙으로 규제를 신설할 때는 사전 행정예고와 법제처의 검토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
 -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시 규제비용총량 관리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 객관적·과학적으로 규제비용을 산정하도록 함(안 제7조)
-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신축적 규제 관리·운영으로 전환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설·강화 규제 도입 시 이에 상응하는 기존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여야 함(안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

- 누구든지 위원회에 기존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을 청구할 수 있고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규제 건의에 대해 신속하게 답변하고 규제 존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여야 함(안 제17조)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규제를 함께 개선해야 규제 개선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경우 다른 기관의 규제 정비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안 제22조의4)
 - 기술융합 사업 등을 실시하려는 자는 사전에 규제적용 유무 등을 질의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규제의 면제·완화 또는 한시적 적용유예를 권고할 수 있음(안 제22조의5)
 - 위원회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대한 규제의 차등적용을 권고할 수 있음(안 제22조의6)
- 행자부의 역할 강화 등 자치단체 일선 현장에서의 규제관리 강화
- 위원회는 규제 시행 후 사회·경제적으로 파급효과가 크거나 규제영향 분석을 실시하지 아니한 규제의 타당성 및 적절성을 사후평가할 수 있음(안 제34조)
 - 위원회는 규제 정비과정에서 발견한 불합리한 제도개선에 대한 제안 등을 대통령,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음(안 제34조의2)
 - 지방자치단체는 규제개혁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황을 안전행정부장관을 거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함(안 제35조의3)
 - 규제개선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직무감찰 등에 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함(안 제37조)
- 중요규제와 의원입법 규제에 대해서도 사후평가를 시행
- 사전 규제영향분석의 내실화, 규제 정책의 책임성 확보 차원에서 규제를 일정 기간 시행 후 그 결과를 사후평가 시행
 - 정부는 행정 부담과 평가의 형식화 방지 등을 고려, 중요규제 및 규제

영향분석 미실시 규제에 한해 우선 시행할 예정

-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 시행 후 사회·경제적으로 파급효과가 크거나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지 아니한 규제의 타당성 및 적절성을 사후평가할 수 있음(안 제34조)
- 중요규제를 도입하여 내부기준을 법제화하고 기준에 따라 관리
 - 규제영향비용이 연간 100억원 이상이거나 규제를 적용받는 사람이 100만명 이상인 규제 등을 ‘중요규제’로 규정
 - 중요규제에 대해서는 내부기준을 법제화하도록 하고 그 시행에 따른 결과를 평가함

제2절 지방규제의 개념, 판단기준

1. 지방규제의 개념 및 법적 근거

□ 지방규제의 개념

- “지방규제”는 앞서 정의한 행정규제의 개념과 연장선상에서 정의
 - 지방규제는 행정규제 중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조례·규칙에 관련된 사항을 총칭하는 개념

□ 지방규제의 법적 근거

-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3항
 -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하는 취지에 따라 조례·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公表),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 규제의 정비,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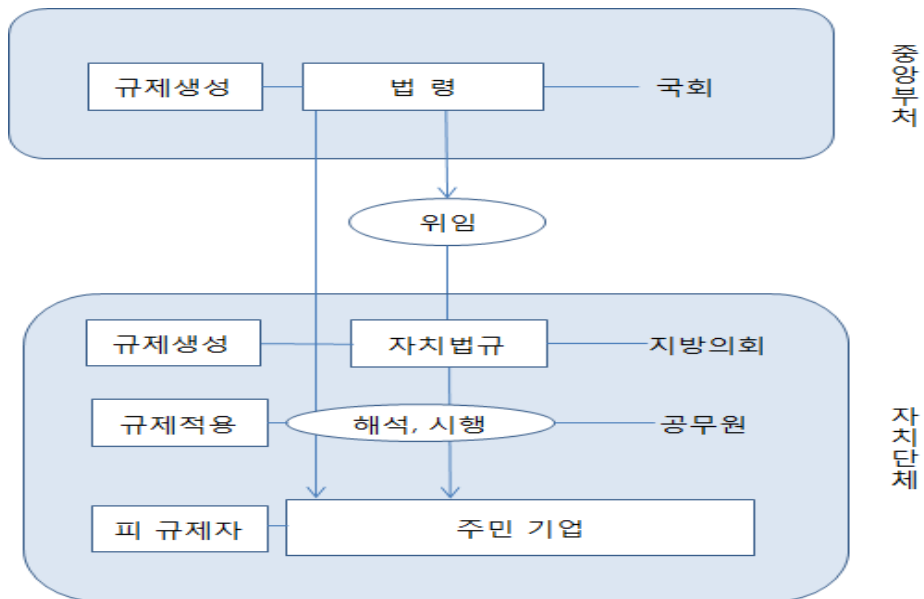
□ 규제에서 지자체의 위치

○ 법령의 규제가 시행되는 현장

- 지자체는 중앙에서 제·개정된 법령에서 규정한 규제가 실제로 시행되는 현장일 뿐 아니라 지방의회에서 제·개정된 자치법규상의 규제가 ‘민원의 형태’로 기업이나 주민과 만나는 규제의 최종적인 집행자
- 법령에 포함된 중앙정부 규제의 세부사항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의 집행이 지자체의 자치법규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규제개혁만으로는 규제개혁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상당해서 지방규제가 중요함(김신, 2010)

※ 법령에 포함된 중앙정부 규제의 세부사항이 지자체에 위임되는 경우가 많으며, 그 집행이 지자체의 자치법규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의 규제개혁만으로는 규제개혁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음

<그림 2> 규제에서 지자체의 위치 및 지방규제의 적용 구조



출처 : 김현호·박해육(2014), 지방규제 개혁의 추진실태 및 개선방안, 수정

2. 지방규제의 특성

□ 지방규제의 특성

- 자치단체는 제·개정된 법령이 실제로 시행되는 현장이기 때문에 법령이 현장에서 시행되기 위해서는 상위 법령에 제·개정된 내용이 지자체에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될 필요성 보유
- 자치단체는 국가 위임 사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지자체는 상위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자치법규 등을 통해 규제를 설정, 집행할 수 있게 되어 있음
- 대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지자체 특성상 대부분의 규제 시행은 민원 처리형태로 나타나고 있음
- 자치단체 규제개혁의 대상은 「행정규제기본법」에서 정한 법정규제의 내용 그 이상의 범위도 포괄될 수 있는데, 이는 민원인이 지자체에 느끼는 규제개혁의 체감도는 법정규제 외에 지연행정, 불필요한 서류요구 등 공무원의 행태 등에서도 유래될 수 있기 때문

□ 지방규제 개혁의 대상

- 상당한 부분 법령 등에서 위임되는 것에서 파생
 - 자치법규에 법령 미반영, 유권해석의 문제, 집행형태 등
- 규제의 실체에 관한 것
 - 법령이나 조례, 규칙 등 규제의 내용의 불합리하거나 공익이나 사회적 총비용이 과다한 것, 규제자체의 절차나 내용의 모호 등이 포함 가능
- 규제의 행태에 관한 것
 - 재량권을 남용한 규제, 인허가 처리의 지연, 위임규제의 소극적 적용, 상위법 제·개정과 다른 규제의 적용 등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음

3. 지방규제의 현황

□ 광역지자체

- 2014년 7월 현재 지자체 등록규제는 45,950건으로 나타남
 - 244개 지자체 당 평균 205.3개이며, 광역 지자체별로는 경기도가 전체의 15.03%로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전남, 경북의 순
 - 지자체 등록규제는 중앙부처 등록규제 15,305개의 3배를 상회하고 있는 수준임⁸⁾
- ※ 「행정규제기본법」 제6조 규제의 등록 및 공표에 관한 조항, 동법 시행령 제4조 규제의 등록방법과 절차, 제5조 규제사무목록의 공표 규정에 근거하여 지자체는 규제를 등록하게 하고 있음

<표 7> 광역 지자체 등록규제 현황 (단위 :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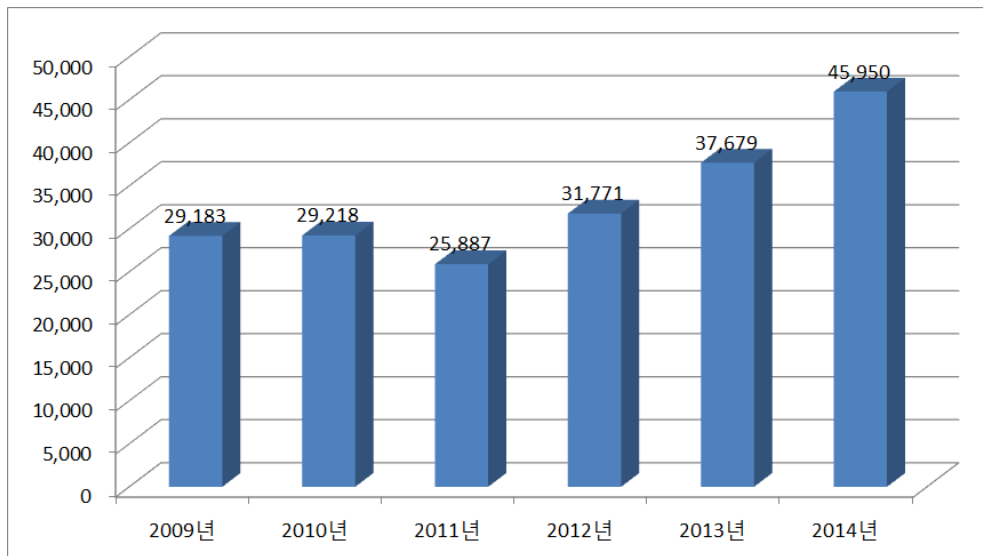
광역자치단체	규제수	비율(%)
서울	2,671	5.81
부산	1,550	3.37
대구	881	1.92
인천	1,611	3.51
광주	974	2.12
대전	608	1.32
울산	617	1.34
세종	171	0.37
경기	6,906	15.03
강원	4,342	9.45
충북	3,399	7.40
충남	3,203	6.97
전북	3,986	8.67
전남	4,819	10.49
경북	5,024	10.93
경남	3,905	8.50
제주	1,283	2.79
계	45,950	100.00

8) 참고로 2014년 4월 중앙부처 등록규제의 경우 국토부 규제가 16.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은 해수부 9.7%, 복지부 7.9%, 산업부 7.8%, 금융위 7.2%, 농식품부 6.1% 등을 차지하고 있다(규제정보포털).

□ 규제의 추세

- 시계열적으로 볼 때, 지자체 등록규제는 최근 몇 년간은 계속 증가하고 있음
 - 특히 이명박 정부 후반부터 현재까지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2011년 6월 25,887건이던 지자체 규제가 2012년 6월 31,771건, 그리고 2013년 말 37,679건이며, 2014년 7월에는 45,950건에 이르고 있음
 - 박근혜정부에 들어와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혁하려는 의지를 표명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임에 따라 지자체가 규제발굴을 보다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그림 3> 지자체 등록규제수의 추이



출처 : 규제정보포털(<http://www.better.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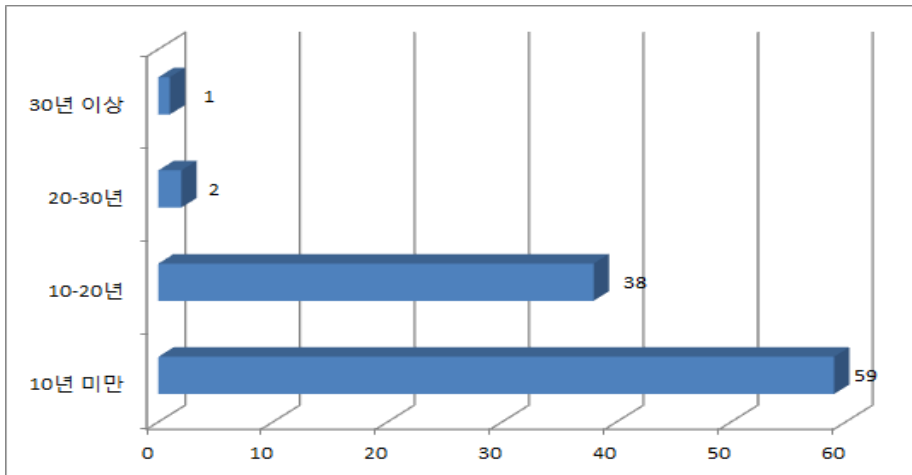
□ 규제의 연령

- 2014년 50,087개의 지자체 등록규제 가운데 10년 이상된 낡은 규제는 41%를 차지하고 있음

- 그 가운데서도 20년 이상된 규제가 3%, 10-20년이 된 규제가 38%를 차지하고 있음(전경련, 2014)

※ 규제 연령이 많을수록 제정 당시에는 적실성이 있었으나 규제 시행 후 기술이 발전하고 경제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현실과 동떨어질 소지 농후

<그림 4> 지자체 등록규제의 연령



출처 : 전경련, 2014. 4월 7일, 지방규제개선위원회 발표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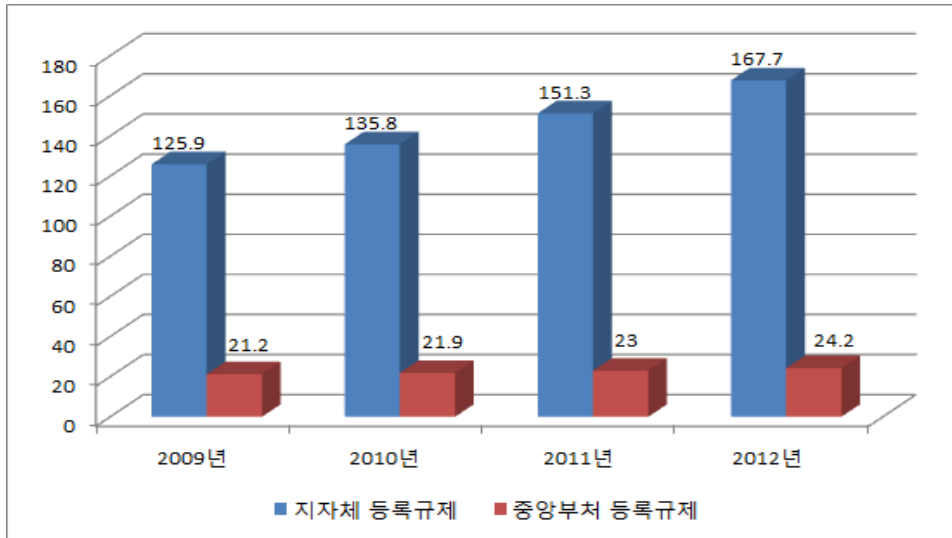
□ 공무원 당 규제건수

○ 지자체의 공무원 1,000명당 규제는 지자체가 중앙부처에 비해 6배 정도 많음⁹⁾

- 지자체 공무원 1,000명당 등록 규제 건수는 2008년 112.5건에서 2012년 167.7건으로 상당히 높은 데, 최근 들어 증가 폭이 점점 커지고 있음(현대경제연구원, 2013)

9) 물론 중앙부처 등록규제도, 13년 2월 14,951, 13년 7월 15,101, 13년 10월 15,193, 14년 1월 15,282, 14년 4월 15,305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림 5> 공무원 1000명당 등록규제 건수



출처 : 현대경제연구원(2013)

□ 형태별 지자체 규제

- 규제의 유형에서 볼 때는 각 부처가 만든 규제를 적용하기 위해 만든 조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위임 규제’ 가운데 조례가 전체의 86.2%, 규칙이 11.0%, 훈령이 2.2%를 차지

<표 8> 형태별 지자체 등록규제 현황 (단위 : 건)

구분	평균	계	조례	규칙	훈령	고시, 공고 등
계	226	50,087 (100.0)	43,189 (86.2)	5,525 (11.0)	1,081 (2.2)	292 (0.6)
광역	306	5,207	4,384	635	139	49
기초	205	44,880	38,799	4,894	943	244

출처 : 규제정보포털(<http://www.better.go.kr/>)

□ 부문별 지자체 규제

- 국토 및 도시개발과 관련된 규제가 11,774건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환경, 주택 및 건축, 도로 등을 고려하면 그 비율은 40%를 상회하고 있음

<표 9> 부문별 지자체 등록규제 현황 (단위 : 건)

구분	계	지방 행정	건설	국토 도시 개발	환경	주택 건축 도로	관광	기타 (24개 분야)
계	50,087 (100.0)	6,818 (13.6)	208 (0.4)	11,774 (23.5)	4,737 (9.5)	3,991 (8.0)	358 (0.7)	22,201 (44.3)
광역시	5,207	476	42	909	411	419	122	2,828
기초	44,880	6,330	167	10,848	4,322	3,573	240	19,400

출처 : 규제정보포털(<http://www.better.go.kr/>)

□ 규제 비용

-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3) 연구에 의하면 골프장은 아니지만 제조업에 대한 규제비용은 14억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으며, 2013년 10월 중소기업 옴부즈만실에서 파악한 중소기업 규제비용은 매출액 대비 7-10% 선으로 파악하고 있음
 - 규제비용을 10%만 줄여도 1년 중소기업 지원예산과 맞먹는 규모(중소기업연구원,2013)

4. 지방규제 실태분석을 위한 행정규제 판단기준¹⁰⁾

□ 기본원칙

- 행정규제는 행정주체가 행정객체(피규제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여하느냐 등에 따라 판단
 - 국민에게 “부담적이냐”, “편익적·수혜적이냐”를 기준으로 규제여부를 판단하여서는 안됨
 - * 대부분의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규제(환경보전 등)는 편익이 비용보다 크기 때문에 규제의 타당성이 높다는 것이지 행정규제 자체가 아닌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됨
 - * 행정기관의 장의 책무는 행정규제가 아님
- 법령 등의 규정상 권리제한, 의무부여의 대상이 “국민이나 행정기관이나”는 규정상의 형식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의무나 권리제한이 최종적으로 국민(행정객체)에게 주어지느냐의 여부로 규제를 판단
 - 행정기관에 대한 의무부과 형식의 규정이라도(내부규제형태) 종국적으로 행정기관이 의무수행을 위해 피규제자의 권리제한이나 또다른 의무를 부여하게 된다면 규제가 됨
- 법령상의 규정이 강제적이냐, 임의적이냐에 따라 규제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권리제한, 의무부여 여부로 판단
 - 임의적 규정이라도 하위규정이나 혜택의 정도에 따라 사실상 의무화 또는 강제가 되는 경우는 규제가 되며
 - 강제적인 규정이라도 하위규정 등 집행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고 단순한 사회 규범적 성격의 선언적 규정은 규제에 해당되지 않으며
 - 최초 선택(가입 등)은 임의적이더라도 선택한 이후에는 상당한 의무준수가 요구된다면 원칙적으로 별도의 규제임
- 개별 행정법령에 규정된 규제가 민법, 상법에서 규정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인 경우에는 행정규제로 판단하지 않는 것과 같이 법령의 규정형식만

10) 규제개혁위원회가 제공하고 있는 ‘행정규제 개념 및 판단기준’과 행자부의 ‘2014년 자치단체 규제업무 매뉴얼’을 참고해서 작성하였음

이 아니라 실제 규제여부로 판단

□ 구체적인 판단기준

-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단체 등에 대한 지도 감독 규정을 포함해서 17개 부문으로 구성
 - 판단기준의 부문에 따라 보다 세부적인 판단기준이 제시되어 있음(부록 참조)

<표 10> 행정규제 판단기준

부 문	부 문
1. 단체 등(협회, 조합, 투자·출자기관 등)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	2. 장려·지원을 위한 보조금지급 및 각종 지정행위 관련 규정
3. 임의적 규정 혹은 사회 규범적 규정의 규제 판단	4. 의무화되지 않은 각종 인증·검사 등에 관한 규정
5. 의무화되지 않은 등록·신청 등에 관한 규정	6. 상위법령에 따라 이루어지는 규제대상선정 고시·공고의 경우
7. “각종 지역(지구) 지정행위” 규정의 규제 판단	8. 기부금품 모집, 정부의 행사후원 승인 규정
9. 행정벌, 수수료, 사용료, 부담금 등의 경우	10. 비권력적 행정행위(공법상계약, 행정지도 등)의 성격을 갖는 규정의 규제 판단
11. 각종 “행정계획”에 관한 규정의 규제 판단	12. 공용수용, 손실보상, 국가배상등과 관련된 규정의 규제 판단
13. 각종 조사 등을 위한 사인토지 출입 및 장애물 제거조치 규정	14. 정부가 시행하는 보장제도 (의료·고용·산재보험·국민연금) 규정
15. 행정내부규제 형식 규정의 규제판단	16. 정의 규정, 특례 규정, 의제 규정
17. 시험·각종 자격의 제한요건·기준 설정 등 기타	

출처 : 규제개혁위원회, 행정규제 개념 및 판단기준; 행자부, 2014년 자치단체 규제 업무 매뉴얼

○ 판단의 기준 : 국민의 권리 제한 및 의무부과의 여부

-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규제가 아님

< 행정규제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

- 특정한 행정목적 실현을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국민에게 “부담적이나 수익적 규정이나”가 기준이 아니고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나”가 기준임

< 행정규제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국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경우나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중 그것이 특정한 행정목적 실현을 위한 것이 아닌 경우
 - 국민의 일반적인 민사, 상사생활을 규율하는 민법, 상법이나 개별 행정법령 내에 법적 명확성을 위해서 규정된 민법 혹은 상법과 동일한 정도의 규정은 ‘특정행정목적’에 해당하지 않음
 - ※ 특정한 행정목적을 위해서 민법 혹은 상법 등의 규제수준보다 강화된 요건 등을 개별 행정법령에서 규정한 경우는 행정규제임.
-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중 행정규제기본법의 적용을 제외토록 한 사무(적용제외)
 - 범죄수사등 형사관련 사무, 확정된 형을 집행하는 행형 및 보안처분 등에 관한 사무
 - (예) 형법, 형사소송법, 행형법, 보안관찰법 등의 법령과 개별 행정법내의 행정형벌(행정질서벌은 제외)규정
 -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의한 징집·소집·동원·훈련과 직접 관련된 사항
 - 징집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병역의무자 귀국보증제도’ 등은 행정규제에 해당
 -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 군사시설, 군사기밀보호에 관한 사항
 - 조세의 종목, 세율, 부과 및 징수와 직접 관련된 사항
 - 조세의 종목, 징수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주류관련 면허, 업종에 따른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의무 등은 행정규제에 해당

-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부문별로 행정규제가 되는 경우와 행정규제가 되지 않는 경우를 설명, 적시, 예시하고 있음

-----<구체적인 판단기준 제시의 일부>-----

2-1. 단체 등(협회, 조합, 투자·출자기관 등)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

< 기본적인 판단 >

- ◆ 단체 등의 성격(행정기관의 지위 여부)과 정부의 출자의 범위 등을 종합 고려하여 규제 여부를 판단
 - 국가기능 대행·위탁수행시 : 대행·위탁의 범위내에서 행정기관 지위
 - 정부의 출자·보조의 정도 : 보조·출자범위내에서 소유주로서의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은 내부규제

2-1-1. 관련법령에 의한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협회·조합에 대한 감독관련 규정의 규제 판단

- 관련법, 조례 등에 의해 일정한 국가기능(개발사업, 교육, 검증, 확인, 점검 등)을 위탁·대행하여 수행하는 협회 : 당해 범위내에서 행정기관의 지위에 있음(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제1항 제4호)
 - ▶ 행정권한 대행·위탁기관에 대한 위탁업무와 직접 관련된 지도·감독관련 사항은 원칙적으로 행정내부규제로 행정규제가 아님
 - (예) 소방안전협회, 소방검정공사, 대한지적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가스안전공사, 축산물등급판정소 등에 대한 보고의무, 감사, 감독관련 규정 등
 - ▶ 협회·단체의 전체업무 중 위탁·대행하는 국가기능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음에 비해 협회 등에 대한 과다·포괄적인 지도·감독은 행정규제임
 - (예) 기관장 임면, 포괄적 업무현황보고, 협회자체업무에 대한 통제규정 등

2-1-2. 정부출자·투자기관·특수법인의 경우

- 기획재정부에서 지정하여 공시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감독사항과 투자비율에 따라 감독자(소유주)의 입장에서 행하는 감독사항은 행정규제에서 제외

- ▶ 정부가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 출자의 범위내(소유자로서)에서 행하는 일반적인 지도·감독적 기능은 **행정규제가 아님**
(예) 예산승인, 업무보고, 임원선임 관련 규정등
- ▶ 출자의 범위에 비해 과도하게 해당기관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정도의 지도·감독은 **행정규제임**
- ▶ 무자본특수법인으로 대부분의 재산을 국가로부터 무상사용, 관리하는 경우 이에 대한 지도·감독은 **원칙적으로 행정규제가 아님**
(예) 한국환경자원공사, 환경관리공단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

2-1-3. 개별법(특별법)에 의해 설립되어 독점적·배타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법령 등의 근거에 의해 민간부분에 대해 지도·감독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 민간(회원 등)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지위에 있고, 감독부처(정부)와는 피규제자의 위치에 있는 이중적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판단
- ▶ 해당기관이 행정기관의 지위에서 행하는 국민, 거래자 등에 대한 규제는 **행정규제임**
- ▶ 해당기관이 행정기관의 지위에 있을 경우 정부가 행하는 지도·감독은 **행정규제가 아님**
(예) 증권거래소, 증권예탁원, 선물거래소, 소비자보호원 등

2-1-4. 민법등에 근거하여 설립인가된 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

- ▶ 민법 혹은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설립규정, 해산사유 등 주무관청의 지도·감독 규정은 **행정규제가 아님**
- ▶ 민법 혹은 상법보다 강화한 감독 등의 규정은 **행정규제임**

위 II-2-1 판단기준은 대상기관 자체의 성격 분류 등에 따른 감독기관의 **지도·감독기능(각종 보고, 정관·결산·예산승인, 임원임면 등)에 한한 것**이며, 지도·감독 외의 사항은 성격에 따라 **별도로 규제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예) 증권거래소법의 “비회원의 거래소 거래제한”, “회원변동공고의무”, “임직원의 자기거래 제한”,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영수증 교부·보관의무” 등

2-2. 장려·지원을 위한 보조금지급 및 각종 지정행위관련 규정

2-2-1. 각종 보조금(기금, 저리융자 등 포함)등의 지원대상 선정 규정

-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육성 등의 차원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의 성격상 지원총액 규모에 따른 대상자 선정기준은 원칙적으로 규제가 아니며 지급후에 수반되는 의무는 규제가 될 수 있음
 - ▶ 지급할 보조금의 규모등에 따라 분배를 위한 지급기준, 대상자 선정기준, 지원한도, 대출이율 등 보조금의 지원 및 선정기준은 **원칙적으로 행정규제가 아님**
 - ▶ 보조금 지급대상자의 선정기준이 보조금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이 여타 행정목적 실현을 위하여 설정하는 기준은 **행정규제임**
- (예) 특정한 지역에 한정하는 선정기준 등
 - ▶ 승인조건, 매칭펀드 요구 등 민간이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보조금 지급의 요건으로 하는 경우 이러한 행위요건은 **행정규제임**

2-2-2. 보조금 등 지원후의 의무사항 및 감독관련 규정

- 보조금 지급기관에 대한 지도·감독행위는 보조금의 성격과 보조금의 규모에 따라 판단 (보조금의 성격상 원칙적으로 2-1-2와 같은 소유주로서의 지도·감독관계에 있지 않음)
 - ▶ 보조금의 지급 범위내에서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목적에 적합한 정도의 지도·감독은 **원칙적으로 행정규제가 아님**
 - * 단위사업 혹은 단체활동에 지원되는 보조금등이 차지하는 비율등을 고려, 보조금의 지원범위 내에서의 불가피한 지도·감독 등의 경우(예: 보조금의 사용 내역통보 등)
 - ▶ 단, 일부보조 혹은 상환을 전제로 한 저리융자인 경우에 행하는 과도한 지도·감독 등은 **행정규제임**

(예)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포괄적인 업무보고의무, 보훈기금에 의해 대부 받은 부동산(농토, 주택등)에 대한 직접관리기간설정, 양도·담보금지제한 규정 등

- ▶ 보조금·지원금의 부정수급자에 대한 환수 또는 지원중단 조치에 대한 규정의 경우, 수급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지원의 범위내에서 환수조치하거나, 지원을 중단하도록 한 규정은 **행정규제가 아님**

2-2-3. 각종 보조,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지정 등의 경우

- ▶ 지정을 받지 않더라도 동일행위를 할 수 있으며, 홍보효과 등 혜택은 있으나 지정대상을 크게 제한하지 않는 경우는 **행정규제가 아님**

(예) 해당되는 지역내에서는 신청한 경우 대부분 지정되는 민박농어가 지정 등

(예) 식품접객업소중 우수업소지정, 클린 주유소 지정, 환경친화기업 지정, 생태마을 지정, 명장등의 선정, 기능장려우수사업체 선정,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 등

- ▶ 지정에 따른 홍보효과 및 각종 지원의 혜택이 큼에 비추어 대상중 지정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와 지정후 부과되는 의무·금지규정 및 의무 불이행 또는 금지사항 위반시 지정취소 규정은 **행정규제임**

2-3. 임의적 규정 혹은 사회규범적 규정의 규제 판단

2-3-1. 법령규정상 “~할 수 있다, ~권고할 수 있다” 등 임의적으로 규정된 경우

- ▶ 집행을 위한 하위규정이 마련되지 않고 사실상 선언적으로 규정된 경우는 **행정규제가 아님**

- ▶ 하위규정에서 구체적으로 준수 절차가 마련되어 있고, 따르지 않을 경우 상당한 불이익이 있거나 이익이 크게 줄어들어 사실상 준수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는 **행정규제임**

(예) 무선국의 의사공중선 사용권고, 화학물질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규정

2-3-2. “~의 인가를 받아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할 수 있다”와 같이 설립등에 대해 임의적으로 규정한 경우

- ▶ 설립, 가입 등 선택이 임의적인 경우 그 자체는 규제에 해당되지 않으나
 - ▶ 선택 후(설립·가입하려면) 반드시 일정한 절차의 준수가 필요하다면 선택에 따르는 의무사항 자체는 **행정규제가 될 수 있음**
 - 설립절차, 정관의 내용, 사업범위, 이사회 구성·운영 등에 대한 개별법령의 규정이 민법, 상법에서 정한 법인 혹은 회사의 설립관련 규정과 동일하거나 완화한 수준인 경우 : **행정규제가 아님**
 - 설립절차 등에 대한 규제의 정도가 민법, 상법의 정도를 넘어서는 경우나 민·상법의 규정과 다른 경우 : **행정규제임**
- (예) 설립이 임의적인(할 수 있다)인 경우 설립은 규제가 아니나 사업자 단체 설립시 출자한도제한, 조합원의 최소구성인수제한, 각종 수익사업시 승인 등의 규정은 행정규제임

2-3-3. “~ 경우 신고를 해야한다” 등 시민의 당연한의무(응급환자·화재발견시 신고 등)

- ▶ 단순히 선언적으로만 규정한 경우는 **행정규제가 아님**
 - ▶ 처벌규정이 있거나 하위규정 등으로 의무화의 구체성이 있는 경우는 **행정규제임**. 단, 처벌 규정이 있더라도 사회통념상 당연한 규정은 **행정규제가 아님**
- (예) 근로자에 대한 폭행금지 는 행정규제가 아님
- ▶ 건전한 시민의 당연한 의무 및 일반적 사회규범에 속하는 규정이라 하더라도, 이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규제대상자에게 비용 등의 실질적인 부담이 요구되는 경우는 **행정규제임**
- (예) 장애인 차별금지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등 실질적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출처 : 규제개혁위원회, 행정규제 개념 및 판단기준; 행자부, 2014년 자치단체 규제업무 매뉴얼

□ 비규제의 유형

- 행정규제기본법에서 규제로 정의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기 보다는 권장, 수익자 부담원칙에 대한 비용, 사회적 통념 등은 비규제로 판단
 - 보상금 및 보훈수당, 교육·문화·체육·복지시설의 사용제한, 투표운동의 제한, 단체장의 책무나 의무사항은 비 규제에 속함
 - 공무원이나 지방세 관련 체납자에 대한 징수, 손실보상에 대한 이의신청, 의견수렴 등 사후구제 수단은 비 규제에 속함
 - 사회규범적 성격으로 포괄적이며 선언적인 내용,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 등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있는 사항은 규제가 아님
 - 행정기관내 위원회의 구성은 행정내부규제로 비규제에 해당되며, 부담금의 선정방법 및 절차 등은 규제가 아님

<표 11> 비 규제의 대표적인 유형

유형	내용
보조금·용자금·지원금, 장학금	- 보조대상, 지원기준, 결정변경, 귀책사유에 의한 지원중단, 사용내역에 대한 지도 감독 등 - 예) 00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운영조례 : 용자 및 보조
사용료, 대부료, 수수료	- 체육, 문화, 복지시설, 분노 운반 등 납부방법, 감면 - 예) 00군 예술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사용료 납부 및 반환
점용료, 주차요금, 보상금	- 산정기준, 징수방법, 지급절차 등 - 예) 00시 하수도 사용조례(점용료), 도로점용료 징수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른 비용	- 이용단체의 비용부담, 사업비 결정 등 - 예) 어항시설관리규정 : 관리비 부담범위
감사, 선거관련 내용	- 행정감사, 보조금지원단체 감사, 투표운동 제한 등 - 예) 행정감사규칙 : 감사대상기관
행정기관의 장 등 책무	- 시장, 군수, 구청장, 광역단체장의 고유한 책무 - 예) 도지사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공무원, 지방세관련	- 수입증지 판매, 체납자 명단, 납세자 의무 등 - 예) 시세 기본조례 부과징수 규칙 : 주택신고 의무

유형	내용
사후규제 수단	- 손실보상 차원, 이의신청 등 - 예) 00시 수도급수 조례 : 이의신청, 손실보상금 징수
선언, 통념적 내용	- 사회규범적 성격으로 포괄적이며 선언적인 내용 -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있는 사항 - 예) 주민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
기타	- 행정기관내 위원회 구성, 부담금 산정방법 및 절차 등 - 예) 00시 건축조례: 위원회는 一로 구성한다(행정기관내 위원회 구성)

출처 : 행자부, 2014년 자치단체 규제업무 매뉴얼

□ 상위 법령 고려 규제 검토 사항

- 상위 법령과의 면밀한 비교검토를 포함해서 적극적 규제라고 할 수 있는 법령 근거가 없이 설치된 규제, 법령보다 강화한 규제를 포함해서, 소극적 규제라고 할 수 있는 법령 재개정사항 미반영 규제, 상위 법령의 소극적 적용 규제, 상대적 차별로 인한 규제, 평등원칙 등 일반원칙 위반 규제 등이 검토될 수 있음

적극적 규제	- 법령의 근거가 없는 규제 - 법령 보다 강한 규제
소극적 규제	- 법령 재개정 사항 미반영 - 상위 법령 소극적 적용 - 상대적 차별로 인한 규제 - 일반원칙(평등원칙 위반)

제3장

사례지역 규제 실태분석

제1절 분석의 개요

제2절 사례지역 지방규제의 현황

제3절 사례지역 규제의 실태분석

제3장

사례지역 규제 실태분석

제1절 분석의 개요

1. 분석의 프레임

- 규제를 분석할 대상의 선정
 - 규제는 조례에 있지만 등록하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경제적 제한, 전체 조례에 대한 광범위한 분석보다는 조례 가운데 등록된 규제를 대상으로 함
 - ※ 조례에 규제의 성격을 지닌채 규정되어 있지만 지자체 공무원이 규제로 등록하지 않은 규제는 한계를 벗어남
 - ※ 남원시 자치법규의 수 : 총 451개 (조례 279, 규칙 91, 훈령 75, 예규 6)
- 남원시 등록규제 전수의 내용 확보
 - 규제정보 포털에서 남원시가 등록한 409개 규제내용을 추출
 - ※ 개별정보의 구성 : 기본정보, 법적근거, 상세정보

< 등록된 개별 규제의 내용구성 >

- 기본정보 : 규제사무명, 등록사유, 사무특성, 자치단체, 소관부처, 등록일 등
- 법적근거 : 상위법령, 자치법규, 공포일, 시행일/폐지일, 존속기한
- 상세정보 : 규제목적, 규제내용 등

< 등록된 규제의 예시>

1. 기본정보

규제등록번호 남원시-2011-0056-01
 규제사무명 사용료 반환
 등록사유 기존규제
 사무특성 위임사무
 자치단체 전라북도 남원시
 처리기관 안전경제건설국 원예허브과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등록일 2011-07-01
 유형별 4호 기타
 부문별 농지농정

2. 법적근거

상위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
 자치법규 남원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조례 제13조제3항
 공포일 2005-02-14
 시행일/폐지일 2005-02-14 /-
 존속기한 미설정

3. 상세정보

규제목적 사용료 반환
 규제내용 (사용료 등 반환)
 ③ 납부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2조
 제 1항 제 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규제기준 -
 처리기간 - 처리절차 -
 구비서류 -
 변동경과 -
 규제재검토-

출처 : 규제정보포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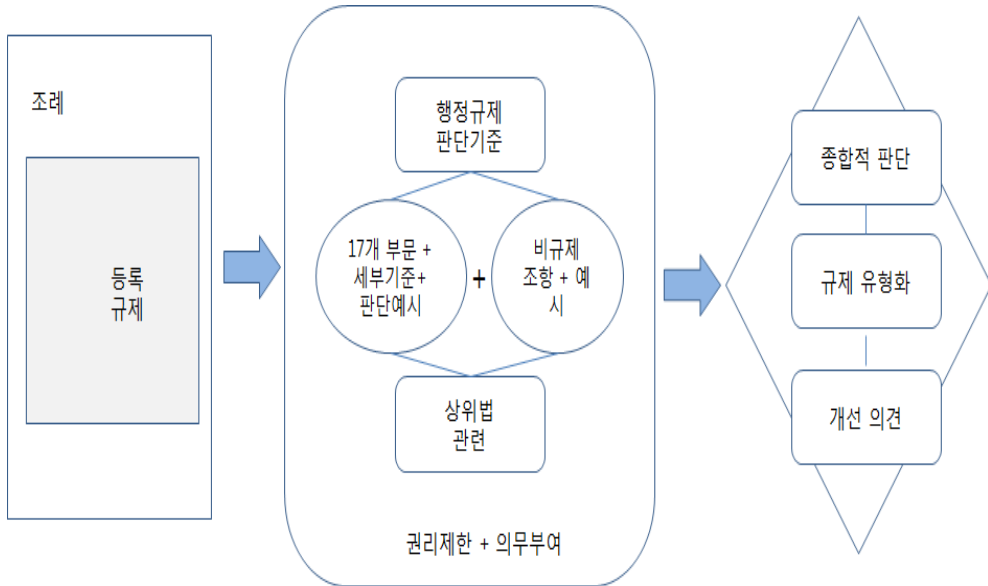
○ 행정규제 판단 기준 등 적용

- 규제의 내용을 숙지, 이해한 후 행정규제 판단기준 등과의 일치, 불일치 여부 등 판별
 - ※ 규제기준 17개 부문과 행자부가 제시하는 비규제 등 참조
- 제시하고 있는 규제가 남원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지 등

○ 문제규제 등을 종합적으로 판별하고 개선의견 제시

- 규제가 근거하고 있는 조례를 찾아서 취지와 내용, 규제의 조항 등을 파악
- 규제의 내용의 문제여부, 상위법과의 관련성 등을 법률적 지식 뿐 아니라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규제를 식별하고 검토의견을 제시할 뿐 아니라 문제점을 도출
 - ※ 법제처 등의 전문적 지식의 검토
- 문제가 되는 규제의 귀납적으로 유형화하고 특성을 파악
- 품질높은 규제개혁을 위한 개선방안과 처방을 제시

<그림 6> 규제분석 작업의 프레임



2. 분석의 양식

○ 개별 규제의 판단

- 행정규제 등록 양식을 토대로 규제 검토를 위해 필요한 실용적인 양식으로 수정, 변경
- 연번, 부문, 사무특성, 중앙부처 등을 삭제
- 규제 사무명, 세부유형(행정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2조가 제시하는 4가지 근거), 자치법규 근거, 상위법 근거, 검토의견, 개선사항 등으로 구성
- ※ 주로 행정규제의 판단기준을 적용하여 규제 등을 판단하는 틀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음

<표 12> 행정규제 판단의 양식

규제 사무명	세부 유형	자치법규 근거	상위법 근거	검토 의견	개선 사항

○ 개별 규제의 심도있는 분석

- 분석의 프레임은 규제명, 규제의 내용, 검토의견, 개선방안 등으로 구성

<분석 양식 : 검토 의견 및 개선방안 제시>

1. 규제의 내용

- 조례 명칭 및 제 00조
- 규제의 목적
- 규제의 내용 : 조례의 해당 조문

2. 관련 상위 법령

- 상위 법령 명칭 기술

3. 검토의견

- 규제의 문제점 및 검토의견

4. 개선방안

- 규제 폐지, 개선 등 (규제조항 폐지 등 포함)

현행조문	개선안
*현행 조문 제시	*개선 조문 제시

5. 유사조례

- 유사조례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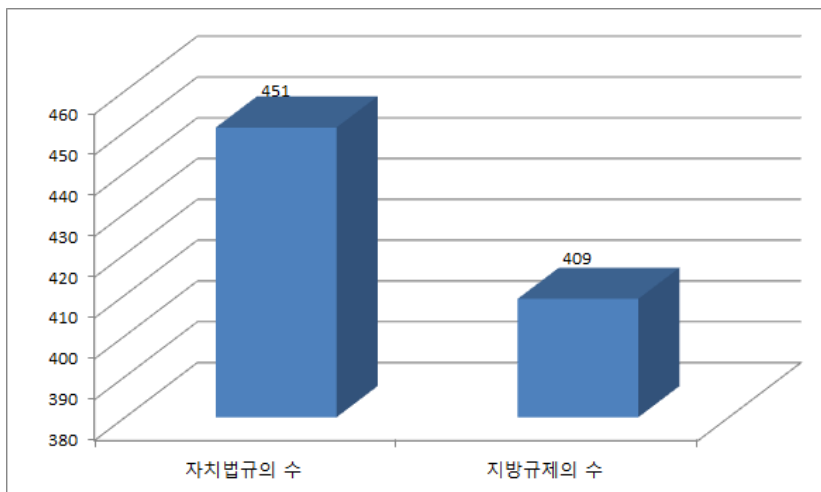
제2절 사례지역 지방규제의 현황

1. 규제의 개요

□ 규제의 총수

- 남원시의 2014년 7월 현재, 조례, 규칙 등 자치법규는 451개를 차지하고 있음
 - 이 가운데 조례가 84.2%, 규칙이 12.4%, 훈령 등 기타의 비율이 3.4%를 점하고 있음
 - 이는 2014년 대비 30개가 감소한 수치임
- 남원시 공무원¹¹⁾ 1인당 규제는 0.39개를 차지하고 있음

<그림 7> 남원시 자치법규의 수, 지방규제의 수



출처 : 규제정보 포털

11) 공무원 수는 남원시 통계연보에서 제공하는 2012년 공무원 수를 활용하였으며, 본청 및 사업소와 읍면동 공무원 수를 모두 포함하였음

□ 연도별 규제 등록

- 남원시의 2014년 7월 현재 규제정보포털에 등록되어 있는 409개 규제의 연도별 등록을 보면 2013년에 169건으로 현재 등록되어 있는 규제의 41.3%를 차지하고 있음
 - 2013년 다음으로는 2011년에 101건, 2012년에 90건 순으로 나타남
 - 2011년 이후 등록된 규제 수는 362건으로 현재 등록되어 있는 규제의 88.5%를 차지하여 대부분의 규제가 최근에 등록된 것으로 분석됨

<표 13> 남원시 연도별 규제 등록현황

등록 연도	총	1998	1999	2000	2003	2005	2006	2009	2011	2012	2013	2014
규제수	409	17	3	3	13	5	2	4	101	90	169	2
비율	100	4.2	0.7	0.7	3.2	1.2	0.5	1.0	24.7	22.0	41.3	0.5

□ 규제의 내용

- 국토 및 도시개발이 24.2%로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지방행정 14.1%를 차지하고 있음
 - 이 가운데, 기타 43.2%는 30개 지방규제 등록 분류 가운데 지방행정, 건설, 국토도시개발, 환경, 주택건축도로, 관광 6개 분야를 제외한 것임

<표 14> 남원시 규제의 내용현황

구분	지방 행정	건설	국토도시 개발	환경	주택건 축도로	관광	기타	계
규제수	58	2	99	39	33	2	177	409
비율	14.1	0.4	24.2	9.6	7.9	0.5	43.2	100

제3절 사례지역 규제의 실태분석

1. 남원시 규제검토 및 분석

- 남원시가 등록하고 있는 409개 규제를 대상으로 비규제 등의 기준을 적용하여 규제를 검토,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정리,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분석의 틀과 기준에 의해 앞에서 제시한 양식으로 개별 규제를 분석

<표 15> 남원시 규제의 검토 및 분석

규제 사무명	세부 유형	자치법규 근거	상위법 근거	검토의견	개선방안
임용자격 기준	기준 설정	-남원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지방공무원법제 2조제4항	-조례폐지로 등록규제 삭제	-규제포털 삭제
사용료 수강료의 반환	기준 설정	-남원시여성문화센터 운영조례		-선언적 내용으로 규제가 아님 -시장의 의무사항으로 고유한 채무로 해석되어야 하기 때문에 비규제에 해당됨	규제에서 삭제
사용료 수강료의 면제	기준 설정	-남원시여성문화센터 운영조례		-선언적 내용으로 규제가 아님	규제에서 삭제
수탁자의 의무	기준 설정	-남원시노인복지관 설치및운영조례	-노인복지법	-사회 통념에 준하는 사항으로 비규제 조항에 해당됨	비규제 조항 삭제
노인복지관 사용료	기준 설정	-남원시노인복지관 설치및운영조례	-노인복지법	-선언적 내용으로 규제가 아님	규제에서 삭제
재난지원금의 반환	기준 설정	-남원시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지원조례	-재난및안전관리 기본법	-시장의채무및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규제가 아님 -선언적내용으로 구체적 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등 규제가 아님.	규제에서 삭제 *선언적 내용 구체화 필요

규제 사무명	세부 유형	자치법규 근거	상위법 근거	검토의견	개선방안
백두대간생태공원 입장료	기준 설정	-남원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 휴양 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수익자부담원칙의 비규제	규제에서 삭제
손해배상 등	기타	-남원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 휴양 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비규제에해당 -시장의의무,책무	규제에서 삭제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 자격	기준 설정	-남원시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조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비규제에해당 -조례폐지(2014.2.10/조례1074호)로등록 규제삭제	-규제포털 삭제
수탁자의 의무	기준 설정	-남원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 휴양 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사회통념상 수인 하는 사항으로 비규제 조항에 해당됨	비규제 조항 삭제
백두대간생태공원사용제한	금지	-남원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 휴양 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선언적 내용으로 규제가아님 -생태문화시설에 대한 금지는 규제에 해당되지 않음	선언적 내용의 수정 필요 (비규제 해당)
백두대간생태공원 행위제한	금지	-남원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 휴양 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비규제에 해당	-규제조항 삭제
위탁의 취소	기준 설정	-남원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장애인복지법	-선언적 내용으로 규제가 아님	선언적 내용의 수정 필요 (비규제 해당)
피해발생의 신고의무	신고 의무	-남원시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 조례 제6조	-농어업재해 대책법	-선언적 내용으로 규제가 아님	선언적 내용의 수정 필요 (비규제 해당)
중복지원의 금지	금지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32조		-보조금 -선언적내용으로 규제가아님	선언적 내용의 수정 필요 (비규제 해당)
지원 등의 취소	기준 설정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35조		-보조금 -선언적내용으로 규제가아님	선언적 내용의 수정 필요 (비규제 해당)

규제 사무명	세부 유형	자치법규 근거	상위법 근거	검토의견	개선방안
목적외 사용금지	금지	-남원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16조	-사회적기업 육성법	-선언적 내용으로 규제가 아님	선언적 내용의 수정 필요 (비규제 해당)
교육비 신청 및 지원 기준	기준 설정	-남원시 소형 특수 농기계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비 지원 조례 제5조	-농업기계화 촉진법	-교육비는 장학금 등과 같은 성격의 지원으로 규제가 아님	규제에서 삭제
포상금 지급 취소	기준 설정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37조		-가능성을 언급하는 선언적 내용으로 규제가 아님	선언적 내용의 수정 필요 (비규제 해당)
옷칠공예관 사용료	기준 설정	-남원시 옷칠공예관 운영관리 조례 제6조		-수익자 부담의 사용료로 비규제, (사용료를 모두 내지 않는 실익이 없는 규제)	- 규제 제외
보고 및 검사	지도	-남원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17조	-사회적기업 육성법	-비규제, 규제폐지 -교부보조금의사용 내역등관련지도, 감독사항으로비 규제에해당 -선언적 내용으로 규제가 아님	규제에서 삭제
옷칠공예관 위탁의 취소	기준 설정	-남원시 옷칠공예관 운영관리 조례 제9조		-선언적 내용으로 규제가 아님	선언적 내용의 수정 필요 (비규제 해당)
수탁자의 의무	기준 설정	-남원시 백동연죽장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제7조		-보조금 -사회통념상수인할수 있는사항으로비규제 조항에해당됨	비규제 조항 삭제
춘향골체육공원 시설개방의 제한	금지	-남원시 춘향골체육 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제7조		-선언적 내용으로 규제가 아님	선언적 내용의 수정 필요 (비규제 해당)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기준 설정	-남원시 문화체육 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제5조		-선언적 내용으로 규제가 아님	선언적 내용의 수정 필요 (비규제 해당)

규제 사무명	세부 유형	자치법규 근거	상위법 근거	검토의견	개선방안
위탁의 취소	기준 설정	-남원시 백동연죽장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제9조		-선언적 내용으로 규제가 아님	선언적 내용의 수정 필요 (비규제 해당)
입장 제한	금지	-남원시 문화체육 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제16조		-문화시설에 대한 입장제한, 문화체육 시설 등을 위한 최소한의 제한으로 비규제에 해당 -선언적 내용으로 규제가 아님	규제에서 삭제
장학금의 지급 중지	기준 설정	-남원시 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폐지 (14.2.10/ 조례 1072호)로 등록규제 폐지	-규제포털 삭제
춘향골체육 공원 사용 제한	금지	-남원시 춘향골체육 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제5조		-선언적 내용으로 규제가 아님	선언적 내용의 수정 필요 (비규제 해당)
사용허가 받은 자의 의무	기준 설정	-남원시 지리산 소극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사회통념상 수인하수 있는 조항으로 비규제 조항	규제에서 삭제
입장 제한	금지	-남원시 지리산 소극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선언적내용으로규제 가아님 -문화시설사용에대한 최소한의제한은비규 제에해당	선언적 내용의 수정 필요 (비규제 해당)
사용료의 반환	기준 설정	-남원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제10조		-체육, 문화, 교육시설 등의 사용료에 대한 반환은 비규제에 해당	규제에서 삭제
지리산소극장 사용 허가제한	금지	-남원시 지리산 소극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선언적 내용으로 규제가 아님	선언적 내용의 수정 필요 (비규제 해당)

규제 사무명	세부 유형	자치법규 근거	상위법 근거	검토의견	개선방안
교통공원 이용의 제한	금지	-남원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선언적 내용으로 규제가 아님 -공원및체육시설의사용에대해최소한의제한을가하고있는사항으로비규제에해당	선언적 내용의 수정 필요 (비규제 해당)
허가신청 및 사용료 등	기준 설정	-남원시 지리산 소극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선언적 내용으로 규제가 아님 -사용료 납부는 비규제에 해당	규제에서 삭제
평생학습센터 감독	지도	-남원시 평생학습 조례 제12조	-평생교육법	-선언적 내용으로 규제가 아님	선언적 내용의 수정 필요 (비규제 해당)
자치사랑방 사용료	기준 설정	-남원시 자치사랑방 설치 및 운영조례		-선언적 내용으로 규제가 아님 -체육,문화,교육시설에대한사용료는 비규제	규제에서 삭제
장학생수와 장학금액	기준 설정	-남원시 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폐지(2014.2.10 / 조례 1072호)로 등록규제 삭제	-규제포털 삭제
어린이 교통공원 수탁자의 의무	기준 설정	-남원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있는 사항으로 비규제 조항에 해당	규제에서 삭제
국악의 성지 관람의 제한	금지	-남원시 국악의 성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선언적 내용으로 규제가아님 -문화시설사용에 대해 규제함으로써 비규제에 해당	규제에서 삭제
행위의 제한	금지	-남원시 심수관 도예전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선언적 내용으로 규제가 아님	선언적 내용의 수정 필요 (비규제 해당)

규제 사무명	세부 유형	자치법규 근거	상위법 근거	검토의견	개선방안
관람의 금지	금지	-남원시 심수관 도에전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선언적 내용으로 규제가 아님 -교육문화시설에대한 관람을금지하고있으 므로비규제에해당되 어야함	규제에서 삭제
투표운동의 제한	금지	-남원시 주민투표 조례	-주민투표법	-투표등선거와관련된 내용으로투표운동의 제한에해당되어비규 제에해당 -선언적내용으로 규제가아님	선언적 내용의 수정 필요 (비규제 해당)
지원신청 및 보고 의무	보고 의무	-남원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국가보훈 기본법	-교부 보조금 사용내용 등 관련 지도감독 사항은 비규제에 해당	비규제 삭제
정보공개 비용부담	기타	-남원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 비규제 조항으로 삭제 필요	비규제 조항 삭제
공간정보 제공 수수료 징수	기타	-남원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선언적 내용으로 규제가 아님 -주민의권리를제한하 지않은비규제조항으 로삭제	비규제 조항 삭제
이의신청의 거부 및 중지	기준 설정	-남원시 경계결정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사후구제수단으로비 규제에해당 -선언적내용으로규제 가아님	비규제 삭제
자원봉사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기준 설정	-남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비규제 : 행정내부규제	- 규제 삭제
위원의 제척 및 기피	기준 설정	-남원시 경계결정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규제가아님 -선언적내용으로규제 가아님	선언적 내용의 수정 필요 (비규제 해당)

규제 사무명	세부 유형	자치법규 근거	상위법 근거	검토의견	개선방안
상징물 사용료	기타	-남원시 상징물 관리운용 및 상표권 행사에 관한 조례		-사용료 비규제에 해당	비규제 삭제
금고 지정의 방법	기준 설정	-남원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지방재정법	-선언적 내용으로 규제가 아님	선언적 내용의 수정 필요 (비규제 해당)
민간위탁사무 이의신청	기준 설정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지방자치법	-선언적내용으로규제가아님 -사후구제수단으로비규제에해당 -유사사례는제주특별자치도의수도급수조례제55조	선언적 내용의 삭제 혹은 수정 필요 (사후구제는 비규제 해당)
사용료 및 관리수수료	기타	-남원시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복지시설에대한사용료는비규제에해당 -선언적내용으로규제가아님	
지원사업	기준 설정	-남원시 귀농·귀촌 지원 조례 제9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	-선언적 내용으로 규제가 아님	선언적 내용의 삭제 혹은 수정 필요
과태료 부과	행정 질서법	-남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1항	-상위법의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비규제 조항 포함	-비규제 조항 삭제, 수정
사용료 등	기타	-남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 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체육, 문화, 교육 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규제가 아님	
지원의 취소	기준 설정	-남원시 귀농·귀촌 지원 조례 제11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보조금 수급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지원중단 및 회수는 비규제에 해당	
과태료 부과기준	행정질서법	-남원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조례폐지(14.4.2 / 1083호)로 등록규제 삭제	-규제포털 삭제

규제 사무명	세부 유형	자치법규 근거	상위법 근거	검토의견	개선방안
과태료 부과기준	행정 질서법	-남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폐기물관리법 제38조의3	-규제 등록번호 2012-53과 동일 내용으로 중복등록되어 삭제	
사용허가 및 유효기간	허가	-남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위임 관리 조례 제10조	-상표법 제41조	-선언적 조항과 실익이 없는 조항 포함 규제	-관련 조항 삭제
원인자부담금 징수	기타	-남원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20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선언적 내용으로 규제가 아님	선언적 내용의 삭제 혹은 수정 필요
이용 제한	행정 질서법	-남원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제7조	-청소년기본법	-선언적내용으로규제가아님 -사용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어 비규제에 해당	선언적 내용의 삭제 혹은 수정 필요
허가 취소	행정 질서법	-남원시 훈향문화 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제7조		-선언적 내용으로 규제가 아님 -사용료등의납부기한을명시함으로써비규제에해당	선언적 내용의 삭제 혹은 수정 필요
사용허가 취소	행정 질서법	-남원시 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 관리 조례 제2조		-규제 등록번호 2011-60과 동일 내용으로 중복등록되어 삭제	
복지회관 사용	허가	-남원시 읍·면 종합복지회관 운영 관리 조례 제12조		-선언적 내용으로 규제가 아님	선언적 내용의 삭제 혹은 수정 필요
지원대상	기준 설정	-남원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제3조 제2항		-비규제	삭제 필요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 설정	-남원시 건축조례 제40조	-건축법 제61조	-정의규정은 비규제에 해당	삭제 필요

규제 사무명	세부 유형	자치법규 근거	상위법 근거	검토의견	개선방안
입장 제한	기타	-남원시 문화체육 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제16조제1호		-규제 등록번호 2013-131과 동일 내용으로 중복등록 되어 삭제	
채광불 채취료 징수	신고 의무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0조제5항	-공유재산및물품 관리법제32조 -공유재산및물품 관리법시행령제 31조	-선언적 내용으로 규제가 아님	선언적 내용의 삭제 혹은 수정 필요
지원대상	기준 설정	-남원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제3조 제3항		-비규제	삭제 필요
소하천 점용료 감면	기타	-남원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제3조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5조의2	-점용료 및 사용료는 비규제 해당	삭제 필요
이행보증금 예치	기타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제30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2항	-규제 등록번호 2013-17과 동일 내용으로 중복 등록되어 삭제	-규제포털 삭제
가산금 및 독촉	행정질 서법	-남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제27조	-하수도법	-수수료부과는행정 규제가아님 -사용에대한대가로해 석함이타당하고분뇨 수집및운반에대한사항도비규제에해당	-규제 삭제
하수도 배출량 조사	단속	-남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제17조	-하수도법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있는사항으로비규 제 조항에 해당 -공무원 조사는 행정내부규제 조항으로 비규제 조항 포함	-삭제필요
위탁의 취소	행정 질서법	-남원시 건강가정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14조	-선언적 내용으로 규제가 아님	선언적 내용의 삭제 혹은 수정 필요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기준 설정	-남원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20조	-하수도법 제61조 제1항	-부담금 산정방법은 비규제 조항 포함	-비규제 조항 삭제 혹은 개선

규제 사무명	세부 유형	자치법규 근거	상위법 근거	검토의견	개선방안
시설설치비의 부과	통지 의무	-남원시 농공지구 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18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5조 내지 제27조	-선언적 내용으로 규제가 아님	선언적 내용의 삭제 혹은 수정 필요
시장 사용취소	행정 질서법	-남원시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제29조		-선언적 내용으로 규제가 아님 -사용료 납부기간 납부방법 등은 비규제에 해당	선언적 내용의 삭제 혹은 수정 필요
개발회사설립 자본금	지정	-남원시 개발회사 설립 조례 제5조	-지방공기업법 제79조	-조례폐지(14.2.10 / 조례 1075호)로 등록규제 삭제	-규제포털 삭제
검사, 지도, 보고등	지정	-남원시 개발회사 설립 조례 제14조 제1항	-지방공기업법 제79조	-조례폐지(14.2.10/ 조례 1075호)로 등록규제 삭제	-규제포털 삭제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행정 질서법	-남원시 문화체육 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제5조		-규제 등록번호 2013-129와 동일 내용으로 중복 등록되어 삭제	-규제포털 삭제
수탁자의 의무	금지	-남원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사회통념상수인할수 있는사항으로비규제 조항에해당→삭제 필요 -규제등록번호2013-135와동일내용으로 중복 등록되어 삭제	-규제포털 삭제
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행정 질서법	-남원시 귀농·귀촌 지원 조례 제11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	-시장의 의무사항은 비규제 해당	비규제 삭제
입주 자격	기준 설정	-남원시 지방공업 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제15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	-규제 등록번호 2013-13과 동일 내용으로 중복 등록되어 삭제	-규제포털 삭제
용자금 상환	행정 질서법	-남원시 재난관리 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제8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규제 등록번호 2013-43과 동일 내용으로 중복 등록되어 삭제	-규제포털 삭제

규제 사무명	세부 유형	자치법규 근거	상위법 근거	검토의견	개선방안
사용허가 받은 자 의무	금지	-남원시 지리산 소극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		-사회통념과일치하는 내용으로실익이없는 비규제조항→삭제 필요 -규제등록번호2013-111과동일내용으로 중복등록되어삭제	-규제포털 삭제
사용허가	허가	-남원시 춘향골 체육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제3조		-규제 등록번호 2013-137과 동일 내용으로 중복등록 되어 삭제	-규제포털 삭제
허가취소	행정질서법	-남원시 지리산 소극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		-규제 등록번호 2013-110번과 동일 (중복 등록으로 삭제)	-규제포털 삭제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행정질서법	-남원시 문화체육 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제14조		-실익이 없는 조항의 규제로 삭제 필요 -체육,문화,교육시설 에대한사용료는비규제조항에해당 -규제등록번호2013-129과동일내용으로 중복등록되어삭제	-규제포털 삭제
주차요금 및 가산금 등	행정질서법	-남원시 주차장조례 제3조	-주차장법 제8조 제2항	-규제명과 하위의 규제내용 불일치	주차장 설치로 명칭변경 필요
이용자의 해위 제한 및 퇴장	행정질서법	-남원시 흥부골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문화시설에 대한 입장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비규제에 해당	삭제 필요
소요난동 금지	금지	-남원시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제42조		-포괄적인 내용, 형법상의 금지 행위에 해당되어 행정규제가 아님	삭제 필요
사용허가	허가	-남원시특산품전시관 매장운영관리조례 제17조		-전시판매장의 성격이 공공시설 이나 아니냐에 따라 규제와 비규제로 갈라질 것, 공공시설이면 비규제에 해당	- 판단 애로

규제 사무명	세부 유형	자치법규 근거	상위법 근거	검토의견	개선방안
사용료 반환	기타	-남원시 승화원·승화당 설치 및 사용조례 제5조 제2항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복지시설의 사용료에 대한 사항은 규제가 아님	삭제 필요
관리인 교육	고용 의무	-남원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공중화장실 관리는 비규제 해당	삭제 필요
점용료의 반환	기타	-남원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제7조 제2항	-도로법 제41조	-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에 대한 사항은 규제가 아님	삭제 필요
사용료 반환	기타	-남원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조례 제13조제3항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	-규제가아님 -합리성이결여된규제로실무상으로는일할계산을하여반환해주고있음	삭제 필요
점용료 산정기준	기타	-남원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제3조 제1항	-도로법 제41조	-점용료 징수 및 산정기준은 규제가 아님	삭제 필요
시설사용 계약의 해약	기타	-남원시 춘향문화 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5조		-문화시설의 사용료에 대한 사항으로 규제가 아님	삭제 필요
위탁 운영	기준 설정	-남원시 백동연죽장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제6조		-선언적 내용으로 규제가 아님	선언적 내용의 삭제 혹은 수정 필요
시설수탁자의 의무 및 위탁의 취소 지도·단속·감독	명령	-남원시 영유아 보육조례 제24조	-영유아보육법 제12조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있는 사항으로 비규제 조항에 해당되어 삭제 필요	비규제 조항 삭제
농산물산지 유통센터사용 허가 취소	허가	-남원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조례 제12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	-선언적 내용으로 규제가 아님	선언적 내용의 삭제 혹은 수정 필요

규제 사무명	세부 유형	자치법규 근거	상위법 근거	검토의견	개선방안
그밖의 용도 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기준 설정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0 제2호	-선언적 내용으로 규제가 아님	선언적 내용의 삭제 혹은 수정 필요
시설수탁자의 의무	신고 의무	-남원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있는 사항으로 비규제 조항이며 삭제 필요	비규제 조항 삭제
청소년수련 시설 수탁자의 의무	지도	-남원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제10조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있는 사항으로 비규제 조항이며 삭제 필요	비규제 조항 삭제
기금의 중단 및 회수	결정	-남원시 여성발전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규칙폐지(13.9.27 / 1047호)로 등록규제 삭제	-규제포털 삭제
양수기 대여자 에 대한 관리 감독	지도	-남원시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 제9조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있는 사항으로 비규제 조항으로 삭제 필요	비규제 조항 삭제
시장사용상 위생관리 명령	명령	-남원시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제11조		-선언적 내용으로 규제가 아님	선언적 내용의 수정 필요 (비규제 해당)
대행업자의 지정취소	결정	-남원시상수도급수 조례제9조제1항 -남원시 상수도급수 공사 대행업자 영업규칙 제19조		-수도법 제38조 규정과 배치	규제 수정
공설묘지 사용 허가의 취소	행정 질서법	-남원시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1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복지시설의 사용료, 수수료 및 그 반환에 대한 사항은 규제가 아님	비규제 삭제
정수처분	행정 질서법	-남원시 상수도 급수조례 제39조	-수도법 제38조	-선언적 내용으로 규제가 아님	선언적 내용의 수정 필요 (비규제 해당)

2. 남원시 규제분석 결과의 유형화

□ 규제와 비규제의 판별

- 분석된 409개 규제 중 규제에 적합하게 식별된 규제는 297건으로 남원시 전체 등록 규제의 72.7%를 차지하고 있음
 - 나머지 112개 규제 중 21건은 폐지하였음에도 규제정보포털에 등록이 되어 있음
 - 91건은 2014년 자치단체 규제업무 매뉴얼의 비규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등 개선이 필요한 문제가 있는 규제임

<표 16> 남원시 등록 규제 식별 결과

구분	문제가 없는 규제	문제가 있는 규제	등록삭제 필요 규제	계
규제 수	297	91	21	409
비율(%)	72.7%	22.2%	5.1%	100%

□ 문제가 있는 규제의 유형

- 대상
 - 문제가 없는 297건의 규제를 제외한 112건이 해당됨
- 규제의 유형화
 - 규제 자체가 비 규제에 해당 : ‘투표운동의 제한’, ‘점용료 산정기준’과 같이 규제 자체가 비규제에 해당하는 경우가 10건으로 8.1%를 차지
 - 비규제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80건으로 71.4% 차지
 - ※ 비규제 조항의 사례 : 포괄적이고 선언적인 내용이 포함된 경우,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있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 보조금, 사용료, 점용료와 같은 비규제 조항이 삽입되어 있는 경우 등이 해당
 - 삭제된 규제임에도 규제정보포털에 남아 있는 경우 : 21건으로 18.8%로 높은 비율을 차지

- 그 외 : 규제 내용과 규제명이 상이한 경우가 1건, 실익이 없는 규제가 2건을 차지하고 있음

<표 17> 문제가 있는 규제의 유형화

구분	폐지대상 규제	비규제조항 포함 규제	등록오류 규제	실익부재 규제	폐지규제 등록	계
내용	비규제에 해당	비규제 내용 및 규제개선 포함 포함 규제 *합리성 결여 규 제 등 포함	규제 내용 과 규제명 불일치	실익이 없 는 규제	규제가 폐지 되었는데 규 제 등록	
규제수 (개)	10	80	1	2	21	112
비율 (%)	8.1	70.7	0.9	1.8	18.8	100

3. 유형별 규제의 세부적 검토

1) 대표적인 비규제의 규제화

①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휴양시설설치 및 운영 조례 : 입장료

□ 규제의 내용

○ 조례의 명칭 : 남원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휴양 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제6조(입장료 등)

○ 규제의 목적

- 백두대간의 문화·역사·생태 자원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 남원 백두대간 생태 교육장 체험·휴양시설을 설치하고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생태 교육장 체험·휴양시설에 대한 입장료를 부과하여 시설의 효율적 보수, 유지, 운영 등에 기여하기 위함

○ 규제의 내용

- 제6조(입장료 등) ① 체험·휴양시설의 입장료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체험·휴양시설의 입장료는 매표소에서 입장권 판매 시 이를 징수한다.
③ 체험·휴양시설의 입장권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민 및 그 수행자
 2.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
 3. 만 6세 이하인 자 및 만65세 이상인 자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3급 장애인(동반 보호자 1명 포함)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7.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
 8.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5.18 민주 유공자와 그 유족
 9.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
 10. 남원시민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관계증명서를 제시하여 남원 시민으로 인정되는 사람

관련 상위 법령

- 상위 법령이 없음

검토의견 및 문제점

- 체험·휴양시설의 입장료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 재화와 서비스 편익을 누린 사람이 당연히 내야하는 의무적 성격 보유
- 따라서 수수료, 사용료 관련 규정으로 규제가 아님

□ 개선방안

- 사용자의 편익에 대한 댓가이자 의무이기 때문에 규제에서 삭제
- 법령의 근거 없는 규제이기도 해서 폐지가 바람직함

현행조문	개선안
<p>제14조(손해배상 등) ① 시장은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에 손실을 끼칠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p> <p>② 배상(변상)에 관한 세부사항은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남원시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 한다.</p> <p>제6조(입장료 등) ① 체험·휴양시설의 입장료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p> <p>② 체험·휴양시설의 입장료는 매표소에서 입장권 판매 시 이를 징수한다.</p> <p>③ 체험·휴양시설의 입장권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p> <p>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민 및 그 수행자 2.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 3. 만 6세 이하인 자 및 만65세 이상인 자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3급 장애인(동반 보호자 1명 포함)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7.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 8.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5.18 민주 유공자와 그 유족 9.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 10. 남원시민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관계증명서를 제시하여 남원시민으로 인정되는 사람 	삭제

유사 조례

- 수원시 생태환경체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고양시 생태공원 및 교육센터 운영·관리 조례

②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 중복지원 금지

조례의 내용

- 조례의 명칭 :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 규제의 목적
 - 남원시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투자유치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

관련 상위 법령

- 중소기업 지원법

규제의 내용

제32조(중복지원의 금지)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업이 동일 목적의 국가나 전라북도 및 시의 다른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다만, 시장은 제1항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 시의 투자보조금 지원예정액 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검토의견 및 문제점

- 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 동일한 기업에 대해 중복으로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도 동일한 광역자치단체 내에서 광역과 기초가 행정기관이 보조금을 지원할 때 중복적으로 지원하지 않음은 사회통념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아울러 설명 본 규제의 내용이 합당하다 하더라도 이는 행정기관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단체장의 고유한 책무이자 의무사항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합당함
- 따라서 본 규제는 내용적으로는 지극히 당연한 것을 규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무 관점에서도 행정기관의 장의 의무사항으로 볼 수 있음

개선방안

- 규제로 따로 등록하여 관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규제에서 삭제함이 타당

③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휴양시설설치 및 운영 조례 : 손해배상

조례의 내용

- 조례의 명칭 : 남원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휴양 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14조 1, 2(손해배상 등)
- 규제의 목적
 - 백두대간의 문화·역사·생태 자원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 남원 백두대간 생태 교육장 체험·휴양시설을 설치하고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과실로 인해 손해배상을 입히는 경우, 원상복구 및 이에 대한 보상을 하도록 하여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
- 규제의 내용

제14조(손해배상 등) ① 시장은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에 손실을 끼칠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배상(변상)에 관한 세부사항은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남원시 물품 관리 조례」를 준용 한다.

관련 상위 법령

- 상위 법령이 없음

검토의견 및 문제점

- 시설 이용자가 시설물에 대해서 손해를 끼쳤을 경우, 해당 당사자에게 손실에 대한 보상을 청구한다는 취지
- 공공시설의 행정재산에 대한 손실보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단체장이 당연히 수행해야 하는 의무사항이나 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특히,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 규정에 의하면 생태교육장 체험 휴양 시설 설치 및 운영은 자치단체 장의 고유한 권한에 속함
 - 동법 시행령에 의하면 공유재산의 설치,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은 전적으로 자치단체장이 정할 수 있는 고유 사무에 속함
- 따라서 본 규제는 규제라기 보다는 행정기관의 장이 수행해야 하는 당연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해석함이 보다 타당하다고 사료됨

개선방안

- 폐지 혹은 행정기관의 의무사항이 되지 않게 규제(조례)를 개선

현행조문	개선안
제14조(손해배상 등) ① 시장은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에 손실을 끼칠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배상(변상)에 관한 세부사항은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남원시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 한다.	삭제 (혹은 개선)

□ 유사 조례

- 수원시 생태환경체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고양시 생태공원 및 교육센터 운영·관리 조례

④ 남원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17조 : 목적외 사용금지, 보고 및 검사

□ 규제의 내용

- 조례의 명칭 : 남원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16조(목적 외 사용 금지), 제17조(보고 및 검사)

○ 규제의 목적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한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 지원 등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
- 사회적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보조해 줌으로써 지역공동체 기업으로의 성장을 유도하고 지원하기 위함

○ 규제의 내용

제16조(목적외 사용금지) ①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기업 등은 사업계획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사업계획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재정지원을 교부받은 사회적기업 등은 「남원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 및 관련 법령에 의하여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금에 대한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부받은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관련 상위 법령

- 사회적 기업 육성법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 검토의견 및 문제점

- 사회적 기업의 재원지원에 대한 규제의 성격도 일부 있으나, 보다 큰 맥락에서는 사회적 기업을 육성, 장려하기 위한 보조금 성격의 재원지원으로 이해함이 타당함
-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규제는 첫째, 재원을 “사업계획 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사회통념적인 내용을 언급하고 있음
- 둘째, 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사업계획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 역시, 단체장으로서 당연히 수행해야 할 책무나 의무사항을 적시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음
- 다음으로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등의 시장에게 제출은 교부 보조금의 사용내역 등에 관련된 지도, 감독사항으로 비 규제에 해당된다고 봄이 보다 타당함
- “시장은 지원금에 대한 적절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부받은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 역시, 지극히 선언적인 규정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
 - “할 수 있다, 권고할 수 있다” 등 집행을 위한 구체적인 조항이 마련되어 있어 사실상 선언적인 조항에 해당
- 동시에 이는 행정기관의 장으로서의 시장의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성격이 강함
 - 기관장의 책무인 경우 굳이 별도의 규제로 등록, 관리할 필요가 없음

- 따라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목적 외 사용금지, 보고 및 검사는 굳이 규제로 등록해서 관리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함이 상당한 설득력을 지니고 있음

□ 개선방안

- 사회적 기업에 대한 재원은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보조금 지원의 성격으로 이해하는 관점의 개선이 필요
 - 보조금의 지원이라면 규제에서 삭제
- 목적 외 사용금지 관련 조항이 사회 통념에 준하는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보고 및 검사 등도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규제에서 삭제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동시에 대부분의 내용이 단체장의 책무나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현행조문	개선안
제16조(목적외 사용금지) ①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기업 등은 사업계획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사업계획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삭제
제17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재정지원을 교부받은 사회적기업 등은 「남원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 및 관련 법령에 의하여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금에 대한 적절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부받은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삭제

유사 조례

- 남원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 남해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논산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 단양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담양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 당진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대구광역시 남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 주요 비규제 조항 포함 규제

① 남원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조례 : 사용료 반환¹²⁾

규제의 내용

- 조례의 명칭 : 남원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조례 제13조제3항(사용료 등)
- 규제의 목적
 - － 남원시 남원시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원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농업인의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
 - － 특히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수탁운영을 통해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농업인의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12) 상위법의 위임을 벗어난 규제에 해당되기도 함

○ 규제의 내용

제11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유통센터를 수탁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중략 >

제13조(사용료 등) ①유통센터의 사용료는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유통센터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 10으로 하되 매년 유통센터의 운영 실적에 따라 위원회에서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

②수탁자는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③납부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수탁자는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각종 부과금, 소독비, 냉·난방비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 관련 상위 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수산물의 선별·포장·규격출하·가공·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이를 설치하려는 자에게 부지 확보 또는 시설물 설치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운영을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검토의견 및 문제점

- 위탁한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를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에 위탁하여 운영에 자율성을 보장하는 관점에서 사용료라는 가격에 대한 것이 가장 큰 핵심이 되는 규제라고 할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규정은 수탁자는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하게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납부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함을 규정하고 있음
- 사용료 선납의 경우 실제로 선납하는 경우가 거의 없을 뿐 아니라, 특별한 이유나 쌍방의 합의 등 절차를 생략하는 등 위탁자에게 과도한 규제가 되는 요소가 되고 있음
- 아울러 납부된 사용료는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는 재화의 사용을 전제로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고 함으로써 실무상으로는 일할계산을 하여 반환해주고 있음을 고려할 때, 가격에 대한 합리성이 결여된 불명확한 규제가 되는 문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이는 또한 동 조항의 불합리함으로 인해 건설한 사업자가 위탁사업에 진출하려는 유인을 감소시켜 결과적으로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의 품질을 저하시킬 수도 있음
- 그리고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를 위탁한 남원시는 상위법령인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부여한 재량권을 벗어나 과도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음
 - 동법 시행령 제42조의2(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운영)은 1천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설물 및 장비의 이용료를 징수하게 하고 있으나 조례는 유통센터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 10으로 하되 매년 유통센터의 운영실적에 따라 위원회에서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동법 시행령 제42조의2 규정: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자는 시설물 및 장비의 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총당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와 협의하여 매출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설물 및 장비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개선방안

- 사용료 반환에 대해서는 계약관계에 의한 재화의 사용에 합당하게 일할 계산 등으로 규제에 대한 명확성과 합리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체육, 문화, 복지, 교육시설 등 공익성이 큰 시설의 성격을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가 지닌다면 원천적으로 규제가 되지 않는 비 규제일 수도 있어 검토 필요
- 과도한 사용료의 부과는 상위법의 위임 영역을 벗어난 사항으로 상위법이 제시하는 범위내로 규제의 정비 필요

현행조문	개선안
제13조(사용료 등) ①유통센터의 사용료는 납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유통센터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 10으로 하되 매년 유통센터의 운영실적에 따라 위원회에서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 ②수탁자는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③납부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수탁자는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각종 부과금, 소득비, 냉·난방비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료 등) ①유통센터의 사용료는 납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유통센터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 5로 하되 매년 유통센터의 운영실적에 따라 위원회에서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 ②수탁자는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삭제 혹은 사용료는 쌍방이 합의해야 한다) ③ 납부된 사용료는 일할계산해서 반환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수탁자는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각종 부과금, 소득비, 냉·난방비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 유사 조례

- 고양시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경기도고양시조례 제1431호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서울특별시조례 제5710호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 도매시장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규칙 제3895호
-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② 남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 과태료 부과기준 및 절차

규제의 내용

- 조례의 명칭 : 남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과태료 부과기준 및 절차)
- 규제의 목적
 -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 음식물류 폐기물을 발생 방법을 준수를 도모하기 위한 규제
- 규제의 내용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 ① 제19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2와 같다.
- 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법·법 시행령·법 시행규칙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에 따른다.

관련 상위 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38조의3

검토의견 및 문제점

- 제20조 1항과 2항 가운데, 제2항에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

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법·법 시행령·법 시행규칙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부과절차에 대한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국민의 권리를 제약하는 요소에 대한 구체성이 결여되고 있음
- 동시에 규제의 내용을 적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에 따른다”라는 상위 법령 준수의 내용을 자치법규에서 언급하고 있음
- 자치법규는 상위 법령의 위임사항을 규정해야 한다는 입법 원리에 어긋날 뿐 아니라, 상위법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내용으로, 입법 원리에 비추어 볼 때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을 규제에 포함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규제 가운데 제2항은 비규제 조항으로 판단할 수 있음

□ 개선방안

- 규제 가운데 비 규제 조항에 대한 규제 개혁이 필요
 - 부과 절차나 방법을 소상하게 제시하거나, 폐지
 - 규제가 기반하고 있는 조례의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현행조문	개선안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제19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법·법 시행령·법 시행규칙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에 따른다.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제19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2와 같다. 삭제

□ 유사 조례

- 제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충청북도제천시조례

-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 양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③ 남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제17조 : 하수도배출량 조사

□ 규제의 내용

- 조례의 명칭 : 남원시 하수도사용 조례(과태표부과기준 및 절차)
- 규제의 목적
 - 남원시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 하수도의 적정한 배출량 조사와 관리를 통한 하수도 처리의 품질제고
- 규제의 내용

제17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시장은 조례 제16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토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시장이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분실 한 경우, 계측장치의 검사유효기간이 경과 되었거나 자연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이유로 하수배출량 산정이 곤란 한 경우에는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 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경우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른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같은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인공구조물 설치 등을 해서는 안 된다.

관련 상위 법령

- 하수도법

검토의견 및 문제점

- 제17조 규제의 조항 가운데, 1항은 “제16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이 조항은 공무원의 임무를 규정한 것으로 보아 행정내부규제 해당되어 규제에 해당되지 않으며, 선언적인 조항으로도 해석할 수 있음
- 동시에 제2항은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제3항은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경우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임의성을 동반한 선언적 내용으로 규제가 아님
- 따라서 동 규제는 행정내부규제와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있는 선언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규제라고 할 수 있음

개선방안

- 규제 가운데 비 규제 조항에 대한 규제 개혁이 필요
 - 규제가 기반하고 있는 조례의 개정도 동시에 필요

현행조문	개선안
<p>제17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시장은 조례 제16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토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시장이 한다.</p> <p>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p> <p>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분실 한 경우, 계측장치의 검사유효기간이 경과 되었거나 자연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이유로 하수배출량 산정이 곤란 한 경우에는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 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p> <p>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경우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른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같은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p> <p>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인공구조물 설치 등을 해서는 안 된다.</p>	<p>① 삭제.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토록 하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시장이 한다.</p> <p>② 삭제</p> <p>③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 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한다.</p> <p>④ 삭제 및 수정</p> <p>⑤ 좌동</p>

□ 유사 조례

- 강릉시 하수도 사용 조례
- 괴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 양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 규칙

3) 주요 실익이 없는 규제

- ① 남원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제14조 :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 규제의 내용

- 조례의 명칭 : 남원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과태표부과기준 및 절차)
- 규제의 목적
 -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예술의 향상을 도모하고 생활체육을 통한 건강한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남원시문화체육센터(이하 "문화체육센터"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 하수도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 규제의 내용

제5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3. 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②기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 중이라 할지라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허가 또는 사용을 취소·변경할 수 있다

관련 상위 법령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검토의견 및 문제점

- 제5조는 기본적으로 사용의 허가 및 취소를 규정하는 조항이라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이 조항은 행정기관 시설물의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기본적인 의무규정은 행정목적상 필수적인 것으로 규제 등록의 실익이 없다고 할 수 있음
- 1.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3. 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등 모두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음
- 더구나 이런 조항의 내용은 상당히 선언적일 뿐 아니라 추상적이며, 자의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규제의 실효성을 보유하기 어려움
- 아울러 단체장의 고유한 의무사항이나 책무인 성격도 동시에 지니고 있음
- 따라서 동 규제는 행정기관 시설물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기본적인 의무규정에 해당되는 내용을 구성되어 있어 실익이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음

개선방안

- 행정규제 등록이 실익이 없으므로 규제에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

현행조문	개선안
<p>제5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p> <p>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3. 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p>②기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중이라 할지라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허가 또는 사용을 취소·변경할 수 있다</p>	<p>삭제</p>

유사 조례

- 원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 고성군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 청송군진보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4) 주요 포탈등록을 삭제해야 할 규제

1. 기본정보	
규제등록번호	남원시-2013-0125-01
규제사무명	장학생수와 장학금액
등록사유	누락
사무특성	자치사무
자치단체	전라북도 남원시
처리기관	충무국 교육체육과
소관부처	
등록일	2013-11-26
유형별	3호 기준설정
부문별	교육학술
2. 법적근거	
상위법령	
자치법규	남원시 장학금 지급 조례
공포일	1995-01-12
시행일/폐지일	1995-01-12 / 2014-02-10
존속기한-	
3. 상세정보	
규제목적	장학생수와 장학금액
규제내용	
제4조(장학생수와 장학금액)	
①장학생은 매 학년마다 4월이내에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각각 10인이내에서 선발한다.	
②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액은 당해 학년도 공납금 전액으로 한다.	
③선발된 장학생중 타 학교에 진학을 하거나 신체 또는 정신 이상으로 수학의 가망이 없는 자, 학업성적이 불량하여 장학금 지급이 중단된 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결장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규제기준-	
처리기간-	처리절차 -
구비서류-	
변동경과 -	조례폐지(2014.2.10 / 조례 1072호)로 등록규제 삭제
규제재검토-	

5) 기타 문제 규제

① 남원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 조례의 내용

- 조례의 명칭 : 남원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
- 규제의 목적
 - 담배소매인의 지정에 거리제한을 둔 규제
- 규제의 내용

제4조(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2호의 부적당한 장소에 다음 각 호를 추가한다.

1.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을 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2. 개별법에서 허가(신고)받은 업종 외에 다른 업종을 겸업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경우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의한 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장소의 소매인은 영업소간 거리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지정할 수 있다.

가. 역·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 등의 교통수단

나.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시설

다.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라.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마. 백화점·쇼핑센터·대형마트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

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사. 매장면적은 실제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바닥면적을 말하며, 건물구획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다만 매장내 냉장고, 계산대, 진열장 등이 차지하는 면적은 포함한다.

2.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내

2개소 이하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 ③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측정방법은 특정 영업소의 벽과 다른 영업소의 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행자의 통행방법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한다.

관련 상위 법령

- 담배사업법

검토의견 및 문제점

- 담배소매업의 확대로 시민의 건강이 침해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담배 소비와 판매점의 거리제한과는 무관함
- 특히 담배소매업의 적정업소의 지정 기준을 정하는 것은 시장의 활동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매우 부적절함
 - 공급자는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 자신의 입점위치, 입점시간 등을 자발적으로 정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시장의 균형은 이루어짐
 - 특히 동 규정과 관련한 유사규제인 목욕탕 거리제한, 주유소 거리제한 규제 등이 모두 헌법상의 영업의 자유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폐지된바 있음
- 따라서 담배판매업의 거리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둔 동 규제는 폐지되어야 함

개선방안

- 보다 많은 업종이 담배 소매업에 진출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이들의 시장 활동 범위가 더욱 폭넓게 보장되도록 동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현행조문	개선안
<p>제4조(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2호의 부적당한 장소에 다음 각 호를 추가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을 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2. 개별법에서 허가(신고)받은 업종 외에 다른 업종을 겸업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경우 <p>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의한 소매인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장소의 소매인은 영업소간 거리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지정할 수 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역·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 등의 교통수단 나.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시설 다.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라.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마. 백화점·쇼핑센터·대형마트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 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사. 매장면적은 실제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바닥면적을 말하며, 건물구획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다만 매장내 냉장고, 계산대, 진열장 등이 차지하는 면적은 포함한다. 2.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내 2개소 이하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p>③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측정방법은 특정 영업소의 벽과 다른 영업소의 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행자의 통행방법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 거리로 한다.</p>	(삭제)

유사 조례

- 춘천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 부여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 화순군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
- 경주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 영덕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 창원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② 남원시 상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조례의 내용

- 조례의 명칭 : 남원시 상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4조 (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
- 규제의 목적
 - 담배소매인의 지정에 거리제한을 둔 규제
- 규제의 내용

제4조(지정기준) ① 시장은 급수지역의 범위, 급수전수, 급수인구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대행업자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고에 의하여 신청을 받아야 하며, 이때 공고기간은 10일 이상으로 남원시 홈페이지 및 상수도사업소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② 시장은 대행업자를 지정함에 있어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기준(별표 1) 및 선정 평가기준(별표 2)에 따라 평가결과 80점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정한다. 다만, 평가결과 80점 이상 해당되는 업체수가 대행업체 지정대상 업체수에 미달될 경우에는 고득점자 순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3.6.14.]

[별표 1]<개정 2001. 9. 28, 2013. 6. 14.>

상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기준 (제4조제2항 관련)

구 분	법 인	개 인	비 고
기술능력	시공기술자 2인 이상 (대표자 포함)	시공기술자 2인 이상 (사업자 포함)	
자본금	2억원 이상	2억원 이상	
영업시설	사무실	30제곱미터 이상(남원시 관내 소재)	
	전화	전화국 가입전화 1대 이상	
공사용 기계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물차(1톤이상) 1대이상 ◦ 천공기(무단수) 1대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경(mm): 5종(20, 25, 32, 40, 50) ◦ 콘크리트 컷터기 1대이상 ◦ 진동로울러 또는 램마 1대이상 ◦ 양수기(구경: 40mm이상) 2대 이상 ◦ 발전기(5kw이상) 1대이상 (추가장비 : 포크레인, 덤프트럭)		

비고

1. 시공기술자 인정조건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기능사 자격취득자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 기계분야 초급기술자 이상의 경력자

 관련 상위 법령

- 상위 법령 없음

 검토의견 및 문제점

- 동 자치법규는 남원시의 상하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자본금과 사무실 등 일정 수준의 기준을 충족한 업체에 자격을 제한한 규제임
- 위와 같은 규제는 상하수도 대행업자 지정에서 특정한 업체에 제도적인 특혜를 주는 것으로 동 규제에 소수의 업체는 혜택을 보는 셈이 됨

- 반면 상하수도 대행시장 자체에 진입이 불가능해진 경쟁업체를 포함해 상하수도를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남원시민들에게는 상대적인 부담을 야기하는 것임
- 동 자치법규의 경우 별표 1을 통해 대행업자 지정 자격기준으로 자본금과 사무실 등의 기준을 두고 있으나, 이와 같은 자본금과 사무실 등의 기준은 실제 상하수도 대행업과 무관한 것으로 굳이 규정을 둘 필요가 없음
 - 상하수도 대행업자의 경우 관련된 해당 설비를 동원할 능력이 중요하므로, 자본금과 사무실 등이 일정 기준 이상으로 설치되어야 할 필요가 없음

□ 개선방안

- 동 규정에 제시된 기준, 특히 자본금과 사무실 등의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기업이 사업권을 획득하는 데 유리하고, 창업 초기나 역력이 작은 기업에는 불리하게 작용
- 따라서 동 규정의 삭제로 소규모의 기업에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현행조문	개선안
제4조(지정기준) ① 시장은 급수지역의 범위, 급수전수, 급수인구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대행업자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고에 의하여 신청을 받아야 하며, 이때 공고기간은 10일 이상으로 남원시 홈페이지 및 상수도사업소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② 시장은 대행업자를 지정함에 있어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기준(별표 1) 및 선정 평가기준(별표 2)에 따라 평가결과 80점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추천을 통해 정한다. 다만, 평가결과 80점	제4조(지정기준) ① 시장은 급수지역의 범위, 급수전수, 급수인구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대행업자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고에 의하여 신청을 받아야 하며, 이때 공고기간은 10일 이상으로 남원시 홈페이지 및 상수도사업소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② 시장은 대행업자를 지정함에 있어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기준(별표 1) 및 선정 평가기준(별표 2)에 따라 평가결과 80점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추천을 통해 정한다. 다만, 평가결과 80점

<p>이상 해당되는 업체수가 대형업체 지정대상 업체수에 미달될 경우에는 고득점자 순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3.6.14.]</p>	<p>이상 해당되는 업체수가 대형업체 지정대상 업체수에 미달될 경우에는 고득점자 순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3.6.14.] (별표 1 내용 중 자본금 및 사무실 기준 삭제)</p>
--	--

유사 조례

- 군포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6조
- 용인시 상수도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4조, 별표2.
- 당진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

③ 남원시 고문변호사 조례

조례의 내용

- 조례의 명칭 : 남원시 고문변호사 조례 제2조(위촉 및 위촉의 제한)
- 규제의 목적
 - 남원시청의 운영에 입법, 법률상의 조언이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위해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기 위해 도입된 규정
- 규제의 내용

제2조(위촉 및 위촉의 제한)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2명 이내의 남원시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관련 상위 법령

- 상위 법령 없음

□ 검토의견 및 문제점

- 이 규제는 남원시 시정 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나 조문을 살펴보면 남원시의 고문변호사로 위촉되는데 불합리한 진입장벽을 설정한 것으로 판단됨
 - 동 규제의 내용을 보면 그 대상을 개업 중인 변호사에 국한하고 있어서 진입규제의 성격을 갖고 있음
 - 개업하지 않은 변호사에게도 고문변호사로서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음
- 고문변호사의 자격을 개업 중인 변호사로 굳이 제한을 둬으로써 헌법재판관, 대법관등의 고위법관, 검사 등으로 은퇴하고 개업하지 않은 변호사들이 오히려 관련분야에 더 큰 전문성과 식견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음에도 동 규정으로 인해 이런 사람들의 고문변호사 위촉이 사실상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됨
- 입법고문과 법률고문에 대한 진입제한으로 경쟁력 있고 품질 높은 입법이나 도정운영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이 부담하게 됨
- 따라서 동 규제는 존치시키되 지역 혹은 진입제한을 없애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개선방안

- 남원시 고문변호사의 경우 개업 중인 변호사에 국한하지 않고, 조례의 내용을 ‘변호사’로 대체하는 것이 필요함
- 고문변호사의 위촉은 공개모집을 취하고 시장의 자의가 아닌 의회나 구정조정위원회에 협조나 의결을 얻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동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현행조문	개선안
제2조(위촉 및 위촉의 제한)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2명 이내의 남원시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제2조(위촉 및 해촉의 제한)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회의 협조를 받아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2명 이내의 남원시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유사 조례

- 춘천시 고문변호사조례
- 청주시 고문변호사조례
- 청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 부여군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에 관한 조례
- 화순군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 영덕군 고문변호사 조례
- 창원시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 경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④ 남원시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조례의 내용

- 조례의 명칭 : 남원시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제24조(환부)
- 규제의 목적
 - 시장 사용 및 운영관리에 있어서 사용료 및 사용보증금 관리에 관한 규칙을 마련함으로써 공설시장 운영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음

○ 규제의 내용

제24조(환부)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이를 환부하지 아니 한다. 다만, 월액으로서 남원시장이 필요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 있어 그 달의 15일전의 취소에 속한 것은 전액을 16일 이후의 취소에 속한 것은 반액에 상당한 사용료를 사용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

□ 관련 상위 법령

- 상위 법령 없음

□ 검토의견 및 문제점

- 동 규정은 남원시의 시장 사용 및 관리를 위한 사용료 조항을 마련한 것이나, 납부한 사용료에 대한 환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점에서 시장에서의 계약관행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경쟁제한적인 규제임
- 민간에서 경제주체들 간의 계약과 이를 통한 사용료와 보증금의 지급과 반환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됨
 - 위와 같은 계약을 통해 사용료 반환의 경우에는 양 당사자 중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일정한 부담을 감수할 수 있긴 하지만 계약의 취소에 따른 사용료 반환이 가능함
 - 동 규정에 따르면 남원시 시장 개설 계약을 맺게 되면 이후에는 상황의 변화와 그에 따른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등의 상황이 발생되었다고 할지라도 원칙적으로는 사용료의 반환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전형적인 행정우위적, 행정편의적인 자치법규인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동 사용료 반환금지에 대한 규정은 개선되어야 함

□ 개선방안

- 동 규정은 사용료의 원칙적인 미반환을 규정한 것으로 폐지되어야 함

- 원칙적으로는 반환을 허용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미반환 하는 것으로 네거티브 방식의 개선이 필요함

현행조문	개선안
제24조(환부)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이를 환부하지 아니 한다. 다만, 월액으로서 남원시장이 필요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 있어 그 달의 15일전의 취소에 속한 것은 전액을 16일 이후의 취소에 속한 것은 반액에 상당한 사용료를 사용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	(삭제)

유사 조례

- 경주시공설시장업무규정
- 경주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
- 포항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남원시 규제

1. 대형음식점(관광식당) 시설개선사업

발굴배경

- 일반식당 편의시설 개선을 통한 수익창출과 재방문 유도효과 창출
- 외국 관광객을 위한 메뉴판 제작 등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추진내용 및 문제점

- 일반식당 중 테이블형 100석 이상 관광식당으로 전환하는 음식점
- 도비 25%, 시군비 25%, 자부담 50% (지원한도액 100만원)
- 2012년도까지 지원기준은 테이블형 200석 이상
- 2013년 9월부터 지원기준 테이블형 100석 이상으로 완화

개선의견 및 방향

- 만복식당(산내면 덕동리, 150석)은 관광식당으로 지정
- 지산지소 자연밥상(주천면 장안리, 100석)은 준공 완료 후 관광식당 지정 접수서류 준비중

2. 상위법령 근거 없는 규제 폐지

발굴배경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대불금 상환능력 부족을 이유로 의료급여 보호를 중지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빈곤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

□ 내용 및 문제점

- 『남원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대불금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할 때 독촉장 발부 후 미상환자에 대한 규제사항인 『기간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를 정지할 수 있다』 를 삭제(제8조 제1항)

□ 개선의견 및 방향

- 『남원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중 : '14. 9. 15 ~10. 6 (22일간)

3. 남원시 승화당 사용제한 규제 완화

□ 발굴배경

- 현재 시행되고 있는 남원시 승화당 이용 대상이 관내자로만 한정되어 있어 관외자의 이용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고 열악한 지방세수 증대 개선방안과 이용자들의 불안 편의 제공의 필요성이 요구됨

□ 내용 및 문제점

- 관외자도 승화당에 유골을 봉안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
 - 남원시 승화원·승화당 설치 및 사용 조례 제4조 (사용허가) : 분묘가 관내에 소재하거나 사망한 사람의 주소 또는 등록기준지가 남원시에 있는 자만 봉안할 수 있도록 제한
- 관외자 사용 증가 시 봉안함 설치에 따른 예산 필요 : 1인당 85천원
 - 사용료 수입으로 충당 가능 (관외 사용료 300천원)
- 관외자 증가 시 관내자 봉안 수 축소로 인한 불편이 예상
 - 승화원에서 화장을 하는 자에 한하여 봉안 시설 이용
 -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무연고자(봉안기간 경과자)에 대한 절차 이행

개선의견 및 방향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비고	
	건수	사용료	건수	사용료	건수	사용료	건수	사용료	건수	사용료		
봉안	관내	342	33,200	278	25,850	287	31,450	331	32,650	165	14,000	
	관외	40	8,000	31	6,200	15	9,200	20	11,400	15	3,900	

※ 관외 : 개정 유골의 분묘 소재지 및 사망자(사체·사태)의 등록기준지가 남원인 경우

4. 남원시 농공지구 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폐지

발굴배경

- 「남원시 농공지구 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는 상위법령의 위임을 받아 관내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대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음
- 정부 정책기조에 발맞춘 규제개혁 차원에서 본 조례의 불필요한 규제 사항을 전부 개선해 나가고자 함

내용 및 문제점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 제48조의2 및 같은 법 tlgodf여 제60조에서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음
- 실제 관리 운영에 있어 관내 농공지구 폐수배출시설 업체에 각각의 방지시설을 설치, 폐수를 처리하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처리 하므로 해당 조례는 그 실익이 없는 불필요한 규제에 해당하여 폐지 처리

개선의견 및 방향

- 남원시 농공지구 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폐지 심사요청 : 2014.07.30.

- 남원시 농공지구 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폐지 입법예고 : 2014.09.17.

5. 환경관련 민원처리기간 단축

발굴배경

- 2014년도 민원처리 신속성 분야 국정시책 합동평가 반영
- 민원처리기간 단축으로 민원인의 불편사항 최소화

내용 및 문제점

-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신청서(현행10일 ⇒ 변경8일)
 - 처리방법 :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후 준공검사 신청(민원인)
 - ⇒ 현장확인을 통한 신청면적 설치기준 준수여부 등 확인
-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 신고(현행10일 ⇒ 변경8일)
 - 처리방법 :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승인 후 사용개시 신고(민원인)
 - ⇒ 현장확인을 통한 설치 및 관리기준 준수여부 확인

개선의견 및 방향

- 현재까지 해당없음 (시행일 : 2014. 10월부터)

6. 남원시 수입증지 방식 개선

발굴배경

- 민원인들의 편익증진과 불편해소를 위해 각종 민원을 “정부 민원24”의 인터넷 발급과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통합민원발급기 등의 도입으로 종이 수입증지 존치사유 소멸로 종이 수입증지 폐지

내용 및 문제점

- 남원시 수입증지조례 시행 규칙 폐지(2014. 6. 27.)
- 남원시 수입증지조례 개정(2014. 6. 27.)

개선의견 및 방향

- 종이수입증지 폐지로 통합민원발급기 사용 현금 및 신용카드 결제
- 통합민원발급기 설치 : 27개소(시 4, 읍면동 23)
-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 5개소(시 2, 면 2, 기타 1)

7. 대규모 점포 등 등록제한에 관한 규제완화

발굴배경

-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과 정부의 규제개혁에 맞추어 우리시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 위법의 소지를 없애고 불필요한 규제요인을 없애 관련 투자 활성화 유도

내용 및 문제점

- 대규모 점포 등록신청을 위해서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 정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토록 되어 있음
- 남원시 전통산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등록 제한에 관한 조례에서 “전통시장 상인회 사업개시 동의서”를 요구할 근거 규정이 없음에도 불필요하게 요구
- 유통산업발전법에 규정되지 않은 규제사항 폐지
 - 상생협력계획서와 전통시장 상인회 사업개시동의서의 경우 상위법에서는 필요하지 않은 사항이나, 조례에서 불필요하게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라 폐지함

- 지자체장의 대규모점포 등 등록제한사유 변경
 - 협의회에서 등록을 제한하는 경우 → 협의회에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 관련법인 유통산업발전법과 남원시 관련 조례의 경우 자주 개정이 이루어져 관련기준에 대하여 판단이 어려운 부분이 있음

개선의견 및 방향

- 관련법 개정에 따른 남원시 조례 개정검토 : 2014. 01 ~ 03
- 「남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 2014. 03 ~ 06
- 「남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공포 : 2014. 06. 27

8. 지방공업단지 입주자격 제한 개선

발굴배경

- 「남원시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가 1995년 제정되었으나, 산업단지의 조성 및 분야와 임대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상위 법령과 관련지침 보다 과다·중복 규제 하고 있음
- 상위법령에 상세한 규정이 있고 산업입지 정책변화에 신속한 대응과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조례 폐지 필요성 대두
- 2015년 준공예정인 노암 제3농공단지과 조성추진 중인 일반산업단지의 입주절차 개선필요

내용 및 문제점

- 관련 조례의 유효성 등 검토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서는 산업단지 입주계약 후 계약이행 의무기간을 6개월로 규정하고 있음
- 「남원시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 기준을 초과하여 이행 기간을 30일 이내로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 투자애로로 작용
- 입주조건을 무리하게 제한하여 산업단지 분양과 입주를 어렵게 하는 자영업인으로 작용함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기준을 초과한 조례폐지 검토

개선의견 및 방향

- 자치법규내 규제 조사 및 검토: 2014. 4. 20~ 4.30(폐지규제 선정)
- 규제폐지위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2014.5.30.(폐지가결)
- 「남원시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계획수립 : 2014.4.25.
- 「남원시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 : 2014.6.27.
- 안전행정부 제7차 지방규제개선 위원회 회의자료 채택 : 2014.7.4.
- 관련규제 개선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
 - 공업단지 조성완료 후 투자예측 : 65업체 2,144억원
(노암 제3농공단지 조성중, 남원일반산업단지 조성준비중)

9. 소상공인 금융지원 사업 기준완화

발굴배경

- 관내 소상공인들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금융지원사업을 보다 많은 소상공인

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 완화

내용 및 문제점

- 개인 신용등급을 기존 6등급 이하에서 5등급 이하로 확대
- 거주 및 사업기간을 기존 1년에서 3개월 이내로 단축
- 소상공인 금융지원사업의 지원대상과 지원기준 등이 사업공고, 조례 등으로 다양하게 적용되어 일시에 해소하기에 어려움

개선의견 및 방향

- 소상공인 금융지원 사업 개선방안 검토 : 2014. 3. 13
- 소상공인 금융지원 사업 변경 공고 : 2014. 3. 17
 - 변경내용 : 거주기간 및 사업등록기간 / 1년→3개월 이내
-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 2014. 3 ~ 6
-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공포 : 2014. 6. 27
- 소상공인 금융지원 사업 변경 공고 : 2014. 7. 1
- 소상공인 금융지원 실적 : 2014. 9 .15
 - 금융지원 추천서 발급 신청 : 54건/1,083백만원
 - 소상공인 금융지원 실적 : 43건/799백만원

10. 농공단지 입주기업 편의를 위한 소규모기반시설 개선

발굴배경

- 매년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농공단지 기업 현장방문시 주차난 해결 호소
- 소규모형태의 농공단지 기반시설 개선 필요
- 불용지의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활용방안 필요

□ 내용 및 문제점

- 기업애로해소를 위한 “기업 바로서기 지원강화” 추진계획 수립
- “기업 바로서기 지원강화” 활동 실시: 14. 2. ~ 14.5. (단지별 담당급 공무원 229기업 현장방문 애로사항 상담)
- 각 기업체별 방문 기업애로 청취
- 관내 농공단지 입주기업에서 공용용지(불용지) 개선건의
 - 공장부지 사이에 나대지 형태(공장부지-불용지 100㎡가량)의 소규모 부지에 대하여 철조망 철거 및 아스콘 포장을 실시하여 주차장으로 사용
- 미분양 공장부지를 공용목적인 주차장으로 사용가능 여부
 - 필지의 형태와 규모가 공장용지로 사용이 어려운 만큼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 아스콘 포장
- 현장 방문 및 불용지 활용방안 확정
- 나대지 형태의 불용지이나 공장용지로 되어있는 부지를 주차장으로 사용 가능 여부
 - 필지의 형태와 규모가 공장용지로 사용이 어려운 만큼 입주기업의 편의와 생산 활동지원을 위해 주차장으로 전환

□ 개선의견 및 방향

- 농공단지 입주기업 애로청취 실시 : 2014 2 ~ 5
- 건의사항 반영 아스콘 포장 서레 실시중(자체) : 2014. 8 ~ 9
- 관련규제 개선으로 인한 기업혜택
 - 기업생산활동에 필요한 편의시설 확충비용절감 : 58백만원
(토지매입비 36백만원, 공사비 22백만원)

11. 개발중단 부지의 신규대체 공장창업 지원

발굴배경

- 공장설립 수허가자 도산으로 인해 개발이 중단된 농지전용 승인 토지의 신규 공장창업 절차 간소화 및 부담 최소화

내용 및 문제점

- A업체가 공장창업을 위한 농지전용(2001.4.26.)을 하고 일부 바닥공사 및 공장일부(골조) 건축 중 업체 도산으로 인하여 공사중단에 따른 공장창업승인 취소 상태
 - 공장창업 승인취소 이후 농지복구를 실시해야 하나 법인 등기이사 등의 부재로 농지전용 상태로 방치됨
- 농지전용상태인 부지를 연접지에서 콘크리트제품을 생산하는 B업체에서 경매를 통해 인수하였으나 A업체의 등기이사 부재로 농지전용 협의사항은 인계받지 못함
- B업체에서 사세 호가장 등 신규투자를 위해 신규법인을 설립하여 해당 농지전용부지에 공장창업승인 신청을 하였음
- 농지전용된 부지의 복구 시행여부 및 시행주체의 판단
 - 당초 수허가자(A업체)의 부재로 인해 농지전용협의사항을 인계받지 못한 공장창업승인 신청자(B업체)의 사정을 고려
 - 신규투자를 하려는 공장창업승인 신청자(B업체)의 원상복구 후 재시공에 따른 재정적 손실과 공장창업 승인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상복구 없이 기 농지전용된 협의건을 인정

개선의견 및 방향

- 공장창업 승인 신청 및 관련 부서 협의 :2014. 3. 11

- 농지전용신청지에 대한 현장확인 및 상황조사 : 2014. 3. 31
-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14. 4. 11
- 공장창업승인 : 2014. 4. 14
- 공장건축준공 및 완료 : 2014.10.21
- 기업의 창업활동 지원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
 - 공장창업 업체의 매출증대 : 연 4,200백만원
 - 지역의 신규투자 : 1,000백만원

12. 완공예정 농공단지에 공장입주 승인

□ 발굴배경

- 조성중인 농공단지 일부를 실제 공장건축이 가능하도록 기반시설 우선 조정정비 후 입주계약
- 신규투자 업체의 농공단지 입주에서 공장건축까지 신속히 처리하여 투자 지원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

□ 내용 및 문제점

- 시 역점 정책사업인 화장품산업 육성을 위해 2015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조성하고 있는 농공단지 일부를 관련 기업체 입주가 가능토록 부지의 기반시설 조성(분양공고 실시 : 2013. 5)
- A업체와 투자협약(2014. 4. 9)과 입주계약을 동시에 체결(2014. 4. 9)
- 공장건축 착공 : 2014. 7. 23
- 공장규모(소규모)에 따른 미준공 부지의 블록 분할 가능여부
- 미준공부지로 인한 지적 미정리 및 도로명 주소 부여 건축착공 가능여부
 - 농공단지 조성완료시 지적정리를 통해 최동면적 및 도로명 주소 부여

조치키로 하고 건축착공 처리

 개선의견 및 방향

- 투자협약 및 입주계약 : 2014. 4. 9
- 공장 건축허가 협의 : 2014. 6. 17
- 공장건축 : 2014. 7. 23(건립중)

13. 농지전용허가(협의)시 업무처리과정 간소화

 발굴배경

- 남원시 인허가 민원관련 법정처리기간을 준수하고 있으나 민원 연장처리에 대한 민원인 행정불신

 내용 및 문제점

- 처리기간 준수를 위한 농지전용허가(협의)시 업무처리과정 간소화
- 기존 관행으로 이뤄지던 읍면동의 심사의견서 수렴과정을 생략하여 신속한 업무처리 진행

구분	업무처리
기존	민원접수→심사의견(읍면동)→현장확인→내부결재→허가(협의)
변경	민원접수→ →현장확인→내부결재→허가(협의)

- 농지전용(협의)시 발생하는 대상지 인근 민원발생사항 및 주변 여건의 여론수렴과정 생략으로 인허가 처리 후 민원발생 야기
→ 읍면동 심사의견의 과정을 생략하였으나 현지 출장시 읍면동 담당자와의 충분하 의견수렴 및 내용 반영

개선의견 및 방향

- 농지전용(협의) :처리기간을 10일 → 7일 단축으로 민원처리 3~4일 단축
※ 5월 평균 13일/35건 → 6~8월 평균 8일/29건 (처리기간 평균내용 중 연장기간 포함내용임)

14. 관내 유치기업 및 중소기업 인허가 사전상담제 운영

발굴배경

- 관내로의 투자유치기업 및 중소기업의 공장부지 조성시 농지 전용의 어려움 호소

내용 및 문제점

- 기업의 공장부지 조성에 필요한 농지전용(협의) 관련 전담 직원의 상담 및 문제점 해결 모색 → 타민원보다 우선 처리

업무처리
사전 면담진행(현장실사)→각부서와의 협의→문제점 조정→민원접수→허가(민원)

- 문제점 해결을 위한 사전 면담진행 및 각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문제점 조정으로 관내 투자유치 및 중소기업의 인허가 애로점 해소 → 전용부담금 감면 등 혜택 안내
- 경매 및 농지훼손 등으로 야기되는 농지전용의 문제점 발견시 민원인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문제해결
→ 양성화 등의 추진상의 문제점 해결 : 송동면 (주)청마
- 부지 매입전 용도구역의 해석(공장부지로의 적합성)을 통해 부지선정의 문제점 해결
→ 농림지역 등의 제한내용 사전설명 및 가능지역 모색

15. 풀사료 경영체 장비지원 조건 완화

발굴배경

- 풀사료 경영체(법인, 단체)에 지원하는 조사료 재배장비의 경우 5년 이상 경과된 부속장비 교체시 기존 재배면적을 유지된 경우 지원(농림사업 시행지침서 제2권 축산분야)
- 경영체의 조사료 재배확대를 위해서는 조사료 장비주인 지침 완화 필요성 대두

내용 및 문제점

- 풀사료 경영체의 의견 수렴과 농림사업 지침의 범위내에서 자체세부지침을 수립하여 5년 이상된 부속장비는 이행면적에서 제외하여 경영체 장비 구입 어려움 해소

개선의견 및 방향

- 2014년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 세부지침 수립
- 2014년 풀사료 경영체장비 지원 실적 : 7개 법인체 지원(장비 17대/220백만원)

16. 흑염소 전용도축장 설치로 소비기반 확대

발굴배경

- 대산면 대곡리 195-3번지 (유)제일푸드 축산물작업장(도축장) 활성화가 되지않아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흑염소 전문도축장 설치에 따른 농가불편 해소 및 안전·위생 염소고기 유통 활성화로 소비기반 확대와 도축장 활성화

- 흑염소 전문도축장이 없어 농가불편은 물론 불법도축으로 인한 위생으로부터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흑염소 도축장 유치 필요

□ 내용 및 문제점

- 흑염소협회와 간담회 추진 : 5회
 - ☞ 남원시흑염소협회 3, 전북흑염소협회 1, 전라북도축산과 1
- (유)제일식품 남원도축장과의 간담회 : 2회
 - ☞ 도축장 활성화 방안 1, 흑염소전용도축장 유치 공모 1
- 흑염소전문도축장 공모 신청 ⇒ 공모사업 확정 260백만원
- 공모사업 신청 ⇒ 타시군 보다 흑염소 사육기반이 월등하고 사육농가(20호 / 5,000두)들이 지리산 자락에서 사육하고 있어 지리산 흑염소 브랜드 차별화를 내세워 타지역 도축장과 비교 우위에서 적극 공모사업을 확정 시킴 (260백만원 / 1개소)
- 공모사업 확정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혐오시설 설치 반대로 민원발생이 있었으나 친환경 흑염소 전용도축시설 사업설명회(2회)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소 하였음

□ 개선의견 및 방향

- 흑염소 도축물량 확보 추진 : 인근시군(순창,장수,임실,구례,곡성)
- 지리산 흑염소 브랜드 및 6차산업화 추진 — 2015년 예산확보
- 기업(도축장), 농가(흑염소)애로 해소로 인한 혜택(경제적 효과등)

경제적 효과	산출기초
○ 도축수수료증가 : 180백만원 △ ○ 농가물류비절감 : 60백만원 ▽	흑염소 : 30천원/두 × 6,000두/년 = 180백만원 물류비용절감 : 5백만원/월 × 12 = 60백만원

○ 개선 전후 비교

개 선 전	개 선 후
▷ 도축실적 /월 : 소100, 돼지 9,000두	▷ 도축실적 /1일 : 소100, 돼지 9,000두, 흑염소 500두
▷ 흑염소농가 물류비용(전체) : 월 5백만원	▷ 흑염소농가 물류비용(전체) : 100만원

17. 산지전용 허가면적 기준 완화

□ 발굴배경

- 남원시 면적 중 산지가 63%를 차지하고 있어 산지전용면적 3만^m 이상도 가능하도록 할 경우 공장이나 남원발전 시설을 유치하기에 유리함

□ 내용 및 문제점

- 보전산지(임업용) 및 준보전산지 중 생산·보전관리지역에서도 산지전용 면적 3만^m 이상도 가능하도록 함 (산지관리법시행령 제20조 제6항 별표 4의 2)
- 산지전용 면적을 3만^m 이상을 할 경우 너무 과도한 산림훼손으로 지리산권 자연경관을 크게 해칠 우려가 큼에 따라 → 사업계획서 및 현지여건 민밀히 검토로 무분별한 산림훼손 방지

□ 개선의견 및 방향

- 2014. 4. 3 정부주도 규제개선 추진계획 과제로 제출

18. 가로수 이식 승인 절차 완화

발굴배경

- 현재 도로점용 허가 시 가로수 이식이 필요한 경우 민원인은 허가 후 가로수 이식 승인 신청을 별도로 신청하도록 규정되어 있음(남원시 가로수 관리 조례 제5조)
- 이에 따라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원스톱 처리방안 필요성 대두

내용 및 문제점

- 도로점용 허가(건설과) 시 사업계획에 가로수 이식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승인신청을 생략하고 산림과 협의 후 허가 처리

19. 인·허가 절차 간소화 추진

발굴배경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 주기적 개최에 따른 민원인의 사업추진 지연으로 불만 팽배

내용 및 문제점

- 민원처리기한 단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도 개선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자료 제출 최소화

개선의견 및 방향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주기적 개최가 아니니 상시 개최(월2회)를 통한 미원 처리기한 단축
- 2013년부터 1014년까지 38회(총222건) 개최 중 부결처리 된 건 없음

20. 국·공유지 용도폐지 절차 완화

□ 발굴배경

- 토지의 활용가치가 점차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민원인들의 국·공유지 매입 요구가 증대하고 있으나, 그 동안 매입 신청 시 사후 민원발생을 예방하고자 신청토지에 대하여 점·사용허가를 사전에 득한 후 이해관계인이 없을 경우 용도폐지 절차 이행
- 건축 신축 및 공장창업 등을 계획하고있는 신청인에게 국·공유지 점·사용허가 후 용도폐지 허가 절차는 사실상 불가 행정 처분으로 민원인들의 불편이 따르는 실정임

□ 내용 및 문제점

- 용도폐지 신청 시 해당 재산이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여부, 향후 행정목적에 위하여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상대민원 발생여지 등을 철저히 검토
- 해당 요건 충족 시 용도폐지 즉시 이행
- 국·공유지 사용허가 단계 없이 재산 매각 시, 토지 이해 관계인의 민원 발생 여지가 있음
- 이해관계인 동의여부 및 마을주민대표(이·통장) 의견 확인으로 사후 민원 최소화 노력

□ 개선의견 및 방향

- 최근 5년간 용도폐지 시행 건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5	32	11	30	26
도로	4	11	4	5	13
하천	1	21	7	25	13

21. 기업활동을 위한 건축규제 완화

발굴배경

- 기업활동과 밀접한 건축규제에 대한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과감한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 및 농축산업 투자기반 조성 활성화 유도

내용 및 문제점

○ 공작물축조 신고대상 완화

-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단순 조립하여 설치하는기계장치 및 농축수산업과 관련된 저장시설 등은 신고없이 설치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 ※ 사례 : 관내 건설자재 생산 공장운영에 필요한 기계설비를 신고 없이 설치하여 기업의 복잡한 인허가 불편 해소함

개선의견 및 방향

○ 남원시 건축조례개정(2014. 4. 2) : 공작물 축조신고대상 완화 등

- 공작물중 공장생산 조립설치가능 기계정치, 농수산 저장시설은 시장에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함(제37조 제1항 1,2호)

22. 하수도 사용료 연체금의 요율 및 산정방식 개선

발굴배경

- 중소기업 움부즈만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권고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 등의 연체금의 요율 및 산정방식을 개선하여 지방기업의 금전부담을 경감하고 투자를 활성화하고자 함
- 하수도요금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경우 하수도요금을 할인하여 성실납부 중소기업 및 소비자의 금전부담 경감

□ 내용 및 문제점

- 하수도 사용료 등의 연체요율 조정 : 3% → 2%
- 연체금의 산정방식을 이할계산 방식으로 개선
 - 연체금 = 미납요금 × 2/100 × 연체일수/월력기준일수
- 하수도요금 할인규정 신설
 - 하수도요금을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경우 하수도 요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
-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방법 개선
 - 5천만원 이상 3회 분납 → 1천만원 이상 6회 분납
- 하수도 요금 할인 등으로 인한 세입재원 감소(년/9백만원)

□ 개선의견 및 방향

- 하수도사용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 수립 : 2014. 8. 4
- 하수도사용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 2014. 8. 7
- 조례·규칙 심의회 의결 : 2014. 9. 3

23. 기업투자기반 조성을 위한 수도시설비 부담완화

□ 발굴배경

- 기업활동의 기반이 되는 수도시설 조성 사업비 부담완화를 위한 자치법
규개선을 통한 지역투자기반 조성
- 시설분담근에 대한 납부방법을 개선하고 정산절차를 명문화하여 이용자
에게 경제적 부담완화와 행정의 효율성 제고

□ 내용 및 문제점

- 시설분담금 납부방법 및 정산 절차 명문화
 - 납부기한 : 급수공사비와 동시 →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
 - 분할납부 : 1회 → 최대 4회
 - 정산절차 : 과오납금 환불 및 추가 징수
- 시설분담금 분납에 따른 미납 발생 우려
 - 대책 : 시설분담금 완납 확인 후 상수도 급수

□ 개선의견 및 방향

- 입법예고 : 2014. 8. 1 ~ 21
- 조례·규칙심의회 : 2014. 8. 26
- 의회 심의(가결) : 2014. 9. 16

24. 복합민원심의회 정례화로 신속한 민원처리

□ 발굴배경

- 건축인허가 복합민원은 2개 이상 부서간 협의·확인과 관련법 개정이 잦아 민원인은 물론 담당자 조차 사전 검토와 충분한 이해에 어려움 많음
⇒ 관련부서 합동심의 필요

□ 내용 및 문제점

- 일시/장소 : 매일 17:00 / 3층 회의실
- 구성 ▭ 팀장 : 건축지원담당
 - └ 팀원 : 건축외 관련부서(농정, 산림, 도시과) 담당자 등
 - ※ 민원인 희망시 참석
- 심의대상 : 건축인허가 복합민원(처리기간 7일 이상 민원)

- 심의내용 : 관련법 저촉여부 종합검토 후 “가,부,보완” 의견제시
- 시 행 일 : 2013. 9월
- 처리기한이 짧고 단순 민원사항 심의시 담당자 업무량 증가로 행정 비효율 초래
⇒ 7일 이상의 장기소요 복합민원을 심의회에서 집중 관리
(단순 민원은 서면심사 등 탄력운영)

□ 개선의견 및 방향

- 복합민원팀 배치계획(검토보고):
- 복합민원팀 설치:
- 민원실에 사무실 설치:1
- 민원실무심의회 정례화
- 103회 441건 심의 처리(적정 408건, 보완 33건)
- 복합민원심의회 시행 전후 비교

개 선 전	개 선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서간 개별 검토 - 부서간 협조체계 미흡 - 신속한 민원처리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원실무심의회 운영(정례화) - 부서간 수평 협조체계 구축 - 효율, 적극적 협의 가능(관련법 공유) - 민원처리기간 단축(40%)

25. 건축규제 완화로 기업활동 활성화

□ 발굴배경

- 기업활동과 밀접한 건축규제에 대한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과감한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 및 농축산업 투자기반 조성
- 활성화 유도 ⇒ 불필요한 건축조례 개정 필요

□ 내용 및 문제점

- 공작물축조 신고대상 완화
 -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단순 조립하여 설치하는 기계장치 및 농축수 산업과 관련된 저장시설 등은 신고없이 설치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 건축규제 완화 근거 마련(규제완화 조항 자체 신설)
 - ⇒ 건축법령에 위임된 범위내에서 남원시 건축조례 개정

□ 개선의견 및 방향

- 남원시 건축조례 개정(2014.04.02.) : 공작물 축조신고대상 완화 등
 - 공작물중 공장생산 조립설치가능 기계장치, 농수산 저장시설은 시장에 신고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함(제37조제1항 1,2호)

건축조례개정 전	건축조례개정 후
제37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 준용) ①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저장시설·유희시설” 이란 지표면위에 설치하는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스,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사일로,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제37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 준용) ①----- ----- ----- ----- -----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스,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단,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단순 조립하여 설치하는 기계장치는 제외한다.) 2. ----- 유사한 시설(단, 농·축·수산업과 관련된 저장시설은 제외한다.)

26. 설립중 법인 인허가 행태개선 통한 조기사업 추진

□ 발굴배경

- 설립중에 있는 법인에 대한 운수사업 신규 등록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법인 설립기간을 단축하고 사업개시 시기를 단축하여 기업이윤 창출에 기여

□ 내용 및 문제점

- 설립 중 협동조합의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록을 먼저 수리함으로써 추후에 법인 등기가 가능하게 함
- 법인 등기가 됨으로써 차량 확보 등의 등록조건이 충족되고 운송개시 가능하게 하여 원만하게 운송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
-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기존법인뿐만 아니라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도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
- 관할관청은 등록신청을 받으면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이에 따라 관할관청의 등록 신고 수리 시 등록 요건, 즉 차고지, 사무실, 차량이 실제 확보되어 있어야 등록 신고 수리하는 것이 관례화 되어 있었음
- 그러므로 설립 중 법인은 법인명의 차량을 확보할 수 없으므로 사실상 신규 등록이 어려운 상태임

□ 개선의견 및 방향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신규등록 신청 및 수리 완료 - '14. 6. 11
-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록신청 검토보고 - '14. 6. 11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시 신고 및 수리 완료 - '14. 7. 24

27.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시개최로 민원처리기간 단축

□ 발굴배경

- 일정시설의 개발행위허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로 사업추진 지연에 따른 민원인 불만 고조.

- 민원처리 기간 단축을 위한 분과위원회 상시 개최 운영 추진

□ 내용 및 문제점

- 민원처리기한 단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시 개최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일정서식 제공(사업개요,추진경위,위치도,사업계획평면도,중·횡면도 등) 자료 제출 최소화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인하여 인·허가 기간 지연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상시 개최하여 심의로 인한 처리기간 지연을 최소화
 - 심의자료를 최소화하는 대신 자료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심의부결로 인한 민원처리기간이 지연되지 않도록 함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월 1회로 정해져있어 시기가 맞지 않을 경우 민원처리 지연사례 발생
- 민원처리 및 기업입주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내부검토 보고

□ 개선의견 및 방향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주기적 개최가 아닌 상시 개최를 통한 민원처리 기한 단축기로 결정
 - 공장신축 심의 : 이전년도와 비교하여 공장신축에 따른 심의 요청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개최까지 평균 14.5일 단축
- 2014년도 도시계획위원회 총25회(총91건)개최 중 부결처리 된 건 없음

28.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통한 기업활동 규제완화

□ 발굴배경

- 986년 12월 최초로 결정되었고 1995년 취락지역(합파우마을을 포함하여 확장되었으나 시행계획 없이 장기간 방치됨
- 1995년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여 그 동안 시행하지 못하고 있던 유원지에 대한 사유재산 침해에 대한 민원 지속적으로 제기

□ 내용 및 문제점

- 남원도시관리계획 변경
 - 남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 2014. 8.22일
- 유원지는 시종합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사항으로 유원지 변경(해제)을 위하여는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변경이 선행되어야 함
- 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의 결정권한은 전라북도지사임에 따라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전라북도 지사 결정사항 임.
 - 2025 남원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 2013. 5. 7일
 - 남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 2014. 8.22일
 - ⇒ 2025 남원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을 선행 후 후속조치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유원지 변경)승인 완료

□ 개선의견 및 방향

- 유원지 변경(해제)건의
- 유원지 변경 검토를 위한 현지출장
- 유원지 변경 검토를 위한 검토회의
- 유원지 변경(해제)을 위하여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을 변경 추진 (전라북도 지사 결정사항)

- 장기미집행시설 해제를 통하여 제조업부지 확장 허가처리
 - 기업애로사항 해결 : 제조업(현대제재소)부지확장(개발행위허가) : 4,137㎡(2014. 10.15)
- 사유재산권 제약 해소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
 - 주택 신축 : 어현동 333번지 (단독주택)
- 개선 전후 비교(행위제한)

개 선 전	개 선 후
- 유원지 조성계획에 의한 시설만 가능 (사유재산권 제한)	-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별표17에 의한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 행위가능 예) 공동주택,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장 등

29. 기업 애로사항 해결 생산기반 조기 조성

발굴배경

- 화장품 제조업체(DFK-코스메틱)가 남원 지역에 조기에 공장입주토록 요구
-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공장부지를 신속히 조성할 수 있도록 해당 부지를 우선 조성, 제공하여 기업의 생산기반 조기 조성

내용 및 문제점

- 2015년도 완공 예정인 노암 제3농공단지 전체 조성부지 323,467㎡중 입주 희망한 화장품 제조업체(DFK-코스메틱)부지 4,783㎡를 우선 조성하여 조기에 공장을 착공('14.7.24)토록한 사례임.
- 농공단지 조성공사 준공기한은 2015년까지이며 단지내 일부분을 완료토록 시행함에 따라 애로 발생.
 - 시공사와 면밀한 협의를 통하여 전체부지 중 최우선적으로 화장품집적화 단지 조기 완공 실현

○ 개선 전후 비교

개 선 전	개 선 후
- 장기계속공사로 인한 단지 일부분 조기 완공 어려움	- 시공사와 긴밀한 협조 및 시공관리로 입주 희망 부지 조기 완공 실현

□ 개선의견 및 방향

- MOU체결
- 코스메틱의 주기입주 건의
- 도시과의 입주 협의
- 3블럭중 2블럭 조기 완공키로 내부 결정:
- 화장품 집적화 단지 3블럭(37,639㎡)중 2블럭(23,112㎡) 조기 완공 : 2014. 1. 28.
- DFK-코스메틱 입주계약 및 착공('14.4.9 / 7.24)
 - 화장품 제조업체(연면적 4,783㎡, 종업원수 10명)

30. 고객우선 UP(처리)DOWN(비용)사전심사제

□ 발굴배경

- 복합민원 중 정식민원 신청 시 토지매입, 설계, 측량 등이 필요하여 사전에 경제적 투자가 수반되는 민원을 정식민원 신청 전에 약식으로 가능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 줌으로써 불필요한 경비와 시간낭비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함

□ 내용 및 문제점

- 시행시기 : 년중

- 대상민원 : 10개부서 17종
- 처리방법 : 정식 민원처리절차 준용
- 처리기간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간 단축하여 신속처리

개선의견 및 방향

- 사전심사제도 도입 계획 수립
- 사전심사반 운영
- 사전심사청구제 운영실적 : 144건(2014년 9월말 기준)

31. 농공단지 주출입도로 구조개선으로 기업생산활동 지원

발굴배경

- 농공단지가 위치하고 있는 관할 주민센터의 주출입도로 구조개선 건의
- 농공단지 주출입도로의 침수, 결빙 등 구조적 문제로 인하여 대형물류차량 통행에 따른 사고발생 및 제품손상 위험 상존
- 입주기업의 물류활동 지원을 위한 시설정비 필요

내용 및 문제점

- 농공단지가 위치하고 있는 관할 주민센터 건의
 - 도로 구조개선을 통한 입주기업 이용편의 제공 및 사고예방
 - 도로 침하와 요철로 인한 제품물류이동시 파손 우려
- 1차 현장 답사 및 관계부서 협의: 2014. 7. 28
- 7월 간부회의 향교동 건의 및 지휘부 검토지시: 2014. 7. 28
- 건설 및 경제과 현장 답사 및 협의: 2014. 7. 30

□ 개선의견 및 방향

- 현장확인 및 추진방안 검토 : 2014. 8월 ~ 9월
- 농공단지 정비계획 변경을 통한 사업추진방안 정립 : 2014. 9월
 - 소요사업비 : 60백만원 예상
- 설계진행중 : 2014. 9월 ~ (2014.11월 시행예정)
- 관련규제 개선으로 인한 기업혜택
 - 생산제품의 이동시 파손예방
 - 주출입 도로의 안전한 이용(교통사고 예방 등)
 - 도로구조개선 60백만원 간접지원혜택

32. 미준공 농공단지에 원스톱 공장설립 지원

□ 발굴배경

- 조성중인 농공단지 일부를 공장건축이 가능하도록 기반시설설치
- 신규투자 업체의 농공단지 입주에서 공장건축까지 신속히 처리하여 투자 지연으로 인한 손실 최소화

□ 내용 및 문제점

- 시 역점 정책사업인 화장품산업 육성을 위해 2015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조성하고 있는 농공단지 일부를 관련 기업체 입주가 가능토록 부지의 기반시설 조성(분양공고:2013. 5월)
- 화장품을 생산하는 업체와 투자협약(2014.4.9)과 입주계약을 동시에 체결 (2014.4.9.)
- 공장건축 착공 : 2014. 7. 23
- 공장규모(소규모)에 따른 미준공 부지의 블록분할 가능여부

- 농공단지의 미준공으로 인한 지적미정리 및 도로명주소 부여 등 건축착
공가능여부
 - 농공단지 조성완료시 지적정리를 통해 최종면적 및 도로명 주소 부여
조치(건축착공 처리)

□ 개선의견 및 방향

- 투자협약 및 입주계약 : 2014. 4. 9
- 공장 건축허가 협의 : 2014. 6. 17
- 공장건축 : 2014. 7. 23(건축 진행중)
- 기업의 창업활동 지원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
 - 지역의 신규투자 : 2,000백만원

제4장

실태분석의 활용 및 개선과제

제1절 기본방향

제2절 주요 과제

제3절 지방규제 거버넌스 구축

제4장

실태분석의 활용 및 개선과제

제1절 기본방향

1. 규제등록 및 정비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

- 앞에서 분석한 것처럼 규제를 판단한다는 것은 상당한 전문성을 요하는 작업에 해당됨
 - 특히 ‘규제 및 비규제 판단’에 있어서 담당자의 법적인 지식과 주관적 판단이 들어가야 하는데 담당자의 법률적 지식이 별로 깊지 않은 것이 우리 공무원 사회의 현실임
 - 그나마 규제를 담당하는 자리에 장기간 있을 수 있어 규제에 대한 판단기준에 대한 경험이 축적된다면 비록 명확한 판단은 불가능하더라도 어느 정도 극복은 가능하지만 순환보직 등으로 이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형편임
- 이런 문제 때문에 자치단체 공무원 입장에서 판단이 애매한 경우에는 일단 무조건 등록함으로써 있을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거나 규제개혁에 적극적이지 못한 행태를 보이고 있음
 - 애매한 경우 무조건 규제에 등록하거나 개혁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는데, 잘못된 판단으로 누락되는 경우의 부작용이 더 크기 때문
-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규제개혁에 대해서 상위 법령, 자치단체 조례, 규제의 판단기준 등 다양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체계적 지원이 필요

-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규제등록이나 개혁에 대한 전문가 의견 제공, 규제개혁을 지원하기 위한 지자체 견본, 권역별 개선 닥터제 등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임
- ※ 규제 컨설팅제 등도 활용이 가능

2. 자치단체 규제개혁 실무편람의 제공

- 지자체 규제개혁을 위한 모든 과정 동안에 착안하거나 고려해야 할 가이드라인이나 지침 성격을 지닌 편람을 작성 및 제공
 - 편람의 성격은 해당지역을 진단, 개선하기 위한 참고 및 해설서 등에 해당
 - 작성은 규제개혁을 실제로 추진함에 있어 각 단계에서 세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나 착안 사항, 예시, 애로, 애로해결 등 수록
- 실무편람은 지자체 실태분석의 실제적인 내용에 토대해서 작성
 - 준비단계 : 규제개혁의 준비 전 과정에서 필요한 내용
 - 자료수집 단계 : 관련 법령, 지자체 자치법규, 등록규제 리스트 및 세부내용 등
 - 규제 진단 단계 : 전문가 동원, 작업팀 구성, 운영 방안 등
 - 규제 분석 단계 : 비규제, 조항 문제 규제 등 유형별로 분석, 착안해야 할 사항에 따라 결과 도출
 - ※ 법률, 사업 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 확보 등 방법
 - 규제 개혁 : 유형별 문제를 실제로 개혁하는 방법
 - ※ 각 단계의 애로점도 병행해서 제시

3. 자치단체 규제개혁 추진 및 지원 시스템 구축

- 시스템 구축에서의 핵심은 법률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지닌 사람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입법 취지 및 법률의 내용, 상위 법률에 의한 자치법규의 위임을 포함하여 자치법규, 개별 규제 판단기준의 적용 등이 중요
 -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법리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어야 실제도 도움이 될 수 있음
- 행자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법제연구원 등의 협력체제 구축
- 자치단체에서는 전문성의 부족으로 인해 맞춤형 규제개혁 지원의 수요가 상당함
 - ※ 등록된 규제에 대해 대부분이 자신이 없는 형편
 -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행자부 규제개혁추진단,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규제개혁지원센터, 법제처 등의 맞춤형 규제개혁 시스템 구성이 중요
 - 신청 등 적정한 자치단체 선정방법을 통해 규제개혁 작업을 시행

제2절 주요 과제

1. 지방규제 개혁 매뉴얼의 구체화, 세부화

- 현재 자치단체 지방규제 매뉴얼은 자치단체로 하여금 지방규제 정보를 최대한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행정규제 개요, 자치단체 등록규제 관리, 규제절차, 규제형성, 규제집행, 규제변경 및 폐지, 규제 DB 활용, 부록 등으로 구성
 - 규제 일반, 행정사항 등에 대한 내용의 비중이 지나치게 많은 문제를 보유하고 있으며, 정작 중요한 규제의 판단 등에 대한 지식이 결여

<표 18> 행자부 자치단체 지방규제 매뉴얼

구 분	주요 내용	비 고
행정규제 개요	- 행정규제 개념, 기본원칙 등	
자치단체 등록규제 관리	- 부문 및 유형, 규제등록 원칙, 분류기준, 등록규제 정비지침, 비규제 유형	- 벌리, 판단에 대한 지식 제시부족
규제절차	- 규제절차의 개념, 규제절차의 중요성 등	- 업무절차 제시
규제형성	- 조례 규칙의 입안, 규제심사 요청,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	
규제집행	- 허가, 인가, 특허, 면허, 승인 등	
규제변경 및 폐지	- 규제변경 및 폐지의 원인 등	
규제 DB 활용	- 시도 행정규제 개혁관리 등	
비 고	- 지방규제 완화 추진 성과, 지방규제 신고센터 업무처리 매뉴얼 등	- 전달 및 행정사항

- 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치단체 규제 매뉴얼에서 실무적인 업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법학적 지식, 법리, 규제 기준의 실제적 적용 및 해석 판단에 대한 내용을 대폭적으로 보강
 - 실제 조례의 조항이나 규정을 규제, 비규제로 판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치단체가 규제로 등록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판단 능력을 함양시킬 수 있는 부문의 보강

< 자치단체 규제 매뉴얼 주요 보강 내용 >

- 법령, 자치단체 조례, 자치단체가 등록하고 있는 규제간의 정밀한 이해를 제고시킬 수 있는 내용 중심으로 재편
 - 현재의 규제 매뉴얼의 내용과 체계를 재편
- 규제 / 비규제의 판단기준에 비추어본 사례적용의 대폭적인 보강
 - 보다 풍부한 자치단체 케이스를 개발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기준에 비추어 보아서 규제, 비규제를 판단할 수 있도록 자세한 내용을 수록
 - 전문가도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의 내용과 예시, 해설은 가급적 지양
- 규제가 아닌데도 법리, 규제 지식 등의 부족으로 자치단체에서 규제로 잘못 관리하는 있는 내용을 상세하게 제시
 - 첫째, 비규제, 잘못된 규제 등을 유형화하고
 - 둘째, 유형별 사례와 해설을 제시하여 자치단체 공무원의 이해 제고
- 행정적인 사항은 자치단체 공무원의 규제 역량과 업무 편의 제공 외에는 그 내용을 최소화

2. 지방규제 관련 자치단체 공무원 전문성 강화

○ 자치단체 지방규제 개혁 포럼 개최

- 포럼 개최의 목적은 지방규제 환경, 내용, 제도의 변화 등에 대해서 이해를 공유하고 논의
- 행자부, 지방규제개선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등이 주체가 되어 자치단체 공무원의 규제개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포럼, 세미나 등을 정기 혹은 부정기적으로 개최
- 주로 법령의 제개정, 폐지 등에 따른 자치단체 규제개혁의 여건과 토대가 되는 상황에 대한 포럼, 세미나 등을 개최
- 현재처럼 지방규제 개혁의 근간이 되는 ‘행정규제기본법’ 등의 개정 사항의 중요사항의 교육 등 포함

○ 자치단체에 대한 지방규제 교육 지원

- 행자부, 지방규제개선위원회는 분석에서 나타난 규제개혁에서 유의해야 할 대목이나 개선과제의 대표적인 유형을 추출, 정리하여 다른 자치단체의 규제개혁의 벤치마킹을 위한 교육의 자료를 작성
- 행자부 차원에서는 시도 및 권역별 등으로 지방규제를 담당하는 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행
 - ※ 필요한 경우, 모든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
- 지방규제 개혁의 내용과 대상 등에 대한 교육과 동시에 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자치단체의 규제에 대한 내용도 동시에 교육
 - ※ 자치단체의 교육실적을 주기적으로 평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행정연수원, 자치단체 공무원 교육원 등에서 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방규제 개혁 교육을 제공
 - ※ 특정한 장소에서 교육을 제공하되 필요한 경우, 자치단체 현장의 교육도 시행

○ 브로셔, 소식지, 방송 등 다양한 매체 활용

- 전파력이 큰 지역방송, 국정 TV 등을 통해 자치단체 규제개혁의 핵심 포인트 등에 대해서 기획 프로그램 편성 및 반영
-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의 방송에 자치단체별로 자치단체 규제개혁 추진실적 등을 방송
- 자치단체 소식지 등 주민과 접점의 가능성이 높은 자치단체 소식지, 브로셔 등을 통해 자치단체 규제개혁을 안내
 - ※ 해당 자치단체 공무원이나 담당자가 참여하여 지식을 습득

<표 19>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자치단체 공무원 역량 강화

구분	내용	비고
지방규제 포럼 및 세미나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최 목적 : 지방규제 환경, 내용, 제도의 변화 등에 대해서 이해를 공유하고 논의 - 행자부, 지방규제개선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등이 주체가 되어 자치단체 공무원의 규제개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포럼, 세미나 등을 정기 혹은 부정기적으로 개최 	- 법률 개정, 시책변화 등
자치단체 지방규제 개혁 교육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자치단체 지방규제 개혁 담당 공무원을 포함한 공무원 - 교육 내용의 핵심적인 부분은 행자부, 지행연 등이 공동으로 개발 	- 현장 교육 병행
방송, 소식지, 브로셔 등 전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지역의 방송에 자치단체별로 자치단체 규제개혁 추진실적 등을 방송 - 자치단체 소식지 등 주민과 접점의 가능성이 높은 자치단체 소식지, 브로셔 등을 통해 자치단체 규제개혁을 안내 	- 자료 작성 공무원 참여

3. 단체장,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지방규제 이해 제고

- 지방규제 개혁이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규제개혁 담당자나 자치단체 공무원의 역량이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의 지방규제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대단히 중요
 - 단체장의 관심에 따라 규제나 비규제 등을 포함해서 비합리적인 규제가 합리성을 지니게 되며, 자치단체 공무원이 규제개혁에 관심을 지니게 되기 때문
 - ※ 가령, 단체장이 해당 자치단체의 규제개혁 상황을 점검, 독려한다면 자연히 자치단체 공무원도 규제개혁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음
 - 아울러 규제개혁의 상당수가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의 제정, 개정에 토대하고 있어 지방의회 의원의 관심도 중요한 사항임
- 자치단체 단체장을 대상으로 한 지방규제개혁 교육과정의 개발 및 교육을 시행

- 자치단체 지방규제 개혁 강의를 나가는 경우, 대개 단체장은 차만 마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같은 문제 해결이 중요
 - 행자부가 중심이 되어 단체장을 대상으로 한 지방규제 개혁 연찬회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
 - 필요한 경우, 단체장 대상의 지방규제 개혁 안내서를 개발, 보급
- 규제개혁 및 정비는 결국 조례 등 자치법규를 개정하는 문제와 연관되어 있어 지방의회 의원의 지방규제 개혁에 대한 이해의 제고가 필요
- 지방의회 연수센터 등을 통해 연찬회를 개최하여 의원의 지방규제 개혁에 대한 이해의 제고
 - 권역이나 복수의 자치단체를 묶어서 지방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한 지방규제개혁 강의를 제공
- ※ 지방규제 개혁 등에 대해 호기심을 지니고 있는 경우도 많음

<표 20> 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의 지방규제 이해 제고

구분	내용	비고
자치단체 단체장 이해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자부 및 지방규제개선위원회 주관으로 단체장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연찬회 개최 - 단체장을 대상으로 한 지방규제개혁 안내책자 등 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개정, 시책변화 등
지방의회 의원 연찬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단체나 인접 자치단체를 묶어서 지방의회 연찬회 개최 - 지방의회 의원의 교육을 담당하는 조직을 통해 교육을 제공하여 지방규제 개혁에 대한 이해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개혁과 자치입법의 관계 등 설명

4. 법률 제·개정 사항의 자치단체 피드백 시책 도입

- 자치단체의 규제개혁에서 중요한 것이 법률의 제·개정, 폐지 사항 등을 제대로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법률의 제·개정 사항을 제때,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전의 법률 등에 따라 제·개정된 자치입법에 따라 지방규제를 추진하는 오류를 저지를

위험성을 보유

- 법률의 제·개정, 폐지 사항 등을 자치단체까지 전달할 수 있는 다중의 장치를 시행할 필요가 있음
 - 법률의 제·개정 사항을 제때,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전의 법률 등에 따라 제개정된 자치입법에 따라 지방규제를 추진하는 오류를 저지를 위험성을 보유
 - 규제개혁위원회의 정보포털, 행자부 및 지방규제개선위원회의 홈페이지 등에 실시간으로 법률의 제개정 사항을 공지
 - 시도는 지방규제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재개정된 법률의 사항을 공지하고 해당 자치단체에게 발신
 - 자치단체 지방규제개혁추진단은 실시간으로 법률의 제개정 사항을 전파하여 해당 자치단체 전체가 공유
 - 시도, 시군구 지방의회에서도 법률의 재개정 사항을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공유
- 법률의 제·개정, 폐지 사항 등을 자치단체가 인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시책을 개발, 시행
 - 지방규제 개혁 추진단을 비롯하여 자치단체의 법무팀에서 법률의 제개정 내용을 숙지하고 있음을 규제개혁위원회나 행자부 등에게 전달 및 확인
 - 특히 지방규제개혁 추진단은 해당 자치단체의 규제개혁과 관련된 사항을 파악해서 보고
 - 이해 행자부 등은 법률의 재개정이 지방규제와 관련되는 점을 파악해서 자치단체에 제공

<표 21> 법률 제·개정 사항의 자치단체 피드백 시책 시행

구분	내용	비고
필요성	- 법률의 제·개정 사항을 제때,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전의 법률 등에 따라 지방규제 추진 위험	-
다중채널 활용 법률 재개정 사항 전파	- 규제정보포털에 법률의 재개정사항을 실시간으로 등록하고 자치단체와 공유 - 규제개혁위원회, 지방규제위원회의 법률 재개정사항 전파 및 설명	-네트워크 연결
자치단체 피드백 시행	- 법률 재개정 사항의 인지내용을 일정한 형태를 통해 행자부가 회신 및 체크	-규제개혁반영 사항 점검

5. 자치단체 벤치마킹 규제개선 견본 제공

- 앞에서 분석한 것처럼 자치단체 공무원이 규제를 판단한다는 것은 상당한 전문성을 요하는 작업에 해당됨
 - 법리, 법률적 지식 등에 대한 지식이 습득이 단시간 내에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자치단체 공무원이 규제개혁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규제개혁의 벤치마킹 자료를 제공
- 자치단체에 대한 사례분석에서 나타난 규제개선이 필요한 내용을 행자부가 정리하여 표준화
 - 표준화의 내용은 비규제인데도 불구하고 규제로 파악하기 쉬운 항목 등을 중심으로 예시와 함께 제시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임

<그림 8> 자치단체 제공 규제개혁 핵심 체크 내용



- 보다 일반적인 차원에서 법률의 재개정 등을 미반영한다든지, 법령 보다 강한규제나 소극적 적용 등의 규제 개선 포인트를 개발하여 자치단체에 제시하여 규제개혁에 도움을 제공
 - 주로 법령의 재개정에 대한 정보의 부족, 상위법령과의 불일치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내용과 예시를 제시

< 불합리한 규제의 예시 >

- 상위 법률의 개정으로 시도 조례로 규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군구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 예) 옥외광고물 관리법의 개정으로 옥외 광고물에 대한 규제는 시도지사가 규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군구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상위 법률의 개정으로 시군구 조례로 규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도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 건축법, 건축관련 환경에 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인해 시도 조례로 규정하던 것을 시군구 조례로 정하게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도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제3절 지방규제 거버넌스 구축

1. 행자부-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역할 강화

- 개정 법률안은 지방규제에 대한 행자부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음
 - 과거의 법률에서 지방규제에 대한 규정 뿐 아니라 안전행정부의 역할이 부재
 - 그러나 개정 법률안에서는 지방규제에 대한 역할을 행자부에 부여하고 있음
 - 특히 안 제35조의 3은 지방자치단체는 규제개혁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황을 안전행정부장관을 거쳐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함을 규정하고 있음

< 지방규제 정비에 관한 규정 >

- 안 제35조의3(지방자치단체의 규제정비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하는 취지에 따라 조례·규칙 등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에 대한 심사,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조치 현황을 안전행정부장관을 거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행자부에 부여, 강화된 지방규제개혁에 대한 미션에 더해 지방규제 추진 실적 등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됨
 - 자치단체의 규제개혁의 행태 등에 대한 개선을 위한 시책의 개발, 추진도 향후 행자부의 역할이 될 것임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유기적인 행자부 역할 증가를 지원하기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이 필요
 - 시책, 제도 개선 뿐 아니라 자치단체 교육 및 평가 등 실무 분야에서도 긴밀한 지원이 필요

2. 지방규제 개혁 거버넌스 구축

- 지방규제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의 참여가 필요
 - 지방규제개혁은 상위의 법률과 관련이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자치단체의 조례 등과도 연계되어 있기 때문
-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지방규제개선위원회를 중심으로 국무조정실, 재정부 등의 각 부처의 협력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
 - 중앙부처 차원의 협력은 지속성, 일관성, 자발성, 협업 등을 반드시 확보할 뿐 아니라 규제개혁을 통한 공공의 이익 증진이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임

- 지방규제의 발굴, 개선에 있어 중앙부처간의 이기주의 탈피가 필요
 - ※ 개정 법률안의 규정처럼 행자부를 중심으로 협력하는 방안이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음
- 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좁게는 규제개혁추진단, 보다 넓게는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
 - 민간이나 NGO 뿐 아니라 지방의회 의원, 경제활성화와 안전에 관련된 조직이나 단체 등이 참여하는 자치단체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 운영

【참고문헌】

- 규제개혁위원회(2014). 「2013 규제개혁백서」. 서울: 규제개혁위원회.
- 김신(2005), “지방자치단체 규제행정 혁신전략”, 「지방행정」, 6월호.
- 김현호(2014),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여의도 포럼 정책세미나 발표자료.
- 이진수(2008), “지자체 규제개혁의 특징과 추진방향”, 「지방행정」, 57권 656호.
- 대한상공회의소(2013, 2014), 지자체 규제실태 조사.
- 대한상공회의소(2014.4), 피규제자 시각의 지자체 규제와 기업환경 실태.
- 전국경제인연합회(2013), 2013년 규제개혁 체감도 조사분석.
- 전국경제인연합회(2013), 우리나라 규제현황과 개선방안.
- 안전행정부(2013), 지자체 규제개선, 관계부처 합동자료.
- 안전행정부(2013). 「2013년 지방자치단체 규제업무 매뉴얼」. 서울: 안전행정부.
- 안전행정부(2013), 지방규제 완화 과제발굴 제1,2,3차 회의자료.
- 이원우(2008), “규제개혁과 규제완화: 올바른 규제정책 실현을 위한 법정정책의 모색”, 저스트, 통권 106호, PP.355-389.
- 임성일(2014), 지방규제 문제와 개혁과제, 토론회 발표자료.
- 조성한(2008). “좋은 규제: 통제수단에서 정책도구로”, 「정부학연구」, 14(4): 347-368.
- 조창현 외(2008). 「규제개혁의 집행 순응 실태와 사후관리 효율화 방안」. 산업연구원 정책자료 2008-90, 서울: 산업연구원.
- 최병선(1992), 「정부규제론: 규제와 규제완화의 정치경제」, 법문사.
-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3),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방규제 개선방안.
- 한상우(2012). “역대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과 향후 입법적 과제”, 한국입법정책학회, 「경제 ! - Regulation ? - 규제 입법의 현황과 향후 과제」. 공동 학술세미나 자료집, 55-120.
- 현대경제연구원(2014). 규제 증가의 특징과 시사점: 규제의 강도 소폭 증가, 현안과 과제 14-4호.
- 현대경제연구원(2013), 최근 규제개혁의 성과와 한계, 경제주평, 통권 558호.

〈 부록 1 〉 남원시 자치법규 리스트 (일부)

남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2008년12월30일
남원시 의회사무국 직무대리 규정	훈령	2012년03월15일
남원시의회 공인 조례	조례	2012년11월16일
남원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규칙	2013년09월27일
남원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조례	2012년11월16일
남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조례	2013년09월27일
남원시의회 의원 등 공무원외여행규칙	규칙	2011년11월23일
남원시의회 의원 등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2012년04월02일
남원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규칙	2012년11월16일
남원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2013년09월27일
남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조례	2009년10월12일
남원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2011년11월18일
남원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훈령	2012년01월20일
남원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규칙	2012년11월16일
남원시의회 포상규정	훈령	2011년07월25일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2012년05월04일
남원시의회 회의 규칙	규칙	2013년11월11일
남원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2012년11월16일
남원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조례	2013년05월10일
남원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2007년12월28일
남원시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규칙	규칙	2008년05월03일
남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규칙	2008년10월10일
남원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조례	2008년12월30일
남원시의회 의장·부의장 선거관리규정	훈령	2008년09월29일
남원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조례 시행규칙	규칙	2008년05월03일
남원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현장 운영 조례	조례	2014년06월27일
남원시 미래창조포럼 구성 및 운영 규정	훈령	2014년02월10일
남원시 상징물 관리운용 및 상표권 행사에 관한 조례	조례	2012년11월16일
남원시 상징물 관리운용 및 상표권행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2012년11월16일
남원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2012년04월02일
남원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조례	조례	2012년11월16일

남원시 학습동아리 구성 및 운영 규정	훈령	2014년04월11일
남원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2013년04월05일
남원시행정자료실설치및운영규정	훈령	2010년12월29일
남원시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규칙	2011년04월01일
남원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규칙	2013년12월12일
남원시 행정혁신 운영규정	훈령	2010년12월29일
남원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2008년10월10일
남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조례	2008년04월01일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조례	2012년04월02일
남원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정	훈령	2011년03월10일
남원시 보증채무 관리조례	조례	2012년07월02일
남원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조례	2012년07월02일
남원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2012년11월16일
남원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2012년11월16일
남원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2013년09월27일
남원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2013년09월27일
남원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조례	2013년09월27일
남원시 보조금 관리조례	조례	2014년05월02일

< 부록 2 > 남원시 등록규제 리스트 (일부)

규제사무명	자치법규근거	변경사유	등록일	시행일
위탁의 취소	남원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누락	2013-11-27	2000-08-05
손해배상 등	남원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휴양 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누락	2013-11-27	2013-11-11
백두대간생태공원사용제한	남원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휴양 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누락	2013-11-27	2013-11-11
백두대간생태공원 행위제한	남원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휴양 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누락	2013-11-27	2013-11-11
백두대간생태공원 입장료	남원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휴양 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누락	2013-11-27	2013-11-11
백두대간 생태공원 개장 및 휴장	남원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휴양 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누락	2013-11-27	2013-11-11
목적외 용수의 개발 및 사용	남원시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누락	2013-11-27	2000-12-01
피해발생의 신고의무	남원시 농업재해복구비 지원 조례	누락	2013-11-27	2009-05-27
재난지원금의 반환	남원시 사유시설 피해 재난 지원금 지원 조례	누락	2013-11-27	2013-05-10
지원등의 취소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누락	2013-11-27	2013-11-11
중복지원의 금지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누락	2013-11-27	2013-11-11
보고 및 검사	남원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누락	2013-11-27	2010-06-28
목적외 사용금지	남원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누락	2013-11-27	2010-06-28
옷칠공예관 위탁 지도 감독	남원시 옷칠공예관 운영관리 조례	누락	2013-11-27	2004-09-16
옷칠공예관 위탁의 취소	남원시 옷칠공예관 운영관리 조례	누락	2013-11-27	2004-09-16
옷칠공예관 사용신청 기준	남원시 옷칠공예관 운영관리 조례	누락	2013-11-27	2004-09-16
옷칠공예관 사용료	남원시 옷칠공예관 운영관리 조례	누락	2013-11-27	2004-09-16

규제사무명	자치법규근거	변경사유	등록일	시행일
신고의무	남원시 시세 조례	누락	2013-11-27	2013-05-10
신고에 의해 적발된 사업장의 과태료 부과	남원시 1회용품사용위반 과태료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조례	누락	2013-11-27	2009-10-12
수탁자의 의무	남원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휴양 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누락	2013-11-27	2013-11-11
사용료 수강료의 반환	남원시 여성문화센터 운영조례	누락	2013-11-27	2010-12-29
사용료 수강료의 면제	남원시 여성문화센터 운영조례	누락	2013-11-27	2010-12-29
수탁자의 의무	남원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누락	2013-11-27	2009-11-24
노인복지관 사용료	남원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누락	2013-11-27	2009-11-24
장수수당 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남원시 장수수당 지급조례	누락	2013-11-27	2008-02-18
장수수당 지급 대상자	남원시 장수수당 지급조례	누락	2013-11-27	2008-02-18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 정지	남원시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조례	누락	2013-11-27	2012-08-14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 자격	남원시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조례	누락	2013-11-27	2012-08-14
포상금 지급 취소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누락	2013-11-27	2013-11-11
교육비 신청 및 지원 기준	남원시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비 지원 조례	누락	2013-11-27	2013-11-11
사용허가 받은 자의 의무	남원시 지리산소극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누락	2013-11-26	2010-04-01
권리의 양도 금지	남원시 지리산소극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누락	2013-11-26	2010-04-01
입장제한	남원시 지리산소극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누락	2013-11-26	2010-04-01
위탁운영자의 의무	남원시 지리산소극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누락	2013-11-26	2010-04-01
관람의제한	남원시 혼불문학관 운영 및 관리조례	누락	2013-11-26	2005-02-14
사용의제한	남원시 혼불문학관 운영 및 관리조례	누락	2013-11-26	2005-02-14
변상조치	남원시 혼불문학관 운영 및 관리조례	누락	2013-11-26	2005-02-14

규제사무명	자치법규근거	변경사유	등록일	시행일
학교급식 지원대상	남원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누락	2013-11-26	2007-09-28
학교급식 지원신청	남원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누락	2013-11-26	2007-09-28
지원대상자의 의무	남원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누락	2013-11-26	2007-09-28
장학금의 지급 중지	남원시 장학금 지급 조례	누락	2013-11-26	1995-01-12
학교급식 지원대상자 지도 및 감독	남원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누락	2013-11-26	2007-09-28
위탁의 취소	남원시 백동연죽장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누락	2013-11-26	1997-12-30
수탁자의 의무	남원시 백동연죽장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누락	2013-11-26	1997-12-30
위탁운영의 해지	남원시 지리산소극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누락	2013-11-26	2010-04-01
장학생수와 장학금액	남원시 장학금 지급 조례	누락	2013-11-26	1995-01-12
자치사랑방 사용료	남원시 자치사랑방 설치 및 운영조례	누락	2013-11-26	2002-07-10
지리산소극장 사용 허가제한	남원시 지리산소극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누락	2013-11-26	2010-04-01
허가신청 및 사용료 등	남원시 지리산소극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누락	2013-11-26	2010-04-01
허가취소	남원시 지리산소극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누락	2013-11-26	2010-04-01
춘향골체육공원 시설 개방의 제한	남원시 춘향골체육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누락	2013-11-26	2003-02-11
춘향골체육공원 사용 제한	남원시 춘향골체육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누락	2013-11-26	2003-02-11
춘향골체육공원 사용 허가 우선순위	남원시 춘향골체육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누락	2013-11-26	2003-02-11
춘향골체육공원 사용 허가	남원시 춘향골체육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누락	2013-11-26	2003-02-11
교통공원 지도 및 감독	남원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누락	2013-11-26	2006-08-10
어린이 교통공원 수탁자의 의무	남원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누락	2013-11-26	2006-08-10
교통공원 이용의 제한	남원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누락	2013-11-26	2006-02-10
교통공원 이용신청 및 허가	남원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누락	2013-11-26	2006-02-10
평생학습센터 감독	남원시 평생학습조례	누락	2013-11-26	2006-08-08

〈 부록 3 〉

행정규제 개념 및 판단기준

2010. 6. 10.

규제개혁위원회

I. 행정규제의 개념 및 범위

1. 행정규제기본법령의 규정

-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행정규제의 정의)
 - 행정규제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
-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행정규제의 범위)
 1. 허가·인가·특허·면허·승인·지정·인정·시험·검사·검정·확인·증명 등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2. 허가취소·영업정지·등록말소·시정명령·확인·조사·단속·과태료부과·과징금 부과 등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3. 고용의무·신고의무·등록의무·보고의무·공급의무·출자금지·명의대여 금지 기타 영업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4.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 동법 제3조 제2항(행정규제기본법 적용제외)
 1.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행하는 사무
 2. 형사·행형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
 3. 국가정보원법에 의한 정보·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4. 병역법·통합방위법·향토예비군설치법·민방위기본법·비상대비자원관리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징집·소집·동원·훈련에 관한 사항
 5. 군사시설·군사기밀보호 및 방위사업에 관한 사항
 6. 조세의 종목·세율·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2. 행정규제의 개념·범위

- 행정규제는 행정기관(행정규제의 주체)이 국민(행정규제의 객체)에 대해 특정 행정목적 을 위하여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여(행정규제의 내용)하는 것으로 법령 등에 규정(행정규제의 형식)된 사항
- 행정규제의 주체·객체·내용·형식에 모두 해당할 때 행정규제로 판단

2-1. 행정규제의 주체

□ 행정규제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

- 국가 : 정부조직법상의 중앙행정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소속기관, 합
제 행정기관 등
-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기관
- 행정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 법령등
또는 조례·규칙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
는 그 기관이나 개인

행정기관이라 함은 법령등 또는 조례·규칙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가지는 기관과 동 권
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함(행정규제기본법 제
2조 제1항 제4호)

□ 행정규제의 주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법적용제외)
: 원칙적으로 입법부, 사법부, 선관위, 감사원 등은 광의의 국가개념에 포
함되나 행정규제기본법상 행정규제의 주체에서 제외(법제3조제2항)
- 행정기관이 아닌 자로서 행정권한을 위임·위탁받지 아니한 자

2-2. 행정규제의 객체

□ 행정규제의 객체에 해당하는 자

- 법령의 규제를 받는 자연인(내국인, 외국인)
: 국민은 자국내 사람(내국인)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규제의
근거가 되는 법령 등의 규제대상(피규제자)인 내·외국인을 통칭
- 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 및 재단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등에 근거해서 행하는 규제사무로 인
해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를 당하는 피규제자라면 자연인이 아니
라 하더라도 그 법인격 유무에 관계없이 행정규제의 객체가 됨

□ 행정규제의 객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행정기관 : 행정기관이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는 행정내부규
제로 행정규제기본법의 행정규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이 원칙

- 그러나 행정기관에 대한 의무 부여가 국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여를 가져온다면 실질적으로 규제를 받는 국민이 행정규제의 객체가 됨(행정규제)
(예) 검사비를 피검사자가 부담토록 규정된 경우에 있어 검사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에 대한 검사횟수 증가 훈령등

2-3 행정규제의 내용

□ 행정규제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 특정한 행정목적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국민에게 “부담적이냐 수익적 규정이나”가 기준이 아니고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나”가 기준임

□ 행정규제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국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경우나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중 그것이 특정한 행정목적 실현을 위한 것이 아닌 경우
 - 국민의 일반적인 민사, 상사생활을 규율하는 민법, 상법이나 개별 행정법령 내에 법적 명확성을 위해서 규정된 민법 혹은 상법과 동일한 정도의 규정은 ‘특정행정목적’에 해당하지 않음
 - ※ 특정한 행정목적 위해서 민법 혹은 상법 등의 규제수준보다 강화된 요건 등을 개별 행정법령에서 규정한 경우는 행정규제임.
-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중 행정규제기본법의 적용을 제외토록 한 사무(적용제외)
 - 범죄수사등 형사관련 사무, 확정된 형을 집행하는 행형 및 보안처분 등에 관한 사무
(예) 형법, 형사소송법, 행형법, 보안관찰법 등의 법령과 개별 행정법령 내의 행정형벌(행정질서벌은 제외)규정
 -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의한 징집·소집·동원·훈련과 직접 관련된 사항
 - 징집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병역의무자 귀국보증제도’ 등은

행정규제에 해당

-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 군사시설, 군사기밀보호에 관한 사항
- 조세의 종목, 세율, 부과 및 징수와 직접 관련된 사항
 - 조세의 종목, 징수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주류관련 면허, 업종에 따른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의무 등은 행정규제에 해당

2-4. 행정규제의 형식

- 행정규제는 ‘법령등’에 규정된 것임
 - ‘법령등’은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 조례규칙, ‘고시등’(고시, 공고, 예규, 훈령)을 지칭
- ‘법령등’에 규정되지 않은 규제
 - 행정규제기본법상의 규제등록, 규제심사의 대상인 행정규제는 아니나 규제법정주의 등을 위반한 규제가 됨(법 제4조, 법 부칙제4조)

3. 행정규제의 근거법령등의 범위

-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 규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 또는 상위법령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또는 조례·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4조 제2항
 - 법령 또는 조례·규칙의 위임에 의하여 규제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고시등(훈령·예규·고시·공고)의 형식이 아닌 것은 고시등으로 변경

3-1. 규제를 규정할 수 있는 ‘법령등’의 범위

3-1-1.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모든 규제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며, 아울러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원칙임

3-1-2.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 규칙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아울러 법률의 위임된 범위내에서 규제내용을 정할 수 있음

* 조례, 규칙의 경우도 헌법 제117조제1항에 의거 법령의 범위내에서 정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 행정규제기본법 및 개별법률의 범위내에서 규제 가능

(예1)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부담금을 면한 원인자에 대해서 징수를 면한 금액의 3배-5배 이내의 과태료를 징수”토록 한 조례는 상위법률인 「도로법」의 위임근거가 없는 규제법정주의를 위반한 법령미근거 규제임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의 범위를 정한 지방자치법 제15조(제20조는 위임범위내의 과태료 액수범위)나 수수료, 사용료, 분담금에 한하여 과태료 제정이 가능한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근거를 일탈하고, 도로법의 위임도 없는 규제법정주의에 반하는 규정임

(예2)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에서 “분뇨수집운반업, 분뇨처리업,정화조청소업 등의 영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의 자격을 관할 구역내 주소를 둔 자로 제한”하는 조례는 상위법인 오분법의 위임이 없는 규제법정주의에 반하는 법령미근거(일탈)규제임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제35조의 영업허가와 관련 동법 제35조 제3항에서 ‘분뇨수집운반업’의 경우에만 영업구역등을 필요시 시장, 군수가 정할 수 있도록 한정하고 있음.

3-1-3. ‘고시등’에는 원칙적으로 규제를 규정할 수 없으며, 법령, 조례의 위임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규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전문적, 기술적, 경미한 사항에 한해서만 정할 수 있음

3-1-4. 지침, 교육자료, 지시 등에는 새로운 규제를 정할 수 없으며 해당규제의 운영·집행절차, 내용의 명확화 등에 관한 해석적인 사항만 정할 수 있음

3-2 행정부관으로 규제할 수 있는 범위

3-2-1. 법령에 근거가 없고 위임이 되지않은 행정부관(수리조건, 준수사항

등)으로는 원칙적으로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부여를 할 수 없음

3-2-2. 법령 등에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위임된 경우나 허가등 재량행위인 경우에도 인·허가 등의 취지 및 목적의 범위내에서 제한적으로 부관을 붙여야 하며, 새로운 행정처분이 수반되는 별개의 규제를 정할 수 없음

3-2-2-1. 재량행위(허가등)의 경우 ‘법령등’에 의한 구체적인 위임이 없어도 허가의 목적, 취지내에서의 기술적,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부관은 가능하나, 새로운 행정처분이 수반되거나 재산거래제한 등 중요사항의 경우는 부관으로 규제할 수 없음

(예1) 토지형질변경을 허가하면서 “공사는 일출에서 일몰시까지만 해야한다”는 부관을 부과하는 것은 ‘법령등’에 근거가 없이 개인의 공사시간까지 규제하는 규제로, 주택단지 인근의 형질변경공사로 인해 민원이 우려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선별적으로 야간작업은 자제토록 권장하는 조건은 가능할 것이나 일률적·의무적으로 공사시간을 규제하는 것은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에 반하는 것임.

(예2) 공장설립을 승인하면서 “공장용지를 나대지 상태로 전매하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하지 못함”이라는 조건을 행정부관으로 부과하는 것은 ‘법령등’의 근거없이 이는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새로운 규제로 규제법정주의에 반함

- 공장용지의 전매·활용이 법령등의 목적에 어긋나면 개별적으로 취소, 변경승인 등 별도의 행정처분으로 이를 제한할 것이지 원칙적으로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규제를 부관만으로 부과할 수는 없음

3-2-2-2. 기속행위(신고등)에 대한 부관의 경우는, 신고와 관련된 권고적·계도적인 사항이나 신고행위와 관련되어 타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는 규제에 대한 행정안내 등에 한하고 새로운 권리제한이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음

(예) 오분법에 의한 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수리하면서 “기타 타법에 관련되는 사항을 적시하고 그 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후에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라는 행정안내 성격의 부관을 부과하는 것은 무방

3-2-2-3. 다만, 신고의 성질에 따라 자기완결적 공법행위로서의 신고(본래 의

미의 신고)의 경우에는 그것이 관계행정기관에 도달하기만 하면 그 자체로서 법적 절차가 완료되므로 규제인 부관등을 붙일 수 없으나(3-2-2-2 범위), 신고가 사실상 허가등의 경우와 같은 기속재량행위인 경우는 제한된 범위내에서의 행정부관은 가능함 (3-2-2-1범위)

II. 행정규제 판단기준

1. 기본원칙

- 1-1. 행정규제는 행정주체가 행정객체(피규제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여 하느냐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 1-1-1. 국민에게 “부담적이냐”, “편익적·수혜적이냐”를 기준으로 규제여부를 판단 하여서는 안됨
 - * 대부분의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규제(환경보전등)는 편익이 비용보다 크기 때문에 규제의 타당성이 높다는 것이지 행정규제 자체가 아닌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됨
 - 1-2. 법령등의 규정상 권리제한, 의무부여의 대상이 “국민이나 행정기관이냐”는 규정상의 형식 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의무나 권리제한이 최종적으로 국민(행정 객체)에게 주어지느냐의 여부로 규제를 판단
 - 1-2-1. 행정기관에 대한 의무부과 형식의 규정이라도(내부규제형태) 종국적으로 행정기관이 의무수행을 위해 피규제자의 권리제한이나 또다른 의무를 부여하게 된다면 규제가 됨
 - 1-3. 법령상의 규정이 강제적이냐, 임의적이냐에 따라 규제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권리제한, 의무부여 여부로 판단
 - 1-3-1. 임의적 규정이라도 하위규정이나 혜택의 정도에 따라 사실상 의무화 또는 강제가 되는 경우는 규제가 되며
 - 1-3-2. 강제적인 규정이라도 하위규정 등 집행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고 단순한 사회규범적 성격의 선언적 규정은 규제에 해당되지 않으며
 - 1-3-3. 최초 선택(가입 등)은 임의적이라도 선택한 이후에는 상당한 의무준수가 요구된다면 원칙적으로 별도의 규제임
 - 1-4. 개별 행정법령에 규정된 규제가 민법, 상법에서 규정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

인 경우에는 행정규제로 판단하지 않는 것과 같이 법령의 규정형식만이 아니라 실제 규제여부로 판단

2. 구체적인 판단기준

2-1. 단체 등(협회, 조합, 투자·출자기관 등)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

<기본적인 판단>

- ◆ 단체 등의 성격(행정기관의 지위 여부)과 정부의 출자의 범위 등을 종합 고려하여 규제여부를 판단
 - 국가기능 대행·위탁수행시 : 대행·위탁의 범위내에서 행정기관 지위
 - 정부의 출자·보조의 정도 : 보조·출자범위내에서 소유주로서의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은 내부규제

2-1-1. 관련법령에 의한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협회·조합에 대한 감독관련 규정의 규제 판단

- 관련법, 조례 등에 의해 일정한 국가기능(개발사업, 교육, 검증, 확인, 점검 등)을 위탁·대행하여 수행하는 협회 : 당해 범위내에서 행정기관의 지위에 있음(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제1항 제4호)
 - ▶ 행정권한 대행·위탁기관에 대한 위탁업무와 직접 관련된 지도·감독관련 사항은 원칙적으로 행정내부규제로 행정규제가 아님
 - (예) 소방안전협회, 소방검정공사, 대한지적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가스안전공사, 축산물등급판정소 등에 대한 보고의무, 감사, 감독관련 규정 등
 - ▶ 협회·단체의 전체업무 중 위탁·대행하는 국가기능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음에 비해 협회 등에 대한 과다·포괄적인 지도·감독은 행정규제임
 - (예) 기관장 임면, 포괄적 업무현황보고, 협회자체업무에 대한 통제규정 등

2-1-2. 정부출자·투자기관·특수법인의 경우

- 기획재정부에서 지정하여 공시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감독사항과 투자비용에 따라 감독자(소유주)의 입장에서 행하는 감독사항은 행정규제에서 제외
 - ▶ 정부가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 출자의 범위내(소유

자로서)에서 행하는 일반적인 지도·감독적 기능은 **행정규제가 아님**

(예) 예산승인, 업무보고, 임원선임 관련 규정등

▶ 출자의 범위에 비해 과도하게 해당기관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정도의 지도·감독은 **행정규제임**

▶ 무자본특수법인으로 대부분의 재산을 국가로부터 무상사용, 관리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지도·감독은 **원칙적으로 행정규제가 아님**

(예) 한국환경자원공사, 환경관리공단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

2-1-3. 개별법(특별법)에 의해 설립되어 독점적·배타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법령 등의 근거에 의해 민간부분에 대해 지도·감독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 민간(회원 등)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지위에 있고, 감독부처(정부)와는 피규제자의 위치에 있는 이중적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판단

▶ 해당기관이 행정기관의 지위에서 행하는 국민, 거래자 등에 대한 규제는 **행정규제임**

▶ 해당기관이 행정기관의 지위에 있을 경우 정부가 행하는 지도·감독은 **행정규제가 아님**

(예) 증권거래소, 증권예탁원, 선물거래소, 소비자보호원 등

2-1-4. 민법등에 근거하여 설립인가된 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

▶ 민법 혹은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설립규정, 해산사유 등 주무관청의 지도·감독 규정은 **행정규제가 아님**

▶ 민법 혹은 상법보다 강화한 감독 등의 규정은 **행정규제임**

위 II-2-1 판단기준은 대상기관 자체의 성격 분류 등에 따른 감독기관의 **지도·감독기능(각종 보고, 정관·결산·예산승인, 임원임면 등)에 한한 것**이며, 지도·감독 외의 사항은 성격에 따라 **별도로 규제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예) 증권거래소법의 “비회원의 거래소 거래제한”, “회원변동공고의무”, “임직원의 자기 거래 제한”,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영수증 교부·보관의무” 등

2-2. 장려·지원을 위한 보조금지급 및 각종 지정행위관련 규정

2-2-1. 각종 보조금(기금, 저리융자 등 포함)등의 지원대상 선정 규정

-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육성 등의 차원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 보조의 성격상 지원총액 규모에 따른 대상자 선정기준은 원칙적으로 규제가 아니며 지급후에 수반되는 의무는 규제가 될 수 있음
- ▶ 지급할 보조금의 규모등에 따라 분배를 위한 지급기준, 대상자 선정기준, 지원한도, 대출이율 등 보조금의 지원 및 선정기준은 **원칙적으로 행정규제가 아님**
- ▶ 보조금 지급대상자의 선정기준이 보조금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이 여타 행정목적 실현을 위하여 설정하는 기준은 **행정규제임**
(예) 특정한 지역에 한정하는 선정기준 등
- ▶ 승인조건, 매칭펀드 요구 등 민간이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보조금 지급의 요건으로 하는 경우 이러한 행위요건은 **행정규제임**

2-2-2. 보조금 등 지원후의 의무사항 및 감독관련 규정

- 보조금 지급기관에 대한 지도·감독행위는 보조금의 성격과 보조금의 규모에 따라 판단 (보조금의 성격상 원칙적으로 2-1-2와 같은 소유주로서의 지도·감독관계에 있지 않음)
- ▶ 보조금의 지급 범위내에서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목적에 적합한 정도의 지도·감독은 **원칙적으로 행정규제가 아님**
* 단위사업 혹은 단체활동에 지원되는 보조금등이 차지하는 비율등을 고려, 보조금의 지원범위 내에서의 불가피한 지도·감독 등의 경우(예: 보조금의 사용내역통보 등)
- ▶ 단, 일부보조 혹은 상황을 전제로 한 저리융자인 경우에 행하는 과도한 지도·감독 등은 **행정규제임**
(예)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포괄적인 업무보고의무, 보훈기금에 의해 대부분 받은 부동산(농토, 주택등)에 대한 직접관리기간설정, 양도·담보금지 제한 규정 등
- ▶ 보조금·지원금의 부정수급자에 대한 환수 또는 지원중단 조치에 대한 규정의 경우, 수급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지원의 범위내에서 환수조치하거나, 지원을 중단하도록 한 규정은 **행정규제가 아님**

2-2-3. 각종 보조,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지정 등의 경우

- ▶ 지정을 받지 않더라도 동일행위를 할 수 있으며, 홍보효과 등 혜택은 있으나 지정대상을 크게 제한하지 않는 경우는 **행정규제가 아님**
 - (예) 해당되는 지역내에서는 신청한 경우 대부분 지정되는 민박농어가 지정 등
 - (예) 식품접객업소중 우수업소지정, 클린 주유소 지정, 환경친화기업 지정, 생태마을 지정, 명장등의 선정, 기능장려우수사업체 선정,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 등
- ▶ 지정에 따른 홍보효과 및 각종 지원의 혜택이 큼에 비추어 대상중 지정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와 지정후 부과되는 의무·금지규정 및 의무 불이행 또는 금지사항 위반시 지정취소 규정은 **행정규제임**

2-3. 임의적 규정 혹은 사회규범적 규정의 규제 판단

2-3-1. 법령규정상 “~할 수 있다, ~권고할 수 있다” 등 임의적으로 규정된 경우

- ▶ 집행을 위한 하위규정이 마련되지 않고 사실상 선언적으로 규정된 경우는 **행정규제가 아님**
- ▶ 하위규정에서 구체적으로 준수 절차가 마련되어 있고, 따르지 않을 경우 상당한 불이익이 있거나 이익이 크게 줄어들어 사실상 준수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는 **행정규제임**
 - (예) 무선국의 의사공중선 사용권고, 화학물질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규정

2-3-2. “~의 인가를 받아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할 수 있다”와 같이 설립등에 대해 임의적으로 규정한 경우

- ▶ 설립, 가입 등 선택이 임의적인 경우 그 자체는 규제에 해당되지 않으나
- ▶ 선택후(설립·가입하려면) 반드시 일정한 절차의 준수가 필요하다면 선택에 따르는 의무사항 자체는 **행정규제가 될 수 있음**
 - 설립절차, 정관의 내용, 사업범위, 이사회 구성·운영 등에 대한 개별법령의 규정이 민법, 상법에서 정한 법인 혹은 회사의 설립관련 규정과 동일하거나 완화한 수준인 경우 : **행정규제가 아님**

- 설립절차 등에 대한 규제의 정도가 민법, 상법의 정도를 넘어서는 경우
나 민·상법의 규정과 다른 경우 : **행정규제임**

(예) 설립이 임의적인(할 수 있다)인 경우 설립은 규제가 아니나 사업자 단체 설립시 출자한도제한, 조합원의 최소구성인수제한, 각종 수익사업시 승인 등의 규정은 행정규제임

2-3-3. “~ 경우 신고를 해야한다” 등 시민의 당연한의무(응급환자·화재발견시 신고 등)

- ▶ 단순히 선언적으로만 규정한 경우는 **행정규제가 아님**
- ▶ 처벌규정이 있거나 하위규정 등으로 의무화의 구체성이 있는 경우는 **행정규제임**. 단, 처벌 규정이 있더라도 사회통념상 당연한 규정은 **행정규제가 아님**

(예) 근로자에 대한 폭행금지는 행정규제가 아님

- ▶ 건전한 시민의 당연한 의무 및 일반적 사회규범에 속하는 규정이라 하더라도, 이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규제대상자에게 비용 등의 실질적인 부담이 요구되는 경우는 **행정규제임**

(예) 장애인 차별금지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등 실질적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2-3-4. “~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와 같이 자료제출에 대해 임의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한다”는 규정외에 이를 강제하거나 집행하기 위한 하위 규정이 없는 경우

- ▶ 자료제출 요청이 보조, 지원, 조성이나 계획수립, 지수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요청하는 자료의 종류와 분야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규제가 아님**

(예)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시행·평가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협조요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가족친화법 제7조)

- ▶ 자료제출 요청이 지도, 감독, 실태파악, 조사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자료의 분야 또는 종류가 어느 정도 특정되어 있어 단지 임의적 규정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는 **행정규제임**

(예)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의료기관등에게 미수금심사, 대불금 구상 및 결손 처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2-4. 의무화되지 않은 각종 인증·검사 등에 관한 규정

2-4-1. 인증(품질인증, 검정표시 등)이 의무화되지는 않고 개인의 상품홍보나 정부 정책적(권장·유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 ▶ 정부가 인증·검정된 업체·물품의 사용을 권장·유도하는 정책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인증제품의 상품홍보독점이 보장되는 등으로 그 혜택으로 보아 사실상 신청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경우(정도를 고려)는 **행정규제임**
- ▶ 기타 국민의 자율적인 선택기준으로 제공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행정규제가 아님**
(예) ISO인증, KS마크, 우수산업디자인 인증, 생산성경영체제 인증, 이러한 품질인증 등
- ▶ 의무화되지 않은 제도라도 인증의 신청대상을 물품종류 등 일률적인 기준이 아니고 선별적으로 제한한다면 **제한 자체는 별도로 행정규제가 됨**

2-4-2. 검사 신청이 의무화되지는 않았으나 국민이 위생·안전·품질확인 등의 목적으로 정부공인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 ▶ 국민이 공인된 정부기관의 검사결과를 원하므로 사실상 검사가 강제되어지고 있고, 검사신청시 Sample 제출방법, 검사시기 등의 기준을 정하고 피규제자가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선별적으로 검사해 주는 경우는 **행정규제임**
- ▶ 검사가 법적 의무는 아니나 상거래상 물품의 판매 등을 위해 국가공인검사가 사실상 필요한 경우로 검사기관의 독점이 되는 경우는 **행정규제임**
(예) 관례적으로 공인검사확인서가 요구되는 농수산물 (수·출입용) 검사, 안전목적의 농산물·음용수성분검사와 관련된 검사 제한 규정
- ▶ 기타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행정규제가 아님**

2-5. 의무화되지 않은 등록·신청 등에 관한 규정

2-5-1. 특허·실용신안·저작권의 경우

- ▶ 특허·저작권은 특정한 행정목적이 아닌 지적재산권(민법의 특별법 성격)에 관한 사항으로 특허·저작권 자체는 **행정규제가 아님**.
- 저작물은 저작권자의 허가없이 공표·복제 등을 할 수 없으나, 저작물을 학교 교육의 목적, 재판절차 또는 행정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저작물을 게재 또는 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저작권을 일부 제한하는 규정은 **행정규제임**
- 특허·저작권 자체는 규제가 아니나 등록할 수 있는 대상을 선택적으로 제한 하거나 특정한 절차를 요구한다면 그 부분의 **규제여부는 별개로 판단되어야 함**
- ▶ 재산권으로는 볼 수 없는 등록·신청 등의 경우중 필요한 서류·절차·수수료 등 요건을 정하고 이를 충족해야만 등록이 가능하고, 등록에 따른 혜택(보조금 지급, 구매시 우선순위 부여 등)으로 대부분 등록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는 **행정규제임**
- (예) 소프트웨어 등록

2-5-2. 기타 의무화되지 않은 등록·신청 등은 원칙적으로 행정규제가 아님

2-6. 상위법령에 따라 이루어지는 규제대상선정 고시·공고의 경우

2-6-1. 법령등에 규제대상등에 관한 기준이 정해진 상태에서 동 기준에 해당되는지를 기술적인 연구·판단을 거쳐 기준의 대상임을 고시·공고하는 경우

- ▶ 상위법령등에서 규제대상 선정기준이 구체적이고 그 기준이 불변인 상태에서 기준에 해당되는 물질·대상임을 사실판단을 거쳐 이루어지는 고시의 경우 상위법령등의 기준은 행정규제이나, 판단고시 자체는 행정규제가 아님
- (예) 폐수처리·오니 및 공정발생사업장 고시, 유독물·관찰물 고시,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고시 등

2-6-2. 상위법령에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고시등’에서 사실상 규제 대상으로 지정·결정하는 경우는 행정규제임

- (예) 한약재 수급조절대상품목 고시,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고시 등

2-7. “각종 지역(지구) 지정행위” 규정의 규제 판단

- 2-7-1. 법령등에 근거한 구체적인 지역(상수원보호구역, 대기규제지역, 개발제한구역, 농업진흥지역, 준농림지역 등)지정을 하는 경우

- ▶ 법령 등에서 지정대상이 되는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해당되는 지역을 판단하여 고시하는 규정은 (사실판단으로) **행정규제가 아님**

2-7-2. 지정으로 인해 권리제한 또는 의무(작위·부작위) 부과 등 행위제한이 따르는 경우 지역지정의 근거규정, 지역지정의 기준 및 행위제한 규정은 행정규제임

2-8. 기부금품 모집, 정부의 행사후원 승인 규정 등

2-8-1. 사회단체·개인의 기부금품 모집시 금액 등을 기준으로 제한하고 신청을 받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는 행정규제임

2-8-2. 국민의 사적인 행사에 행정기관이 후원을 승인하는 경우

- ▶ 행사의 후원을 얻지 못하더라도 (후원없는)행사를 할 수 있으면 행사 후원 승인 자체는 **행정규제가 아님**
- ▶ 행사를 후원 승인한 후 행사와 관련 상당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제약을 한다면 그 제한을 하는 규정은 **행정규제임**
(예) 행사후 수지결산 보고의무, 행사참석자 보고 규정 등

2-9. 행정벌, 수수료, 사용료, 부담금 등의 경우

2-9-1. 행정형벌(징역, 벌금 등) : 행정규제에서 제외

-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형사사무(법제정 취지)

2-9-2. 행정제재(영업정지, 취소, 과징금), 행정질서벌(과태료) : 행정규제

2-9-3. 수수료(fees)와 관련된 규정의 경우

- ▶ 각종 검사·신청 등과 관련하여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 부과되는 수수료의 요율결정은 원칙적으로 **행정규제가 아님**
(예) 축산물 등급판정 검사수수료, 시험수수료 등
- 그러나 수수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규제가 임의적·선택적이 아니고 의무적·강제적인 경우에 수반되는 수수료 부과(요율)는 **행정규제임**
(예) 인허가 없이 불가능한 경우에 있어 인허가시 부담토록 하는 수수료 요율
- 협회·단체 등에 수수료 징수만을 위탁한 것이 아니고 업무 자체를 위탁하면서

수수료 부과수준 결정에 정부가 개입한다면 정부가 개입(승인, 협의, 동의)하는 행위 자체는 **행정규제임**

- ▶ 수수료 부과와 원인이 되는 검사·신청·등록 등과 특정형태로 납부(수입증지) 토록 하면서 증지판매자를 지정·제한하거나 판매장소 등을 제한하는 것은 **별개의 행정규제임**

2-9-4. 사용자(user charges)와 관련된 규정의 경우

- ▶ 일반적으로 국가 혹은 자치단체의 영조물(체육시설, 문화시설, 교육시설등)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부과되는 사용료의 경우는 **행정규제가 아님**
(예) 공원·유원지 입장료, 박물관관람료, 하천점·사용료, 공설묘지·화장장 등 사용료,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등
- ▶ 사용자료의 부과와 원인이 되는 사용제한을 두거나, 사용승인 후 별도의 의무를 부여하는 행위 등은 **행정규제임**
(예) 지하상가 점포의 임차시 임차인에게 가능업종의 종류를 제한하거나 최고 임차가능기한의 사전설정, 공공필요시 점포를 30일이내에 비워야 한다는 등의 규정
- ▶ 영조물 자체를 개인·협회·단체 등에 일괄위탁 관리토록 하면서, 사용자료 부과수준 결정에 정부가 개입(승인, 협의, 동의)하도록 규정한 경우는 **개입자체가 행정규제임**

2-9-5. 부담금(분담금)의 경우

- ▶ 특정한 공익사업의 소요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국민이 아닌 그 사업과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중 사업경비의 일부를 특히 부담시키는 경우 : 분담금)을 내용으로 하는 부담금의 경우는 **행정규제임**
(예)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도로·하천부담금(원인자, 손괴자) 등으로, 부담금은 개개의 사업마다 법률로서 징수근거가 필요함

2-9-6. 수수료, 사용자, 부담금의 납부형태 및 방법, 납부기간에 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행정규제가 아니나** 납부형태, 방법, 기간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는 **행정규제임**

2-10. 비권력적 행정행위(공법상계약, 행정지도 등)의 성격을 갖는 규정의 규제 판단

2-10-1. 형식적 행정행위의 경우

- ▶ 실질적으로는 공권력이라는 실체를 갖지 않으면서 법률관계를 처리하기 위한 하나의 법기술로서 형식적으로만 행정행위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 **행정규제가 아님**

(예) 생활보호 결정, 보훈대상 결정, 국가유공자 결정 규정등

2-10-2. 공법상 계약의 형식을 취하는 규정의 경우

- ▶ 사법상계약과 형식·내용의 정도가 대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나 공법적 효과를 발생하고 공익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공법상 계약 형태의 행정행위는 **원칙적으로 행정규제가 아님**

(예) 환경보전협정(자치단체와 사기업체와의 공해방지와 환경보전을 위한 협정)규정

- ▶ 그러나 계약당사자인 국민이 계약과 관련하여 민법에 정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과도한 내용(계약의 일방적 해제시 국민의 수인의무, 사정변경시 신고의무 등)을 계약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도록 규정하는 경우는 **행정규제임**

- ▶ 각각의 계약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률 등에 명시적으로 규제내용을 정하지 않고 ‘계약에 의한다’ 는 근거규정만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해 체결되는 계약의 경우는 **행정규제가 아님**. 다만 계약에 관한 법령 등의 규정이 민법, 상법, 사회통념상의 계약정도를 벗어난 과도한 계약 내용을 포함할 경우는 **행정규제임**

(예) 각종 입찰계약에서 지역내 기업으로만 참여 제한하는 규정은 행정규제임

2-10-3. 행정지도(경고, 권고, 권장) 성격 등의 관련 규정

- 법령 등에 행정지도를 하는 근거가 있거나, 일정한 행정행위(하명, 허가, 인가 등)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배경으로 이루어지는 행정지도의 규제여부 판단은 행정지도의 내용을 검토하여 개별적으로 판단

- ▶ 공공의 질서유지에 장애가 되는 행위 또는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예방·억제하기 위한 규제적 성격의 행정지도, 혹은 개인 또는 단체들 사이의 이해대립이나 경쟁의 조정을 위해서 취해지는 조정적인 행정지도처럼 피규제자가 따르지 않을 수 없는 경우는 **행정규제임**

(예) 공해방지를 위한 권고, 물가억제를 위한 권고, 기계공업시설의 계열화 권고, 독점 및 불공정 거래의 시정권고 규정 등

- ▶ 국민에게 기술과 지식을 제공하거나 조언을 해 주는 것과 같이 일종의 서비스적 성질의 행정지도로 피규제자가 자율적 의사에 의해 선택할 수 있는 성격의 행정지도는 **행정규제가 아님**

(예) 생활지도, 육아지도, 직업지도 관련 규정 등

2-11. 각종 “행정계획”에 관한 규정의 규제 판단

- ▶ 행정계획 수립의 근거가 법령 등에 마련되어 있고, 행정계획이 타 계획이나 관계 행정기관에 대해서 구속력을 가져 종국적으로 국민의 재산권행사에 영향을 가져오나 구체성이 없고 구속적 행정행위가 별도로 이루어지므로 행정계획 자체는 원칙적으로 **행정규제가 아님**

* 이러한 행정계획에 의한 국민의 재산권 제한등은 별도의 구체적인 행위가 있게 되므로 계획자체는 행정규제가 아님

- ▶ 행정계획 수립의 근거가 법령 등에 마련되어 있고, 국민의 권리·이익을 직접, 구체적으로 침해하는 효과가 있어 사실상 개별시설에 대한 인·허가로 운영되는 경우는 **행정규제임**

(예) 자연공원법상 공원구역내 공원시설(숙박업소 등)입지 결정

2-12. 공용수용, 손실보상, 국가배상등과 관련된 규정의 규제 판단

2-12-1. 공용수용의 경우

- 공용수용은 타인의 재산권을 공익상의 필요를 이유로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법률에 근거를 필요로 하고, 완전보상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과, 완전보상이라도 국민의 재산권 선택의 권리가 제한되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하여 규제여부를 판단

- ▶ 어떠한 사업에 공공수용이 가능토록 하는 각 개별법의 수용대상 규정은 완전보상이라 하더라도 재산권의 침해를 허용하고 수인의무를 가져오므로 **행정규제임**
- ▶ 공용수용의 대상으로 선정된 이후의 수용절차등은 완전보상을 전제로 한

절차이므로 **원칙적으로 행정규제가 아님**

- 개별법에서 공용수용절차의 일반법인「토지수용법」이 정한 내용보다 절차를 엄격(청구기간의 제한, 공람의 제한 등)하게 규정한 경우는 **행정규제임**

2-12-2. 손실보상, 국가배상의 경우

- ▶ 국민의 권리 침해 혹은 의무부과에 대한 사후구제 수단이므로 보상·배상 자체 및 그에 따른 절차는 **원칙적으로 행정규제가 아님**
- ▶ 손실보상을 함에 있어 청구에 따른 기간제한 등 민법등 통상의 정도에 비해 과도하게 권리행사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는 **행정규제임**
(예) 민법보다 단축된 청구소멸시효, 보상금에 대한 양도·압류·담보제공 금지 규정
- ▶ 국가가 아닌 자의 보상·배상에 국가가 개입 승인·보고·통제하는 경우에 **승인·보고·통제 자체가 행정규제임**
(예) 원자력 사업자의 손해배상시 국가에 승인·보고토록 하는 규정 등

2-13. 각종 조사 등을 위한 사인토지 출입 및 장애물 제거조치 규정

- ▶ 토지수용·사용이 아닌 행정조사 목적의 일시적 단순 출입의 경우로 특별히 국민의 권리를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고 아울러 수인의무도 사회통념상 가능한 수준인 경우는 **행정규제가 아님**
(예) 자연환경조사, 습지조사, 전기통신설치 등을 위한 불가피하고 경미한 타인토지 일시 출입의 규정
- ▶ 개인의 임목, 토석, 식물등 장애물을 변경·제거하는 경우
 - 행정목적에 위해 불가피한 장애물의 제거조치로서 소유·점유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경우는 **행정규제가 아님**
(예) 자연환경조사와 관련 동의를 전제로 하는 임목, 토석제거 규정
 - 소유·점유자의 동의 규정없이 임목 등의 장애물을 (통보 등) 제거 가능토록 하여 재산권의 침해, 수인의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보상규정 유무와 관계 없음)는 **행정규제임**
(예) 기간통신사업자의 식물등 제거요구, 습지보전·도서생태보전을 위한 임목등 제거 규정

2-14. 정부가 시행하는 보장제도(의료·고용·산재보험·국민연금) 규정의 경우

2-14-1. 사회보험 등의 강제가입이나 보험가입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은 행정규제임

- ▶ 보험에 가입을 강제하는 규정, 보험의 가입대상, 자격과 관련된 규정(가입자 자격 취득시기, 상실시기, 임의계속가입자의 자격 상실 등), 수급권 등 권리의 박탈·정지·소멸·제한에 관한 규정, 근로자 퇴직연금 수급권의 양도 담보제공 금지, 보험료 등 징수의 우선순위 규정 등은 **행정규제임**

(예) 국민연금법의 당연적용 사업장

(예) 건강보험료의 징수 우선순위를 국세, 지방세 다음으로 규정

- ▶ 직접 국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의 성격이 없고 보험제도 운영을 위한 기술적 규정은 **행정규제가 아님**

(예) 사망의 추정, 가입기간계산, 지급기간 및 시기, 미납금 공제지급, 반납금 납부와 가입기간, 국민연금 지급연령조정기준, 요양금의 일시보상, 분할 보상(근로기준법 제84조, 제85조), 고용보험 및 산재보상보험 기준임금 산정, 보험의 의제가입, 개산보험료의 경정 청구 등

2-14-2. 보험요율 및 보험요율의 산정방법, 연금 납부액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행정규제가 아님

2-15. 행정내부규제 형식 규정의 규제판단

<기본적인 기준>

- ◆ 행정기관에 대한 의무부여 방식의 규정 형태와 관계없이 행정기관이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 피규제자(국민)에게 어느정도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가 있게 되는지를 우선 판단하고
 - 그러한 권리제한·의무가 기존의 규제를 집행하는 범위내에서의 구체화·명확화를 위한 사항인지
 - 타 규정에 없는 새로운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가 발생하게 되는지의 여부 등에 따라 행정규제로 판단

2-15-1. 집행기관에 대한 지도·단속 지침(통상 훈령형태)의 경우

- ▶ 단속대상의 업체·행위, 업종별 단속횟수 등을 정한 경우로 단속·점검이 관

련법등에 의무화된 기존 규제의 범위내에서 그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행하여진다면 점검대상별로 정한 점검횟수등 기준은 **행정규제가 아님**

(예) 환경단속 관련업체의 준법정도나 업종별로 등급을 정하고 이에 따라 점검 의무 횟수를 정하는 경우, 피규제자는 준법성, 업종에 따라 단속을 많이 또는 적게 받게 되나, 이는 기존의 준수 의무 규제의 범위내에서의 행정기관의 행위기준이므로 별도규제가 아님(피규제자는 불법이 없는 한 새로운 의무부담이 없고 행정기관만 구속을 받게 됨)

- ▶ 그러나 단속·점검의 횟수, 등급분류 등이 단속업무의 효율성만이 아니라 피규제자에게 검사비용부담, 검사를 위한 시설가동중단의 의무가 증가하거나 분류등급이 타규제에 원용될 경우 **행정규제임**

(예) 단속비용(검사비등)을 피규제자가 부담하는 경우나 단속을 받기 위해 시설가동중단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의 단속 횟수증가 지침, 단속강도를 구분하기 위한 업종등 분류가 타법령·규정에 의해 세제지원·의무부담으로 원용될 경우, 집행기관에 중점관리사업장 카드를 작성 보관토록 함으로써 피규제자가 이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등

2-15-2. 교육, 정기점검 등 위탁·대행기관에 대한 지침의 경우

- ▶ 정기점검, 교육 등 기존관련법령의 의무범위내에 위탁기관 업무의 투명화, 객관화를 위한 경우 **행정규제가 아님**
- ▶ 불법, 위법이 없음에도 피규제자에게 새로운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여하게 되는 경우 **행정규제임**

(예) 검사비용을 피규제자가 부담토록 하고 있는 지하누설점검에서 점검대행 기관에 시설공을 1개에서 2개이상으로 하도록 의무화(내부지침형태)한 경우(피규제자의 비용부담 의무증가 야기)

2-16. 정의 규정, 특례 규정, 의제 규정

- ▶ 다른 법령이나 당해 법령의 타조항에 규정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특례 규정이나 의제 규정도 **행정규제임**
- ▶ 정의 규정은 원칙적으로 규제가 아니나 정의규정에서 직접 피규제자의 범위·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에 따라 국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가 발생하

는 경우는 **행정규제임**

- (예) “과밀억제지역”이란 산업의 밀집도와 인구증가율이 현저히 높아 공장의 이전 촉진 및 신설 또는 증설의 제한이 필요한 대도시와 그 주변지역으로 대통령령(서울시, 인천시, 의정부시 등)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는 규정은 행정규제임

2-17. 기 타

2-17-1. 시험·각종 자격의 제한요건·기준 설정사항은 **행정규제임**

2-17-2.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부과는 행정내부규제로서 **행정규제가 아님**. 단, 공적업무를 수행한다고 볼 수 없는 민간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부여는 **행정규제임**

2-17-3. 명의대여 금지, 등록증 대여금지, 허위표시 금지 규정 등은 **행정규제임**

2-17-4. 유사명칭 사용금지, 민간 기관 임·직원 등의 겸직금지 규정은 **행정규제임**

2-17-5. 경영상태 및 서비스 등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민간에 대해 행하는 각종 평가에 관한 규정은 **행정규제임**

- (예) 국토해양부장관의 대중교통운영자 경영상태 및 서비스에 대한 평가와 그 결과 공표(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법 제18조)

2-17-6. 보조 또는 지원, 자격증의 재교부 등을 받기 위해 필요한 신청이나 청구절차는 필요 최소한의 기본적 절차로 **행정규제가 아님**

- (예) 복지급여의 신청, 복지자금 대여의 신청, 요양비 지급의 신청 등

- (예)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 감정 또는 자료제공을 받으려는 자의 신청(기상법)

- (예) 구매확인서의 신청 발급,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신청(대외무역법 제23조), 국가기술자격증의 재교부신청(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0조)

▶ 최소한의 기본적 절차라도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신청과 같이 신청서 외에 각종 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는 **행정규제임**

- (예)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위한 하도급 사업주의 신고(매출액 장부, 생산재고 대장 등 고용조정불가피 증명서류 등을 포함한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 결산서사본, 하도급관계 입증서류를 포함한 사업주신고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2-17-7. 보조금, 지원금을 비롯하여 연금보상청구권, 보험금 수급권 등에 대한 권리의 양도 및 압류금지규정은 양도받거나, 압류하고자 하는 제3자의 권리를 제한하므로 **행정규제임**

2-17-8. 민간기관이나 기업 등에 대한 특정 위원회 설치의무 규정과 위원회의 구성방법, 위원의 자격, 위원장 선출방법, 회의의 종류, 회의록 작성 내용, 회의 결과 주지방방법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은 **행정규제임**

(예)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2)

2-17-9 ‘기준’이나 ‘표준’ 설정의 경우는 일면 규제보다는 참고 및 권고사항, 기준점을 제시하는 등에 목적이 있다고 볼수도 있으나, 결과적으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은 행정규제임

(예) 최저임금기준, 임금산정기준, 학교용지 등의 공급가격기준, 표준비용·표준건축비·표준품셈의 지급기준,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 한국철도표준규격, 항공기소음등급기준표, 의약품분류기준 등

- 단, ‘측정단위’ 설정과 같은 규정은 **행정규제가 아님**

(예) 항공업무측정단위규정

2-17-10 ‘매뉴얼’, ‘해설서’, ‘수행지침서’ 등은 기본적으로 행정의 편의를 돕기 위한 목적이지만 이행의 강제력이 수반되지 않으므로 행정규제가 아님

- 단, 그 내용 중 준수를 의무화하는 강제성이 있으면 **행정규제임**

(예) 항행안전감독관업무 매뉴얼, 무선통신 매뉴얼, 공항기계시설관리 운영 매뉴얼 등

2-17-11 구체적인 시험·실험이나 검사기관 및 시험·실험·검사방법, 검사기준 등의 규정은 행정규제임

(예) 해양심층수의 수질공정시험방법, 선박 등 위생검사지침, 해양오염방지 설비 형식 승인을 위한 성능시험 및 검정기준,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기준 등

〈 부 록 4 〉 행정규제기본법

제1장 총칙 <개정 2010.1.25>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규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경제활동의 자유와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
2. "법령등"이란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과 그 위임을 받는 고시(告示) 등을 말한다.
3. "기존규제"란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규정된 규제와 이 법 시행 후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규정된 규제를 말한다.
4. "행정기관"이란 법령등 또는 조례·규칙에 따라 행정 권한을 가지는 기관과 그 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5. "규제영향분석"이란 규제로 인하여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행정 등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미리 예측·분석함으로써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② 규제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규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하는 사무
2. 형사(刑事), 행형(行刑)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
3. 「국가정보원법」에 따른 정보·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
4. 「병역법」, 「통합방위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규정된 징집·소집·동원·훈련에 관한 사항

5. 군사시설, 군사기밀 보호 및 방위사업에 관한 사항

6. 조세(租稅)의 증목·세율·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하는 취지에 따라 조례·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公表),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규제의 정비, 규제심사 기구의 설치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규제 법정주의) ①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② 규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 또는 상위법령(上位法令)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또는 조례·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제5조(규제의 원칙)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여야 하며, 규제를 정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규제를 정할 때에는 국민의 생명·인권·보건 및 환경 등의 보호와 식품·의약품의 안전을 위한 실효성이 있는 규제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규제의 대상과 수단은 규제의 목적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객관성·투명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제6조(규제의 등록 및 공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규제의 명칭·내용·근거·처리기관 등을 제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규제사무 목록을 작성하여 공표하고, 매년 6월 말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위원회에 등록하게 하거나 그 규제를 폐지하는

법령등의 정비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규제의 등록·공표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원칙과 심사 <개정 2010.1.25>

제7조(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2. 규제 목적의 실현 가능성
3. 규제 외의 대체 수단 존재 여부 및 기존규제와의 중복 여부
4. 규제의 시행에 따라 규제를 받는 집단과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편익의 비교 분석
5. 경쟁 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6. 규제 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7.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따른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
8. 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 및 처리절차 등의 적정 여부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를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하고,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규제영향분석서를 보완하며,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제출된 의견의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규제의 대상·범위·방법 등을 정하고 그 타당성에 대하여 자체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규제영향분석의 방법·절차와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지침 및 공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명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에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는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일정기간마다 그 규제의 시행상황에 관한 점검결과에 따라 폐지 또는

완화 등의 조치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규제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기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정하여 그 법령등에 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②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키한은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하며,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7.16>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키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키한의 6개월 전까지 제10조에 따라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④ 위원회는 제12조와 제13조에 따른 심사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키한을 설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 규정된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키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키한의 3개월 전까지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키한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제9조(의견 수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면 공청회, 행정상 입법예고 등의 방법으로 행정기관·민간단체·이해관계인·연구기관·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제10조(심사 요청)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면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안(法令案)에 대하여는 법제처장에게 법령안 심사를 요청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규제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
2. 제7조제3항에 따른 자체심사 의견
3. 제9조에 따른 행정기관·이해관계인 등의 제출의견 요지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규제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에 대한 규제정비 계획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예비심사) ① 위원회는 제10조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규제가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활동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고려하여 제 12조에 따른 심사를 받아야 할 규제(이하 "중요규제"라 한다)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중요규제가 아니라고 결정한 규제는 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심사) ① 위원회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중요규제라고 결정한 규제에 대하여는 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심사를 끝내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5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자체심사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근거에 의하여 적절한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심사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0조제2항 각 호의 첨부서류 중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하는 데에 걸린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긴급한 규제의 신설·강화 심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긴급하게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7조, 제8조제3항, 제9조 및 제10조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 요청된 규제의 긴급성이 인정된다고 결정하면 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타당성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규제 영향분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 요청된 규제의 긴급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면 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7조

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개선 권고) ① 위원회는 제12조와 제13조에 따른 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처리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재심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재심사(再審査)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요청을 받으면 그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를 끝내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심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제16조(심사절차의 준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제처장에게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규제를 포함하는 법령안의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그 규제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법령안을 국무회의에 상정(上程)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장 기존규제의 정비 <개정 2010.1.25>

제17조(의견 제출) ① 누구든지 위원회에 기존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이하 "정비"라 한다)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의 방법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기존규제의 심사)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규제의 정비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2010.1.25>

1. 제17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2. 삭제 <2009.3.25>
3. 그 밖에 위원회가 이해관계인·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② 제1항의 심사는 제14조와 제1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1.25>
- 제19조(기존규제의 자체정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소관 기존규제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비가 필요한 규제를 선정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9조의2(기존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명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존 규제에 대한 점검결과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는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그 법령등에 규정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기존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 설정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 제20조(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① 위원회는 매년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분야나 특정한 기존규제를 선정하여 기존규제의 정비지침을 작성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비지침에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정비의 기한을 정할 수 있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지침에 따라 그 기관의 규제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별 규제정비 계획을 종합하여 정부의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 ④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공표의 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1조(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시행)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0조에 따라 수립·공표된 정부의 규제정비 종합계획에 따라 소관 기존규제를 정비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라 위원회가 정비의 기한을 정하여 통보한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하여는 그 기한까지 정비를 끝내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정한 기한까지 정비를 끝내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위원회에 그 기존규제의 정비 계획을 제출하고, 정비를 끝낸 후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조직 정비 등) ① 위원회는 기존규제가 정비된 경우 정부의 조직과 예산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존규제의 정비에 따른 정부의 조직 또는 예산의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장 규제개혁위원회 <개정 2010.1.25>

제23조(설치)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둔다.

제2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규제정책의 기본방향과 규제제도의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4.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5. 규제 개선에 관한 의견 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6.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 개선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5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 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아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6조(의결 정족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면직되거나 해촉(解屬)되지 아니한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28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분과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 것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29조(전문위원 등) 위원회에는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업무를 담당할 전문위원과 조사요원을 둘 수 있다.

제30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제24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구
2.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3.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현지조사

-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의 심사 등과 관련하여 소속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31조(위원회의 사무처리 등)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무기구를 둔다.

- ② 위원회의 전문적인 심사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 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3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전문위원 및 조사요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3조(조직 및 운영)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개정 2010.1.25>

제34조(규제 개선 점검·평가) ① 위원회는 효과적인 규제 개선을 위하여 각급 행정

기관의 규제제도의 운영 실태와 개선사항을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확인·점검 결과를 평가하여 국무회의와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확인·점검 및 평가를 객관적으로 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등에 여론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확인·점검 및 평가 결과 규제 개선에 소극적이거나 이행 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통령에게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35조(규제개혁 백서) 위원회는 매년 정부의 주요 규제개혁 추진상황에 관한 백서(白書)를 발간하여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제36조(행정지원 등) 국무조정실장은 규제 관련 제도를 연구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37조(공무원의 책임 등) ① 공무원이 규제 개선 업무를 능동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그 공무원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 개선 업무 추진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은 포상하고, 인사상 우대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부칙 <법률 제5368호, 1997.8.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1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5529호, 1998.2.28>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법률 제7797호, 2005.12.29>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

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9532호, 2009.3.25>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9965호, 2010.1.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3.23>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부칙 <법률 제11935호, 2013.7.16>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